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180호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청년정책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안받은 청년정책을 추진·운영할 수 있다.

- 1. 제15조에 따른 청년협의체에서 제안한 청년정책
- 2. 청년정책 공모전 등을 통해 제안한 청년정책

### 3. 그 밖의 방법으로 발굴한 청년정책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제안정책 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전자투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의견수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익성을 기반으로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 우선
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 우선
3. 지속가능한 정책 우선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청년창업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청년 창업자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청년의 날)” 을 “(행사 개최)”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축제, 이벤트, 공모전 및 설문조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년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2.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기념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시설 및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시상금, 상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중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를 “「군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p>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이상 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4. (생 략)</p> <p>5. (생 략)</p> <p>⑤·⑥ (생 략)</p>	<p>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1 이상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4.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u>각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제12조 (위원의 해촉) ----- <u>각 호</u>-----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17조(청년의 참여 확대) ①·② (생 략)</p> <p>&lt;신 설&gt;</p>	<p>제17조(청년의 참여 확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u></p>

<신 설>

④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2(청년정책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안받은 청년정책을 추진·운영할 수 있다.

- 1. 제15조에 따른 청년협의체에 제안한 청년정책
- 2. 청년정책 공모전 등을 통해 제안한 청년정책
- 3. 그 밖의 방법으로 발굴한 청년정책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제안정책 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전자투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의견수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공익성을 기반하여 협업과 합의를 촉진될 수 있는 정책 우선
- 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 우선

제19조(청년의 창업지원) (생략)

<신설>

제25조(청년의 날)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제27조(행·재정적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3. 지속가능한 정책 우선

제19조(청년의 창업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청년창업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청년 창업자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25조(행사 개최) ① 시장은 청년 정책의 활성화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축제, 이벤트, 공모전 및 설문조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1. 청년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 2.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기념을 위한 사항
- 3. 그 밖에 청년시설 및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시상금, 상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행·재정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181호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산보호관찰소장**”을 “**군산보호관찰지 소장, 군산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전이라도**”를 “**임기만료 전이라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명**”을 “**2명**”으로, “**담당업무과장**”을 “**군산시청 및 군산경찰서 담당업무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협의회 구성) ① (생 략)</p> <p>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 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 의 장, 군산경찰서장, 군산교육 장, 군산소방서장,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 <u>군산보호관찰소장</u> 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다.</p> <p>1. ~ 4. (생 략)</p>	<p>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군산보호관찰</u> <u>지소장, 군산해양경찰서장</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 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에는 <u>임기전이라도</u> 위원을 해 촉 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제9조(위원의 해촉) ----- ----- <u>임기만료 전이라도</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11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담당업무과 장</u>이 된다.</p> <p>② (생 략)</p>	<p>제11조(간사) ① ----- ----- <u>2명</u>----- ----- <u>군산시청 및 군산경</u> <u>찰서 담당업무과장</u>----- -----.</p> <p>②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182호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목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제조와 관련)”으로 한다.

별표의 2.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미장동 77란 다음에 78, 7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계란 및 동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수송동	1~16	61	현행과 같음
미장동	17~22	22	현행과 같음
수송동	23~24	11	현행과 같음
지곡동	25~33	37	현행과 같음
수송동	34~43	43	현행과 같음
미장동	44~45	10	현행과 같음
수송동	46~51	28	현행과 같음
미장동	52~55	24	현행과 같음
수송동	56~57	4	현행과 같음
미장동	58~61	13	현행과 같음
지곡동	62~66	22	현행과 같음
수송동	67	4	현행과 같음
미장동	68~70	9	현행과 같음
지곡동	71~72	6	현행과 같음
미장동	73~77	22	현행과 같음
지곡동	78	1	617 호수공원 아이파크 101동
		2	617 호수공원 아이파크 102동
		3	617 호수공원 아이파크 103동
		4	617 호수공원 아이파크 104동
		5	617 호수공원 아이파크 105동
		6	617 호수공원 아이파크 107동

	79	1	617 호수공원 아이파크 106동 101~2402호
		2	617 호수공원 아이파크 106동 103~2804호
		3	617 호수공원 아이파크 108동 101~2093호, 상가
		4	617 호수공원 아이파크 108동 204~2905호
		5	617 호수공원 아이파크 109동
		6	617 호수공원 아이파크 110동
동 계	79	328	
나운동~산북동			현행과 같음
동총계	512	2,185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별표]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와 관련)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2.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수송동	1~16	61	생략	수송동	1~16	61	현행과 같음
미장동	17~22	22	생략	미장동	17~22	22	현행과 같음
수송동	23~24	11	생략	수송동	23~24	11	현행과 같음
지곡동	25~33	37	생략	지곡동	25~33	37	현행과 같음
수송동	34~43	43	생략	수송동	34~43	43	현행과 같음
미장동	44~45	10	생략	미장동	44~45	10	현행과 같음
수송동	46~51	28	생략	수송동	46~51	28	현행과 같음
미장동	52~55	24	생략	미장동	52~55	24	현행과 같음
수송동	56~57	4	생략	수송동	56~57	4	현행과 같음
미장동	58~61	13	생략	미장동	58~61	13	현행과 같음
지곡동	62~66	22	생략	지곡동	62~66	22	현행과 같음
수송동	67	4	생략	수송동	67	4	현행과 같음
미장동	68~70	9	생략	미장동	68~70	9	현행과 같음
지곡동	71~72	6	생략	지곡동	71~72	6	현행과 같음
미장동	73~77	22	생략	미장동	73~77	22	현행과 같음
동계	77	317		지곡동	78	1	617 호수공원 아이파크 101동
나운동~산북동			생략			2	617 호수공원 아이파크 102동
동총계	510	2,173				3	617 호수공원 아이파크 103동
						4	617 호수공원 아이파크 104동
						5	617 호수공원 아이파크 105동
						6	617 호수공원 아이파크 107동
					79	1	617 호수공원 아이파크 106동 101~2402호

		2	617 호수공원 아이파크 106동 103~2804호
		3	617 호수공원 아이파크 108동 101~2093호, 상가
		4	617 호수공원 아이파크 108동 204~2905호
		5	617 호수공원 아이파크 109동
		6	617 호수공원 아이파크 110동
동 계	79	328	
나운동~ 산북동			현행과 같음
동총계	512	2,185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183호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과물”을 “결과물, 용역결과 평가 보고서, 용역 활용현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예정 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용역 결과 공개)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u>결과물</u>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p> <p>1. 학술용역 :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제54조에서 정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 SM)에 공개</p> <p>2. (생 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한다.</u> &lt;후단 신설&gt;</p>	<p>제16조(용역 결과 공개) ① ----- ----- <u>결과물, 용역결과 평가보고서, 용역 활용현황</u>----- -----.</p> <p>1. ----- 「<u>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u>」 제54조----- ----- -----</p> <p>2. (현행과 같음)</p> <p>② ----- ----- ----- ----- <u>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예정 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u></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184호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후단 중 “30만원” 을 “45만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u>30만원</u>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 ----- ----- ----- ----- ----- <u>45만원</u>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185호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군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 및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문화예술인이 공공기관의 행사 등에서 활동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육성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인문화예술인 교육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
4.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
5.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전시·공연 등 활동 공간 확보
6. 장애인문화예술인 고용 지원 및 작품 판로 개발
7. 장애인문화예술인 기획·창작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사업
8.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와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186호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 시설 등 다양한 관광 매력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
- 1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관광여건의 조성과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교육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8.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 제목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를 “(관광진흥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관광진흥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관광진흥계획에 대한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의”를 “위원이”로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야간관광 진흥사업 운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 “(제20조 관련)”을 “(제23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 기준(제23조 관련)

구분	지원조건	지급금액(원)	비고
원고료	1건	50,000	

※ 동일인의 1개월 내 원고료 지급 횟수를 2회로 제한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0.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매력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u></p> <p>12. <u>“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u></p> <p><u>제5조의2(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u></p> <p><u>① 시장은 관광여건의 조성과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u></p> <p><u>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1. <u>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u></p> <p>2. <u>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u></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의 관광산업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u>관광진흥자문위원회</u>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u>&lt;신 설&gt;</u></p>	<p><u>한 사항</u>  3. <u>관광객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4. <u>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u>  5. <u>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교육에 관한 사항</u>  6. <u>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u>  7. <u>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u>  8. <u>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u>  9. <u>그 밖에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제6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① ---  -----  -----  ----- <u>관광진흥위원회</u>-----  -----.</p> <p>②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u>  1. <u>관광진흥계획에 대한 관한 사항</u></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구성 등) ① ~ ⑤ (생략)</p> <p>&lt;신설&gt;</p> <p>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u>위원의</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33조(위탁대상 업무) ① 제3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lt;신설&gt;</p> <p>7. (생략)</p> <p>②·③ (생략)</p>	<p>2. <u>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u></p> <p>3. <u>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u></p> <p>4. <u>관광홍보,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u></p> <p>5. <u>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제7조(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u></p> <p>제10조(위원의 해촉) ---- <u>위원이</u>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33조(위탁대상 업무) ①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야간관광 진흥사업 운영</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187호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군산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시장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보급
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7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센터 운영평가) 시장은 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시 평가 결과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188호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와 이식 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 검사비 등 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세부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

원과 이식 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과 이식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조사 및 지원기준

2.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에 따른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3. 혈액 및 복막 투석 후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군산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내용)**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혈액 및 복막 투석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



2.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3. 투석 혈관 수술비 중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의료비

제8조(지원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의료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신장장애인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등)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 1. 지원대상이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지원신청 장애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지원종류	<input type="checkbox"/> 투석비 <input type="checkbox"/> 이식검사비 <input type="checkbox"/> 혈관수술비				
	연락처	휴대전화				
지급계좌 신청내역	금융기관		예금주명			
	계좌번호					
	신청금액 (자부담액)					
치료병원 및 보험종류	병원					
	보험종류	<input type="checkbox"/> 직장보험 <input type="checkbox"/> 지역보험 <input type="checkbox"/> 직장+지역혼합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합산금액)			

위와 같이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구비서류 제출과 확인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확인 및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투석 처방 확인서 1부	
5. 투석 진료비, 이식검사비, 이식수술비 영수증 원본 1부	
6.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행정망에 기 등록계좌 있을시 해당사항없음)	
7.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신청서는 매년 1회만 제출하고 월별 지원금 신청서는 투석확인서 및 투석 진료비, 혈관수술비, 이식수술비 영수증만 제출, 복막투석대상자는 단가 산정이 어려움에 따라 반드시 투석확인서를 제출	

## 절 취 선

대리인(법정 대리인 제외) 방문시 아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정보	성명		위임하는분 과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받을 전화번호	☎)
	주소			
본인을 위해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에 대한 신청을 위 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위임하는 분)	(서명 또는 인)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본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보건복지부, 전국 보건소(시·도사업과 포함), 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통계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기관
- 개인정보화일(DB)수집의 목적
  - 신장장애인 의료비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통계자료 수집, 분석, 결과 추출 및 정책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타 지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개인정보수집항목
  - 신장장애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메일주소, 건강보험가입현황, 건강보험료,
  - 신장장애인을 제외한 가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강보험가입현황, 건강보험료
-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보건복지부·전국 보건소(시·도사업과 포함)에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시 : 영구
- 개인정보 조회·열람·활용 동의내용
  - 주민등록등(초)본 조회·열람(세대원 수, 출생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혼인 여부 및 가족수 확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및 고지금액 확인)
  - 건강보험카드(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황 확인)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타 지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가족관계 확인 및 선정기준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성 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민감정보 처리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의료비 지원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관    계	동의확인(서명)
		(인)
		(인)
		(인)
		(인)

※ 관계표시 방법 : 본인, 남편, 아들, 딸, 시부, 시모, 부, 모

※ 건강보험료 산정 시 가족 수에 포함되는 사람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189호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영유아**”라 **함은**”을 ““**영유아**”란”으로, “**6세미만**”을 “**7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발달특성에 적합한**”을 “**발달 특성에 맞는**”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호자**”라 **함은**”을 ““**보호자**”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어린이집 직원**”을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5**”를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보육정책위원**”을 “**보육 정책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으로, “**임명한다**”를 “**한다**”로 한다.

②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6조 본문 중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라”로, “연임할수”를 “연임할 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6월이상”을 “6월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품위손상등”을 “품위손상 등”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하”를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그 밖에 영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영유아보육법에”를 “법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된다.

제15조제1항 후단 중 “보육정책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갱신체결”을 “재계약 체결”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승인없”을 “승인 없”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어느”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로, “사유가 “발생하거나”를 “경우 또는”으로, “경우”위탁계약”을 “경우에는 위탁”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군산시에”를 “시에”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설치 및”을 “설치,”로 한다.

제22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조 중 “「영유아보육법」 제40조”를 “법 제40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u>의하여</u> 군산시장이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따라</u>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u>영유아</u>”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u>6세미만</u>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p>	<p>1. “<u>영유아</u>”란 ----- ----- ----- <u>7세 이하</u>----- -----.</p>
<p>2. “<u>보육</u>”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u>발달특성에 적합</u>한 교육을 제공하는 <u>사회복지서비스</u>를 말한다.</p>	<p>2. ----<u>이란</u> ----- ----- - <u>발달 특성에 맞는</u> ----- ---- <u>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u>----.</p>
<p>3. (생략)</p>	<p>3. (현행과 같음)</p>
<p>4. “<u>보호자</u>”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p>	<p>4. “<u>보호자</u>”란 ----- ----- -----.</p>
<p>5. (생략)</p>	<p>5. (현행과 같음)</p>

제3조(책임) ① (생략)

②어린이집 직원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그 기관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련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호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다.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 5. 삭제
- 6. 삭제
- 7. 삭제

③시장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보육정책위원을 위촉 또는

제3조(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보육교직원-----  
-----  
-----.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  
-----.

제5조(구성) ①-----  
----- 20-----  
-----.

②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은 관련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보육정책위원-----  
-----



임명할 때에는 공개모집된 부모 정책모니터링단의 대표 또는 기구성된 보호자 대표 모임의 대표를 선정하고, 어린이집과 무관한 독립적이고 건전한 시민단체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④ 삭 제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시장의 보육업무담당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다만, 시 관계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6월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할 때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할 때

-----  
 -----  
 -----  
 -----  
 -----.

⑤-----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라 ----- 연 임할 수 ---. -----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

제7조 (위원의 해촉) -----  
 -----.

1. 6월 이상-----
2. 품위손상 등-----

3. (생략)

제8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생략)

7. 기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적극적이고

3. (현행과 같음)

제8조(기능) -----

----- 각 호 -----

-.

1. ~ 4. (현행과 같음)

5. -----

----- 관한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영 제7조제2항 -----

-----

-----

제11조(위원의 수당) -----

-----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

----- . -----

-----

-----

----- .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

-----

-----

-----

추진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때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후단 신설>

제15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시장은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또는 변경위탁 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후에 계약갱신 체결을 해야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 법에 -----  
-----  
-----.

③-----  
-----  
----- . 다만,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된다..

제15조(위탁기간) ① -----  
-----  
-----.

----- 위원회 -----  
-----  
-----.

②-----  
----- 재계약 체결 -----  
-----.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생략)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생략)

제17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공익상 부적합할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생략)

제19조(보육교직원) ① (생략)

②위탁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任免)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任免)하되, 임면(任免)사항을 군산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관련 법령에 의거 설치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④----- 승인 없-----  
-----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  
----- 경우 또는 -----  
----- 경우에는 위탁-----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보육교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시에 -----  
-----.

제21조(비용의 보조) -----  
-----  
-----  
-----.

1. ~ 4. (생략)

5. 어린이집의 설치 및 증·개축 및 개보수비

6.·7. (생략)

제22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전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료 및 방과 후 아동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3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 설치, -----  
-----

6.·7. (현행과 같음)

제22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

제23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법 제40조 -----  
-----  
-----  
-----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190호

###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를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6.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발생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 장비”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①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법인·기관·단체 등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은 군산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최소 2년마다 2시간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2.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시민

3. 관내 어린이집·학원·지역아동센터 등의 종사자

4. 군산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



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의 확대 및 관련 교육단체를 지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용 책자를 제작·배포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장비 사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및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191호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소아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군산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정) ① 시장은 심야시간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발생하는 소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는 시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에 있어 공공심야약국이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심야시간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 2.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따른다.

제5조(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정보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절차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192호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민에게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대상포진 : 1회
- 2. 인플루엔자 : 매년 1회

제3조(지원 대상자)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 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  
는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대상포진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와 예방접종 금지자는 제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인플루엔자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제4조(비용지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되,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피해보상 백신 및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193호

###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특례)**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건축,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의 설치(이하 “건축등”이라 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건축등 제한지역)**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조 각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등은 제한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다음 각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되, 섬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을 제외한다)
- ② 군산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문화재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 각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에서 해당 시설의 건축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거리의 적용)** 제4조제1항에 따른 제한지역에 대한 거리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및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본문 중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특례 허용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194호

##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관련 행정절차 지원,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현황 관리
6.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주 관리·감독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숙소 등 지도·점검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및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실질적인 연락망 구축
11. 그 밖에 시장이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 이행사항)** 시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 등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주의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2.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비용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에 따른 비용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관련 절차 전반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대상)** 제7조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고용주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고용주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 제2195호

###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군산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3.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규칙 제832호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기간은” 을 “횟수는” 으로, “월부터 12개월” 을 “시기부터 12회” 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단” 을 “다만” 으로, “12개월을” 을 “12회를”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월” 을 “월 1회”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 등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재정 지원한 건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원기준 등) ① (생 략)</p> <p>②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의 짬뽕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재정지원 <u>기간은</u> 영업소 1개소당 최초 지원금을 지원한 <u>월부터 12개월</u> 이내로 한다. 단, 지원종료 전 자체평가 등에 의해 1회에 한하여 <u>12개월</u>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p> <p>2. 지원액은 짬뽕특화거리 지정 이후 입점영업소 1개소에 대하여 최대 <u>월 100만원</u>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3. (생 략)</p>	<p>제2조(지원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u>횟수는</u> ----- ----- <u>시기부터 12회</u> ----- ----- ----- <u>12회를</u> ----- -----.</p> <p>2. ----- ----- ----- <u>월 1회</u> ----- -----.</p> <p>3. (현행과 같음)</p>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문화관광국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연락처	(063) 454 - 341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규칙 제833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0조 중 “안전총괄과장·도시계획과장·주택행정과장·건축경관과장·토지정보과장”을 “도시계획과장·주택행정과장·건축경관과장·토지정보과장”으로, “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건설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으로, “자격있”을 “자격 있”으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보담당관)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p>	<p>제4조(공보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p>
<p>제10조(안전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도시계획과장·주택행정과장·건축경관과장·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10조(안전건설국) ----- ----- 도시계획과장·주택행정과장·건축경관과장·토지정보과장--- ----- -----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건설과장-----.</p>
<p>제11조(소장 및 지소장의 직급) ①·② (생략)</p> <p>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등보건의료</p>	<p>제11조(소장 및 지소장의 직급)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 자격 있-----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p>

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 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생략)

제16조(농민상담소의 설치) ①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민상담소를 둔다.

② (생략)

③ 농민상담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 3. (생략)

4. 기타 관내지역의 농업기술보급사업 전개

제18조(읍·면·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에 두는 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별조치법」-----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농민상담소의 설치) ① ----- 제17조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제18조(읍·면·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  
-----  
-----.

[별표 1] <개정 2024. . .>

분 장 사 무 표(제3조 관련)

[시 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공 보 담 당 관	공보업무 분 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관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li> <li>○ 언론동향 파악 및 언론사(인)와 연계체계 유지</li> <li>○ 시 출입기자 등 언론인 취재 지원</li> <li>○ 브리핑룸 및 기자실 운영·관리</li> <li>○ 시보 발행 및 배부</li> <li>○ 고시 및 공고 관련 업무</li> <li>○ 정기간행물 등록(신규, 폐업) 및 관리</li> <li>○ 시정 주요시책 언론(신문·방송 등) 홍보(광고)</li> <li>○ 주요 시정 홍보 캠페인 광고</li> <li>○ 뉴스 서비스(수신) 관리(통신사 등)</li> <li>○ 시정 주요행사 촬영 및 자료보존</li> <li>○ 담당관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li>○ 언론사(신문·방송 등) 대담 및 인터뷰</li> <li>○ 타 부서 이외의 축사 작성</li> <li>○ 시정 홍보 보도자료 수집·발굴·작성 및 제공</li> <li>○ 시정 현안 및 역점사업 언론 기획·특집 홍보</li> </ul>
	미디어홍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홍보 시책 발굴</li> <li>○ 시 이미지 콘텐츠 제작 및 시정 전반 SNS 홍보·관리</li> <li>○ 시정 홍보 전광판 운영 및 관리</li> <li>○ 타 지자체 홍보매체 활용 시정 홍보(LED, 와이드조명 등)</li> <li>○ 대강당 음향시설 운영 및 관리</li> <li>○ 시정소식지(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 및 배부</li> <li>○ 시 홍보물(영상·책자 등) 제작</li> </ul>
감 사 담 당 관	감사업무 분 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관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도민감사관 운영 및 추진</li> <li>○ 시 행정의 감사</li> <li>○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의 처리</li> <li>○ 사무 인계인수 입회(시장, 부시장)</li> <li>○ 감사자료 수집 및 제출</li> <li>○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li> <li>○ 소관사항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li> <li>○ 기타 타 법령에 의한 감사</li> <li>○ 담당관실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조사감찰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감사 및 특명감사 처리</li> <li>○ 시민감사관 운영 및 시민감사 추진</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비위조사 및 예방</li> <li>○ 비위관련 첩보 및 민원처리</li> <li>○ 상급기관 이첩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li> <li>○ 사정기관 통보사항 조사 처리</li> <li>○ 기동 감찰업무 (직무, 기강 등)</li> <li>○ 진정, 탄원사항 조사 처리</li> <li>○ 청원 업무 전반</li> <li>○ 기타 비위발생 조사 처리</li> <li>○ 소관사항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li> </ul>
	기술감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공사, 용역, 물품)</li> <li>○ 특명사항 등 조사 (토목, 건축 분야 등)</li> <li>○ 민간보조사업 일상감사</li> <li>○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및 현장점검</li> <li>○ 기술분야 감사 및 조사</li> <li>○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운영</li> <li>○ 주요사업 사전감사 실시</li> </ul>
	납세자보호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li> <li>○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li> <li>○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li> <li>○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li> <li>○ 기한의 연장신청,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li> <li>○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건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마을세무사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시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접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지방세 과세전적부심 및 불복 건에 대한 의견 제시</li> <li>○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기타 납세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li> </ul>
인구대응 담당관	키움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관련 업무 총괄 및 기획조정</li> <li>○ 인구관련 자체 종합계획 수립</li> <li>○ 인구관련 각종 정보 및 자료 취합</li> <li>○ 「키움옴 가족행복도시 사업」 총괄</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인구감소계획수립 및 시책발굴</li> <li>○ 저출산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li> <li>○ 지역인구통계진단</li> <li>○ 지자체 관련부서 사업연계 및 기획</li> <li>○ 중앙-지자체-민간연계 협력체계 구축</li> <li>○ 지역맞춤형 시책 개발</li> <li>○ 시군구간, 시군구-민간연계 협력체계 구축</li> <li>○ 조례 및 위원회 등 제도적 기반 구축</li> <li>○ 지자체 평가 대응</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청년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행정실무협의체 운영</li> <li>○ 청년협의체 운영</li> <li>○ 청년센터(청년뜰) 사무 위탁 및 시설 운영</li> <li>○ 청년의 날 행사 운영</li> <li>○ 청년 정책 사업 발굴 및 활성화 지원</li> <li>○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시책 발굴</li> <li>○ 청년 마을만들기 사업</li> <li>○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li> <li>○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li> <li>○ 전북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li> <li>○ 청년멘토 육성 및 네트워킹 추진사업</li> <li>○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li> <li>○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li> <li>○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li> <li>○ 청년 역량 강화 지원</li> </ul>
	청년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일자리 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미래형전기차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사업</li> <li>○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사업</li> <li>○ ‘군산의 봄’ 조선해양기자재산업 청년일자리사업</li> <li>○ ‘그린산업육성’ 청년일자리사업</li> <li>○ ‘맛있는 군산’ 먹거리산업 청년일자리사업</li> <li>○ 청년나래 일자리지원사업</li> <li>○ 청년나래이음 일자리지원사업</li> <li>○ 청년나래이음플러스 일자리지원사업</li> <li>○ 청년도전지원사업(구직단념청년 대상)-‘24년신규</li> <li>○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li> <li>○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li> <li>○ 청년일자리 관련 산학연계 사업(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사업) ○ 공공일굼터 대학생일자리사업·청년멘토 사업 ○ 청년일자리사업 신규발굴 ○ 청년해외취업연수 지원 사업 ○ 청년 구직 활동 지원 ○ <b>청춘미가 청년창업플랫폼 운영관리&lt;삭제&gt;</b>
	외국인정책 업무분야	○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외국인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등 ○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사업 ○ 외국인주민 지원 중앙 공모사업 추진 ○ 외국인정책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관리 운영 ○ 지역특화형 비자 및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업무 ○ <b>외국인 명예통장 운영&lt;삭제&gt;</b> ○ 체류 외국인 지원
행정지원 과 장	총 무 업무분야	○ 국·과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 의전 및 의식 행사 ○ 청원 전체조회 운영 ○ 청내 간부회의 운영 ○ 국소관 근평관리 ○ 보안문서 관리 통제 ○ 보안교육 및 보안감사 ○ 본청·사업소의 공직기강 및 복무단속 ○ 본청 당직실운영 및 당직명령 ○ 본청·사업소공무원의 청원서 처리 ○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업무관한 사항 ○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청우회 운영 ○ 본청 청원경찰 지도 감독 ○ 청사방호 ○ 직소민원 관리 ○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기타 타국·타과·타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시 정 업무분야	○ 지방행정 시책의 추진 ○ 읍·면·동 행정 지도감독 및 복무 단속 ○ 시 행정 구역에 관한 사항 ○ 읍·면·동장의 청원서 처리 ○ 주요 시정행사 ○ 읍·면·동 관계회의 조정 통제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li> <li>○ 행정동향 및 여론행정 관리</li> <li>○ 시민의 장 및 모범시민상 표창</li> <li>○ 선거 및 국민투표</li> <li>○ 각종 위원회 조정 총괄</li> <li>○ 평통 및 바르게살기운동 업무 지원 협조</li> <li>○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민간단체 관리</li> <li>○ 한국자유총연맹 관련사항</li> <li>○ 북한이탈 주민 거주지 보호</li> <li>○ 과거사정리 업무추진</li> <li>○ 시 읍면동간 사무의 조정</li> <li>○ 기타 기능전환과 관련된 사무 전반</li> <li>○ 통 리 반 설치 운영</li> <li>○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업무</li> <li>○ 비상사태하의 주민통제, 소산 및 수송 계획</li> <li>○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주민자치센터 행정, 재정적 지원</li> <li>○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점검 등</li> <li>○ 외국인 명예통장 운영</li> <li>○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li> <li>○ 읍면동 청사신축 계획수립 및 추진</li> <li>○ 기타 주민자치센터 홍보 등</li> </ul>
	인 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의 임·면</li> <li>○ 공무원의 포상·서훈</li> <li>○ 인사(징계)위원회 운영</li> <li>○ 공무원 근무평정 및 경력평정, 승진 및 전보</li> <li>○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li> <li>○ 공무원 정·현원 관리</li> <li>○ 기구 신설·폐지, 분장사무</li> <li>○ 인사 통계</li> <li>○ 인사기록카드 관리 및 전산업무</li> <li>○ 공무원 호봉 확정</li> <li>○ 공무원 연금 업무</li> <li>○ 공무원 건강보험 관리</li> <li>○ 지방행정공제회 업무</li> <li>○ 공무원 관계 증명 발급</li> <li>○ 공무원근로자 인사관리(채용, 교육, 임금, 유지, 퇴직)</li> <li>○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업무</li> <li>○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노조소통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단체 관리 및 간담회</li> <li>○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시행 및 협약사항 이행관리</li> <li>○ 공무원 노사관계 연수·교육·홍보</li> <li>○ 건전한 공직사회 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시책 추진</li> <li>○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단체보험포함)</li> <li>○ 공직자 휴양시설(콘도) 운영</li> <li>○ 직원 보육료 지원</li> <li>○ 청원 한마음 행사</li> <li>○ 기간제근로자 관리 총괄</li> <li>○ 공무직노동조합 노사협의회(간담회) 추진</li> <li>○ 공무직근로자 단체교섭 시행 및 협약신고 총괄</li> <li>○ 공무직근로자 임금교섭 시행 및 이행관리 총괄</li> <li>○ 공무직노동조합 행사지원</li> <li>○ 기타 공무원단체에 관련한 업무</li> </ul>
	기록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기록물의 수발 및 통제</li> <li>○ 수신 전자문서 해당부서 배포</li> <li>○ 공인관리</li> <li>○ 발간실 운영</li> <li>○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li> <li>○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li> <li>○ 일반 및 등기 우편물 관리</li> <li>○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소관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li> <li>○ 기록물 분류기준표의 관리</li> <li>○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통보</li> <li>○ 미등록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li> <li>○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li> <li>○ 기록물관리 지도·교육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군산시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li> <li>○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li> <li>○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li> <li>○ 주요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 제공</li> <li>○ 그밖에 기록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li> </ul>
기획예산 과 장	기 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 방침과 시정 목표의 책정</li> <li>○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li> <li>○ 중장기 계획의 수립 조정</li> <li>○ 주요업무계획 및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li> <li>○ 정부혁신 계획 수립 및 시책발굴</li> <li>○ 대통령·총리·장관·지사·시장 지시사항 처리 및 이행사항 점검</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약사항(대통령·지사·시장) 관리</li> <li>○ 적극행정 업무 추진</li> <li>○ 시정 조정위원회 운영</li> <li>○ 군산시 상징물 관리</li> <li>○ 시민제안제도 운영</li> <li>○ 시정계획 및 시정연설 작성</li> <li>○ 시책개발 업무추진</li> <li>○ 국가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추진 총괄</li>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li> <li>○ 서울·세종 사무소 운영 총괄업무</li> <li>○ 지역발전 사업에 관한 사항</li> <li>○ 지방분권 및 이양업무에 관한 사항</li> <li>○ 행정제도개선 및 지식행정 관련</li> <li>○ 시민참여위원회 운영</li> <li>○ 명예시민 업무</li> <li>○ 지자체 생산성 대상 업무추진</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예 산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재정계획 수립 및 조정 통제</li> <li>○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li> <li>○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예산의 배정</li> <li>○ 예산집행의 지원</li> <li>○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승인 신청과 집계</li> <li>○ 국·도비 보조금 관리</li> <li>○ 지방교부세 [보통, 특별(재난안전·지역현안·시책)] 신청 및 관리</li> <li>○ 기금 관리</li> <li>○ 이월예산 편성 및 추진상황 점검</li> <li>○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운영</li> <li>○ 일반예산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제도 운영</li> <li>○ 예산편성 외 예산과정에 주민참여</li> <li>○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li> <li>○ 제도홍보 및 주민예산교육, 홈페이지 운영</li> <li>○ 주민참여예산 시군구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li> <li>○ 주요재정사업평가</li> <li>○ 예산의 성과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li> <li>○ 성인지 예산서 작성</li> <li>○ 재정분석 및 예산개요 작성</li> <li>○ 지방재정 공시</li> <li>○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원</li> <li>○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관리</li> <li>○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li> <li>○ 지방보조금 업무 추진</li> </ul>
	법무성과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 행정 종합기획 조정</li> <li>○ 조례·규칙의 심사 및 공포</li> <li>○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li> <li>○ 훈령 예규 등 중요 문서의 심사</li> <li>○ 법제 자료의 조사 및 수집 연구</li> <li>○ 법령 및 관보의 배부</li> <li>○ 소송 사무의 검토 및 통제</li> <li>○ 소송사건의 연락 및 통제</li> <li>○ 행정 심판 업무</li> <li>○ 입법 및 행정 예고</li> <li>○ 시 의회 운영지원</li> <li>○ 의회자료 제출 및 협의에 관한 사항</li> <li>○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li> <li>○ 의회 운영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li> <li>○ 의회운영 제도개선 연구 등</li> <li>○ 의정비 관련업무</li> <li>○ 고문·마을 변호사 제도 운영, 무료법률상담소 운영</li> <li>○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li> <li>○ 행정규제개혁 업무</li> <li>○ 규제관련 정부정책 추진</li> <li>○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li> <li>○ 규제개혁위원회 운영</li> <li>○ 기업 규제애로 청취 및 개선과제 발굴</li> <li>○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li> <li>○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li> <li>○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대응</li> <li>○ 지자체 합동평가 업무</li> <li>○ J-VPS(실적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li> <li>○ 시정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 확인평가</li> <li>○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관리</li> <li>○ 성과관리(BSC) 운영 및 평가관리</li> <li>○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및 관리</li> </ul>
	국제협력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 가입 및 활동</li> <li>○ 국제 행사 유치 및 지원</li> <li>○ 국외 자치단체교류 총괄</li> <li>○ 직원 해외 직무연수, 청원해외배낭연수</li> <li>○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련 국제화 업무</li> <li>○ 한미 친선 협의회 관련 업무</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국의 출장 허가 및 여비 관리</li> <li>○ 민간인 외국어 통역봉사단 운영</li> <li>○ 해외 교류 지역 한인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li> <li>○ 해외 교류 지역과의 직원 교류</li> <li>○ 해외 교류 지역과의 학생 및 민간 교류 지원</li> <li>○ 해외 교류 지역 여행객 유치</li> <li>○ 군산 중국사무소 운영</li> <li>○ 타부서 국제업무 지원(통·번역 등)</li> <li>○ 국제교류도시 발굴</li> <li>○ 남북교류 업무추진</li> </ul>
	고향사랑기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향사랑 기부자 및 기부금 관리</li> <li>○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리</li> <li>○ 고향사랑기금 운용</li> <li>○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li> <li>○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li> <li>○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답례품 선정위원회 운영</li> <li>○ 국내자매도시 관련업무</li> <li>○ 재경향우회 관련업무</li> </ul>
회계과장	경 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공기업 특별회계 제외)</li> <li>○ 국·도비 지출 및 정산</li> <li>○ 일상경비 교부 및 정산</li> <li>○ 지출계산서 심사 및 보고</li> <li>○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li> <li>○ 원천세 징수 불입 및 부가가치세 신고</li> <li>○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정리</li> <li>○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및 회계정보시스템 운영</li> <li>○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산, 부채실사</li> <li>○ 인건비 및 연말정산 업무 추진</li> <li>○ 자금 관리 및 배정</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계 약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공사, 용역 입찰 및 계약</li> <li>○ 물품의 제조, 구매, 수선, 임차계약</li> <li>○ 공사 준공검사 및 물품검수 입회</li> <li>○ 계약심의위원회 운영</li> <li>○ 공사, 용역, 물품납품 실적증명서 발급</li> <li>○ 공사하도급 승인</li> <li>○ 부정당업자 제재</li> <li>○ 지연배상금 부과 결정</li> <li>○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 관용차량 관리
	재산관리 업무분야	○ 시유재산(일반재산)의 관리 취득 및 처분 ○ 공유재산(일반재산)의 관리 처분 및 등기 ○ 시유재산(일반재산)의 대부 ○ 은닉 공유재산(일반재산)의 조사 및 환수 ○ 공유재산(일반재산)의 대부료 과징 ○ 재산 수입에 관한 사항(일반재산) ○ 시유재산 시민 공유공간 발굴 및 운영
	청사관리 업무분야	○ 관사 유지관리 ○ 전기, 위생, 냉·난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공무실의 운영 ○ 본청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 청내 소방훈련 및 자체방화관리 ○ 본청 청사 청소 및 소독관리 ○ 읍면동 청사 보수 업무지원
교육지원 과 장	교육지원 업무분야	○ 초·중·고·대학교 교육관련 사업 ○ 대안학습 관련 사업 ○ 청소년 진로교육사업 ○ 혁신교육특구 사업 지원 ○ 외국어 교육 사업 지원 ○ 초·중·고 방과후 학습 지원 ○ 맞춤형 과학 프로그램 지원 ○ 교육발전진흥재단 및 교육관련 협의회 운영 및 지원 ○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 ○ 공무원 교육대상 선발 및 지원 ○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계획 수립 및 자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공무원 상시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시스템 관리 ○ 희망스터디사업 추진
	평생교육 업무분야	○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 교육관련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 ○ 평생학습도시 추진 ○ 군산시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리 ○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및 지원 ○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운영 관리 ○ 찾아가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 군산시 문해학습 운영 및 지원
	특수학습	○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장애인 연간 운영계획 수립</li> <li>○ 발달장애인 평생프로그램 개발·운영</li> <li>○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관련 사업 계획 및 지원</li> </ul>
	대학협력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 관련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li> <li>○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li> <li>○ 지방대학 지원사업(지방대학 지원조례 관련)</li> <li>○ 대학의 평생교육 사업 협력</li> <li>○ 서울(전주) 장학숙 지원</li> </ul>
세무과장	세 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 및 세정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지방세 관련 제도 연구 및 운영</li> <li>○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부과</li> <li>○ 주민세(개인분, 종업원분, 사업소분) 신고분 처리 및 부과</li> <li>○ 세무전산실 운영 및 지방세정보화 추진</li> <li>○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및 관리</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지방소득세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지방소득세(양도,종합) 신고 및 경정, 결정 부과</li> <li>○ 법인 지방소득세(확정, 수정, 경정, 결정, 특별징수세액 정산) 부과</li> <li>○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 및 부과</li> <li>○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연말정산 환급 처리</li> <li>○ 지방소득세 신고접수 및 납부서 발급 업무 처리</li> <li>○ 지방소득세 부과 및 비과세·감면 관련 조사</li> </ul>
	과표조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li> <li>○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검증처리 및 결정공시, 공동주택 가격 이의신청 접수</li> <li>○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기타물건(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 가격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li> <li>○ 개별주택(신·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자료 정비업무</li> <li>○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제증명 발급</li> </ul>
	재 산 세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세(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부과 관리</li> <li>○ 건축물 및 토지 과세자료 현황 조사·관리 및 비과세·감면 대상 일제조사</li> <li>○ 재산세대장 관리 및 정비</li> <li>○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및 부과</li> <li>○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li> <li>○ 재산세 과세내역 및 재산 조회</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도 세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분 처리 및 부과(차량분은 제외, 이하 같음)</li> <li>○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li> <li>○ 특정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li> <li>○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무민원창구 운영</li> </ul>
	세무조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세무조사(자체, 타 기관 합동)</li> <li>○ 주요 사례별 세무조사(개인, 법인)</li> <li>○ 도 합동 기획 세무조사</li> <li>○ 세무조사 추정분에 대한 불복(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소송) 대응</li> <li>○ 은닉·탈루세원 발굴 및 범칙사건 운영·조사</li> <li>○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분 수시 부과 및 사후관리</li> </ul>
시민납세 과 장	납세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수업무 종합기획 조정</li> <li>○ 체납지방세 징수 및 총괄 관리</li> <li>○ 관허사업제한 및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고발, 기타 행정규제 처분</li> <li>○ 고액체납자 관리 및 체납처분</li> <li>○ 독촉장·최고장 발부 및 모바일 전자고지</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li> <li>○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관리</li> <li>○ 고액체납자 관리 T/F팀 운영</li> <li>○ 일제정리기간 운영</li> <li>○ 도세 관련 업무</li> <li>○ 가택수색</li> <li>○ 기타 지방세 업무</li> <li>○ 안심상속</li> <li>○ 공매(동산)</li> <li>○ 체납처분유예</li> </ul>
	체납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납세 징수</li> <li>○ 부동산·자동차 압류 및 해제</li> <li>○ 채권(예금,보험,급여,보증금,보상금,증권등) 압류 및 해제</li> <li>○ 동산 및 기타재산(선박,항공기,건설기계,전세권, 각종회원권, 무체재산권 등) 압류 및 해제</li> <li>○ 독촉장 송달(공시송달 포함)</li> <li>○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법정관리 체납법인 관리</li> </ul>
	징수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납세 징수</li> <li>○ 공매(부동산,자동차,기타재산) 및 정리보류</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경매배당금 교부청구 및 수령</li> <li>○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교부</li> <li>○ 최고장 송달(공시송달 포함)</li> <li>○ 정리보류(소멸시효)</li> <li>○ 영치차량 및 시스템 관리</li> <li>○ 공공기록정보 등록</li> <li>○ 개인회생 및 파산관리</li> </ul>
	수납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 지방세, 수납(소인)관리</li> <li>○ 국·도세 불입 및 지방세입 결산</li> <li>○ 가산금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li> <li>○ 지방세 과오납 환부 및 충당</li> <li>○ 지방세 전자금융 및 신용카드 수납정리</li> <li>○ 지방세 수납, 제증명, 인허가 체납확인</li> <li>○ 타지역 온라인 송금 및 자동이체 수납정리</li> <li>○ 월보작성 및 감사원 분기보고</li> <li>○ 자동차징수촉탁 세입관리</li> <li>○ 세입통합 ARS납부시스템 관리</li> <li>○ 수납시스템관리, 지방세 수납관리 및 통계</li> </ul>
	세외수입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외수입 총괄 관리</li> <li>○ 세외수입 수납 관리</li> <li>○ 수입증지 관리</li> <li>○ 세입 결산</li> <li>○ 시 금고 계약 및 검사</li> <li>○ 기부금품의 모집 업무</li> <li>○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li> <li>○ 과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 및 총괄관리</li> <li>○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공개제도 운영</li> <li>○ 관허사업제한 및 체납정보등록,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기타 행정규제 처분</li> <li>○ 체납고지서 발부</li> <li>○ 체납자 재산조회 및 현지 실태조사</li> <li>○ 체납자 금융자산 및 기타 채권압류 및 해제</li> <li>○ 급여 및 부동산, 차량압류 및 해제</li> <li>○ 경·공매, 교부청구,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li> <li>○ 대금지급 정지</li> <li>○ 체납 결손자료 신용정보회사 제공(신용불량등록) 등</li> </ul>
열린민원 과 장	민원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민원행정 지도 감독</li> <li>○ 민원행정 제도 개선</li> <li>○ 주민편의 시책발굴 운영</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실 환경개선</li> <li>○ 행정사 신고 및 지도감독</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li>○ 민원1회 방문처리 종합 관리</li> <li>○ 민원서류 수발 통제</li> <li>○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li> <li>○ 창구민원 처리</li> <li>○ 민원실 전용 공인관리</li> <li>○ 원스톱민원행정서비스 운영</li> <li>○ 온라인 민원 접수, 처리</li> <li>○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운영</li> <li>○ 120생활민원 접수 및 현지확인 등 종합관리</li> <li>○ 교환실 운영 관리</li> <li>○ 명절연휴종합상황실운영</li> </ul>
	주민여권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권관련 접수·심사 등 일반업무</li> <li>○ 여권관련 수입대체경비, 영수필증 관리</li> <li>○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및 주민등록 지도 감독</li> <li>○ 인감증명발급 및 인감업무 지도감독</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및 업무지도 감독</li> <li>○ 외국인등록, 관리에 관한사항</li> </ul>
	가족관계등록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등록 제 신고, 기록, 교합, 정리</li> <li>○ 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등·초본 열람, 발급</li> <li>○ 결격사유조회 및 회보</li> <li>○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각종 부책관리</li> <li>○ 제적부 및 제적색인부, 각종 부책관리</li> <li>○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오류사항 정비</li> <li>○ 수형인명표 관리</li> <li>○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목록 및 견수표 작성 관할법원제출</li> <li>○ 가족관계등록부 총괄 및 사무개선 추진</li> <li>○ 가족관계등록 소송업무</li> <li>○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운영</li> </ul>
정보통신 과 장	정보기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시 정보화 사업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군산시 정보화 조례 관리</li> <li>○ 정보화위원회 운영 관리</li> <li>○ 군산시 정보화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li> <li>○ 정보화마을 운영 관리</li> <li>○ 산학연관 공동연계 정보화 사업 추진</li> <li>○ 행정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시행</li> <li>○ 서버기반 데스크탑 가상화 시스템 운영 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및 운영 관리</li> <li>○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리</li> <li>○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사업추진</li> <li>○ 정보화 교육 계획 수립 시행 및 교육장 관리</li> <li>○ 정보통신 연찬회</li> <li>○ 공공데이터 발굴 및 제공·개방</li> <li>○ 공공데이터 품질관리</li> <li>○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사업 추진</li> <li>○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분석</li> <li>○ 군산시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관리</li> <li>○ 군산시 웹서버 등 장비 유지 관리</li> <li>○ 군산시 DNS 시스템 운영 관리</li> <li>○ 예산·회계·감사·급여·수당·물품관리등 일반서무</li> <li>○ 타 부서 정보화 사업 지원</li> <li>○ 과 소관 일반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li> </ul>
	정보개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종합정보시스템(새올C/S) 구축 및 운영 관리</li> <li>○ 공통기반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관리</li> <li>○ 온-나라 문서관리시스템 운영 관리</li> <li>○ 전자정부디렉토리시스템(LDAP) 운영</li> <li>○ 행정전자서명 등록 및 인증관리</li> <li>○ 정보화사업 사전협의</li> <li>○ 새올행정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운영 관리</li> <li>○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포털 운영 관리</li> <li>○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과제 발굴 및 구축</li> <li>○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운영 관리</li> <li>○ 스마트 소통시스템 운영 관리</li> </ul>
	정보보호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정책 수립</li> <li>○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관리</li> <li>○ 정보통신보안 감사 및 지도점검실시</li> <li>○ 정보통신·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시행</li> <li>○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보급 및 관리</li> <li>○ 정보통신보안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관리</li> <li>○ 정보통신사업 보안성 검토</li> <li>○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li> <li>○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서버취약점 점검</li> <li>○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li> <li>○ 전산실 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li> <li>○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보호관리 수준 진단 평가</li> <li>○ 개인정보 유출, 재해, 재난 대응계획 수립 및 관리</li> <li>○ 개인정보파일 및 보유현황 관리</li> <li>○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및 관리</li> <li>○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추진</li> <li>○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계획 수립 및 시행</li> </ul>
	정보통신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li> <li>○ 네트워크(업무망·인터넷망)구축 및 운영관리</li> <li>○ 정보통신시설·장비 도입 보급</li> <li>○ 정보 통신관리 예산 운영</li> <li>○ 분청 및 산하 기관 정보통신시설 계획수립 시행</li> <li>○ 각종 통신회선 및 일반전화 사용료등 공공요금 관리 운영</li> <li>○ 통신망 및 그에 따른 S/W등 운영 보급 교육</li> <li>○ 통신 보안관리</li> <li>○ 농어촌 지역 정보통신망 및 시설 구축 추진</li> <li>○ 재난통신망 지원</li> <li>○ 민방공 경보 통신 지원</li> <li>○ 기타 통신에 관한 지원 및 보급</li> <li>○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li> <li>○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검토 민원업무</li> <li>○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 검토 민원업무</li> <li>○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독 지원</li> <li>○ 정보통신공사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지원</li> <li>○ 원격근무 지원 관리</li> <li>○ 무선인터넷 구축 및 운영 관리</li> <li>○ 정보통신실 관리 운영</li> <li>○ 자가통신망 신증설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li> <li>○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li> <li>○ IP전화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li> <li>○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li> <li>○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 관리</li> <li>○ 방송공동수신설비 운영 관리</li> <li>○ 행정방송(영상) 송출시스템 운영 관리</li> <li>○ IP음성동보 방송 송출시스템 운영 관리</li> <li>○ 전자팩스 시스템 운영 관리</li> <li>○ 통화녹취시스템 운영 관리</li> </ul>
일자리경제 과 장	지역경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 기획 조정</li> <li>○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li> <li>○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새만금산업전시관 시설관리</li> <li>○ 군산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li> <li>○ 물류지원센터 시설관리</li> <li>○ 물가조사 및 안정지도 단속</li> <li>○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관리</li> <li>○ 소비자 보호 및 고발센터 운영</li> <li>○ 서민금융정책 홍보 및 지원</li> <li>○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li> <li>○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li> <li>○ 새마을금고 지도 및 육성</li> <li>○ 통계조사의 종합기획 및 기본 통계 정비</li> <li>○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li> <li>○ 인구주택 총조사</li> <li>○ 경제통계 기획조정</li> <li>○ 주요 지역경제 동향 파악 및 분석</li> <li>○ 경기분석 및 경제관련 지표 조사</li> <li>○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li> <li>○ 인구동태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의 실시</li> <li>○ 농업총조사 및 총사업체, 광공업 고용구조 등 통계조사</li> <li>○ 기타 국내 타과 및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일자리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기획 업무 총괄</li> <li>○ 군산형일자리 협약이행 추진 및 점검·평가</li> <li>○ 군산형일자리 상생협의회 및 실무추진위 운영</li> <li>○ 군산형일자리 기금관련 업무 추진</li> <li>○ 군산형일자리 공동교섭 추진, 선진형 임금체계 도입 및 적용</li> <li>○ 군산형일자리 컨설팅사업 추진</li> <li>○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li> <li>○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li> <li>○ 고용위기지역 선정·지원 업무</li> <li>○ 고용동향(통계) 분석 및 자료 작성</li> <li>○ 군산시 명장 선정·지원 사업</li> <li>○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 선정·지원 사업</li> <li>○ 전기차클러스터 인력양성사업</li> <li>○ 전기차 판로촉진</li> <li>○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li> <li>○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li> </ul>
	상권활성화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추진</li> <li>○ 소상공인 지원사업</li> <li>○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 운영</li> <li>○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지원</li> <li>○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지원</li> <li>○ 구독경제 시스템 구축 운영</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li> <li>○ 소상공인 자연재난 피해조사</li> <li>○ 소상공인 관련 단체·위원회 운영 지원</li> <li>○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li> <li>○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운영</li> <li>○ 상권르네상스사업 추진</li> <li>○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정관리 등</li> <li>○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li> <li>○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li> <li>○ 전통시장 공용시설물 보수 및 유지 관리</li> <li>○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지도 감독 등</li> <li>○ 공설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료 부과 징수·관리</li> </ul>
	유통화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분야 활성화방안 수립</li> <li>○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관리</li> <li>○ 군산시 공공배달앱 운영 지원</li> <li>○ 대규모 점포 등록 관리</li> <li>○ 공산품 품질관리 시책 종합기획 조정</li> <li>○ 공산품 품질관리 및 불법공산품 유통 단속</li> <li>○ 공산품 사전검사 위반상품 단속 및 조치</li> <li>○ 위조상품 유통 단속</li> <li>○ 전화권유·방문·통신판매업 신고 및 관리</li> <li>○ 계량업무 지도 감독</li> <li>○ 상거래 질서 확립</li> <li>○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및 취소</li> <li>○ 가격 표시업소 지정</li> <li>○ 유통상생발전위원회 운영</li> <li>○ 지역화폐 발행 및 활성화 시책 추진</li> <li>○ 지역화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관리</li> <li>○ 유효기간 도래 상품권 관리 및 운영</li> <li>○ 지류상품권 파쇄 관리 운영</li> <li>○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정산 운영</li> <li>○ 상품권 가맹점 관리 및 운영</li> <li>○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 운영 관리</li> <li>○ 상품권 판매대행점 관리 및 운영</li> <li>○ 상품권 부정유통 관리 및 운영</li> </ul>
	창업사회적경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센터(청년뜰) 운영</li> <li>○ 창업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조정</li> <li>○ 창업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li> <li>○ 창업지원사업 추진 및 창업특화공간 운영</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박람회 등 공약사업 추진</li> <li>○ 창업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li> <li>○ 창업기업 업종, 형태, 애로사항 등 실태조사 추진</li> <li>○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성과 및 사후관리</li> <li>○ 창업정보 제공, 창업 문화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li> <li>○ 창업 희망키움사업</li> <li>○ 창업STAY지원 사업</li> <li>○ 전북청년 생생지원사업</li> <li>○ 수제창작플랫폼 지원사업</li> <li>○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li> <li>○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li> <li>○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li> <li>○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지원</li> <li>○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li> <li>○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li> <li>○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도·점검 관리</li> <li>○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사업개발, 사회보험, 지역특화)</li> <li>○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사업</li> <li>○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사업</li> <li>○ 마을기업 육성 지원 및 지도·감독</li> <li>○ 협동조합 설립, 변경, 해산 신고 처리</li> <li>○ 협동조합 지원체계·네트워크 구축, 홍보</li> <li>○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 및 우선구매 지원</li> <li>○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자료 구축</li> <li>○ <b>청춘미가 청년창업플랫폼 운영관리&lt;신설&gt;</b></li> </ul>
	고용노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사 업무 종합기획 조정</li> <li>○ 신중년 취업지원사업</li> <li>○ 공공일자리 지원사업</li> <li>○ 취업박람회 관련업무</li> <li>○ 일자리 정보센터 운영</li> <li>○ 직업안내소 지도감독 및 종사자 교육</li> <li>○ 공공근로 질적 향상</li> <li>○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li> <li>○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노동정책 및 시스템 구축</li> <li>○ 노동단체 보조사업 지원</li> <li>○ 생활임금제도 운영</li> <li>○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도감독</li> <li>○ 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노동쟁의 지도</li> <li>○ 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관리</li> <li>○ 노동자 안전강화</li> <li>○ 일모아시스템 사업자권한 승인 및 관리</li> </ul>
산업혁신 과 장	투자유치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유치 업무</li> <li>○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li> <li>○ 투자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li> <li>○ 군산시투자위원회 운영</li> <li>○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업무</li> <li>○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li> <li>○ 군산시용자심의위원회 운영</li> <li>○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li> <li>○ 중소기업 박람회 지원사업</li> <li>○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지원</li> <li>○ 지식산업센터 건립</li> <li>○ 공공투자자금 지원사업</li> </ul>
	미래산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진흥 및 지역특화사업 육성 지원</li> <li>○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li> <li>○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li> <li>○ 이차전지 산업 육성 지원</li> <li>○ 플라즈마 산업 육성 지원</li> <li>○ 탄소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li> <li>○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li> <li>○ 산·학·연·관 공동협력사업 지원</li> <li>○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사업 지원</li> </ul>
	주력산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상용차 포함), 건설기계, 조선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li> <li>○ 자동차·건설기계·조선산업(R&amp;D) 지원</li> <li>○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협력사업 추진</li> <li>○ 자동차융합기술원 협력사업 추진</li> <li>○ 전북자동차포럼 지원</li> <li>○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호남본부 지원</li> <li>○ 전국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지원</li> <li>○ 뿌리산업 핵심기술 R&amp;D 기반 구축</li> </ul>
	산단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공단지 입주계약(변경)</li> <li>○ 농공단지 기반시설 신설 및 정비 사업</li> <li>○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li> <li>○ 산업(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신설 및 정비 사업</li> <li>○ 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li> <li>○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li> <li>○ 산업단지·농공단지 특별회계 관리</li> <li>○ 농공단지 운영관리</li> <li>○ 공장등록 관리업무 및 지도감독</li> <li>○ 공장가동 상황파악 및 제조업체 실태조사</li> <li>○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 승인, 공장등록(변경)</li> <li>○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li> </ul>
	기업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애로시책 종합계획 수립</li> <li>○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계획 수립</li> <li>○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li> <li>○ 친기업사랑 후견인제 업무 추진</li> <li>○ 기업불편 및 산단 현장민원 처리</li> <li>○ 기업규제 발굴 및 처리업무</li> <li>○ 산단 통근버스 및 기숙사 임차 지원</li> <li>○ 일반산업단지 시설 현장점검 및 관리</li> </ul>
새만금에너지 과 장	신재생에너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에너지 산업 업무 전반</li> <li>○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정책 발굴</li> <li>○ 신재생에너지 R&amp;D</li> <li>○ 신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li> <li>○ 신재생에너지 특화 및 융·복합 개발 사업</li> <li>○ 에너지 신산업 추진</li> <li>○ 에너지 계획 수립</li> <li>○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li> <li>○ 새만금 그린산단(RE100) 업무지원</li> </ul>
	새만금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 행정지원 총괄기획 및 조정</li> <li>○ 새만금 행정구역 관련 업무 (소송 대응, 행정체계 협의 등)</li> <li>○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 대응 T/F 구성 및 운영</li> <li>○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운영 및 관련조례 관리</li> </ul>
	새만금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 팸투어 사업 지원</li> <li>○ 새만금 홍보협의체 활동 등 홍보 업무</li> <li>○ 새만금 기본계획(MP)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관련 업무</li> <li>○ 새만금지역내 각종 개발사업 추진 및 인허가 등 협의·지원</li> <li>○ 새만금 어린이랜드 관리·운영</li> <li>○ 새만금 사업관리 협의회 등 사업분야 관련업무</li> <li>○ 새만금특별법 관련 업무</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에너지기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위원회 대응 및 새만금개발청 협조 업무</li> <li>○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 개발 및 조성</li> <li>○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li> <li>○ 에너지 빈곤층 신재생에너지 보급</li> <li>○ 소수력발전, 염분차발전 사업 등</li> <li>○ 신재생에너지 국·도비 공모사업 기획 추진</li> <li>○ 공공청사 및 경로당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li> <li>○ 도서발전소(관리도, 방축도) 관리 및 운영업무</li> <li>○ 도서발전소(관리도, 방축도) 시설물 유지보수</li> <li>○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육상수상태양광) 사업 개발 및 지원</li> <li>○ 시민발전주식회사 운영지원</li> </ul>
	에너지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재난 대응</li> <li>○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li> <li>○ 연료 수급대책 및 조정</li> <li>○ 석유류에 대한 업무 전반</li> <li>○ 연탄 품질관리 지도</li> <li>○ 연탄 수송업자 및 판매소 지도 관리</li> <li>○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li> <li>○ 가스업체 안전점검 사후관리</li> <li>○ 고압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 허가 및 변경 허가</li> <li>○ 액화 석유가스 집단 공급 사업 허가</li> <li>○ 도시가스 시설 공사계획 승인</li> <li>○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li> <li>○ 도시가스 시설 자금융자 관련 업무</li> <li>○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li> <li>○ 액화 석유가스 사용 신고</li> <li>○ LPG 사용 시설 체적판매제 시행 추진</li> <li>○ 가스안전관리 제도 홍보</li> <li>○ 기타 가스 안전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 명령</li> <li>○ 전기사업 인·허가 및 사전심사 업무</li> <li>○ 전기공사업체 면허신청 등에 관한 업무</li> <li>○ 기타 전기관계 업무</li> <li>○ 광업권 협의 및 관리</li> <li>○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li> </ul>
항만해양 과 장	항만물류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운·항만 정책의 수집분석 지원</li> <li>○ 군산항 홍보 및 활성화 협의회 추진</li> <li>○ 항만 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li> <li>○ 항만업체 창업지원 및 육성</li> <li>○ 중앙정책 수집분석 및 대책건의</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준설 협의 및 건의 등 항만시설 지원</li> <li>○ 군산항 시설 활성화 업무 추진</li> <li>○ 새만금 신항만 지원 업무</li> <li>○ 금란도 개발 및 활성화</li> <li>○ 군산항 수출입 물류활성화 업무 추진</li> <li>○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li> <li>○ 군산항 물동량 통계조사 및 분석</li> <li>○ 국제여객선 운항지원</li> <li>○ 수출입 정기항로 개설 및 다변화 추진</li> <li>○ 군산 컨테이너터미널 관련업무</li> <li>○ 군산항 물류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li> <li>○ 물류창고업 등록</li> <li>○ 물류단지 조성사업</li> <li>○ 과내 다른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해양레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항, 주변공간 개발 협의 및 지원</li> <li>○ 마리나항 업무추진</li> <li>○ 해양레저 SOC 사업 업무추진</li> <li>○ 선유도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li> <li>○ 선유도 해수욕장 안전 및 시설물 관리</li> <li>○ 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li> <li>○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 보조사업</li> <li>○ 해양레저 각종 행사 추진 업무</li> <li>○ 해양레저 관련 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li> <li>○ 해양레저시설 관리</li> <li>○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안전관리</li> </ul>
	연안환경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오염 방지 종합대책 수립</li> <li>○ 해양시설 지도 점검</li> <li>○ 해양오염 방제장비 및 기기 관리</li> <li>○ 오·폐수 해양유입 감시 및 감독</li> <li>○ 오염원 무단방류 및 투기행위 단속</li> <li>○ 해양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li> <li>○ 해양오염 피해 보상업무 추진</li> <li>○ 유해생물(해파리 제외) 제거 대책 및 관리</li> <li>○ 해양쓰레기 정화사업</li> <li>○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li> <li>○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시설</li> <li>○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사업</li> <li>○ 어촌마을 해양환경 정비사업</li> <li>○ 적조피해예방 및 관리</li> <li>○ 연안관리 업무전반</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안관리 지역내 정비, 개발사업 시행, 협의</li> <li>○ 공유수면 관리 업무전반</li> <li>○ 공유수면 불법 및 금지 행위 단속</li> </ul>
	섬개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섬 지역 주민 숙원사업 추진</li> <li>○ 섬 발전사업 계획수립</li> <li>○ 섬 발전사업 추진</li> <li>○ 섬 발전 주민소득사업 관리</li> <li>○ 섬 발전사업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li> <li>○ 섬 내 시설물현황 관리 및 통계</li> <li>○ 기타 무인섬 등 섬 개발 관련 업무</li> </ul>
	어항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지방, 정주, 소규모 어항 유지 관리</li> <li>○ 어항 시설 사업 허가·신고수리</li> <li>○ 국가, 지방, 정주, 어항시설사용(점용) 허가·신고</li> <li>○ 어항내 폐유저장시설 및 관리</li> <li>○ 국가, 지방, 정주,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추진</li> <li>○ 어항관련 손실보상 추진, 과태료 부과·징수</li> <li>○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징수</li> <li>○ 어촌뉴딜300사업 추진</li> </ul>
수산식품정책 과 장	수산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수산업 및 수산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시행</li> <li>○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진흥</li> <li>○ 기후 및 해양생태계 변화대응 수산분야 인프라 확충 및 정책 수립</li> <li>○ 수산식품산업 육성시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li> <li>○ 수산식품산업 통계 정보의 분석 및 제공</li> <li>○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li> <li>○ 수산식품산업 컨설팅에 관한 업무</li> <li>○ 수산식품 R&amp;D 및 시제품개발방향 등 육성계획 수립</li> <li>○ 수산식품산업 먹거리 위원회 구성 운영</li> <li>○ 지역특화수산물 선정 및 특화거리조성, 활성화 지원</li> <li>○ 지역특화 수산물 홍보축제(행사) 개최</li> <li>○ 수산푸드 플랜수립 및 수산식품산업발전 실행용역 추진</li> <li>○ 수산분야 정부지원사업 심의 및 통합추진</li> <li>○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및 관리</li> <li>○ 수산업에 관한 금융 통계 조사</li> <li>○ 수산관련 단체 지원 및 관리</li> <li>○ 수산업경영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관리 및 행사</li> <li>○ 수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li> <li>○ 수산분야 충무실시계획 수립·시행</li> <li>○ 연안여객선 운임비 및 운항 지원</li> <li>○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운영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안도 도선운항 업무추진</li> <li>○ 수산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p>수산식품산업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책수립</li> <li>○ 수산식품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및 시설 지원사업 추진</li> <li>○ 수산식품산업단지육성 조례제정 및 운영 지침 수립</li> <li>○ 스마트 수산식품산업 표준모델 및 실행계획 수립</li> <li>○ 수산식품산업단지 수출 관련업무 통합지원 및 컨설팅</li> <li>○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추진</li> <li>○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스마트 팩토리자동화 생산공장 구축 및 운영</li> <li>○ 스마트 팩토리공장 원물및 판매전략 등 실행계획 수립</li> <li>○ 수산식품 R&amp;D센터 연구분석 및 가공장비 시장수요조사 및 장비 구축 계획수립 추진</li> <li>○ 협력지원센터 운영방안 및 조성 등 활성화방안 수립</li> <li>○ 스마트아파트형 가공공장 조성 및 입주 등 운영관리</li> <li>○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연구용역·운영체계 등 설립 추진</li> <li>○ 재단법인 조례제정 및 연구인력 채용 등 운영</li> <li>○ 수산식품 유관기관 협력방안 수립 및 연구인력 운영추진</li> <li>○ 총사업비관리 유관기관(조달청·기재부) 행정절차 협의</li> <li>○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관리계획 및 운영 추진</li> <li>○ 새만금 해수인배수시설 해역이용협의 및 기반조성 사업</li> <li>○ 해수인배수 폐수처리시설 조성 및 운영방안 추진</li> <li>○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이하 ‘수산식품단지’) 투자유치</li> <li>○ 수산식품단지 입주공고 및 사업제안서·설명회 관리</li> <li>○ 수산식품단지 개발청 협의 입주심사 등 투자협약 체결</li> <li>○ 수산식품단지 입주계약 체결 및 분양계약 행정절차 관리</li> <li>○ 수산식품단지 대급납부 및 토지사용 승락신청 관리</li> <li>○ 수산식품단지 공장설립 및 공장등록(변경) 입력 및 운영관리</li> <li>○ 수산식품단지 계약변경 및 재계약·입주해지 등 사후관리</li> <li>○ 수산식품단지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등 사후관리 운영 등</li> </ul>
	<p>수산물유통가공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li> <li>○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 시책발굴 추진</li> <li>○ 수산물 유통·가공 관련단체 지원 및 관리</li> <li>○ 수산물 지역전략사업 육성지원</li> <li>○ 수산물 가공산업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업무</li> <li>○ 수산물 위판장 설치·시설개선사업 및 관리</li> <li>○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li> <li>○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건립사업</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보급지원사업</li> <li>○ 수산물 위생어상자 보급지원사업</li> <li>○ 수산물가공품 HACCP 인증 및 활성화 지원사업</li> <li>○ 수산물 가공업체 역량강화 지원사업</li> <li>○ 수산물 유통사업 활성화 정책지원(어선 얼음구입 등)</li> <li>○ 수산물 부산물 처리지원사업</li> <li>○ 수산물 지역특화 신상품개발지원사업</li> <li>○ 수산물 특산품, 관광상품 개발, 육성관리</li> <li>○ 수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업무</li> <li>○ 수산물 인증(이력)제 정착사업</li> <li>○ 수산물 원산지 이매패류 증명서 발급 및 지도단속</li> <li>○ 수산물 안정성 조사 및 가격안정 대책추진</li> <li>○ 소금산업 진흥 및 염제조 허가 등 운영관리</li> <li>○ 수산물 가공업(냉동냉장업) 신고 및 관리</li> <li>○ 어업법인 설립 및 등록관리</li> <li>○ 군산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육성업무</li> <li>○ 수산물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시행</li> <li>○ 해외시장 개척지원(수출상담, 박람회 등)</li> <li>○ 학교 등 공공급식 수산물 납품업체 품질 지원</li> <li>○ 수산물 유통·가공 관련단체 지원 및 육성</li> <li>○ 수산물(수협) 위판상황 및 가격동향 관리</li> <li>○ 수산연구가공거점단지 운영 및 입주업체 관리(특화팀)</li> <li>○ 수산연구가공거점단지 활성화 및 시설개선(특화팀)</li> <li>○ 수산물 거점단지 입주업체 품질향상 지원(특화팀)</li> <li>○ 수산물종합센터 시설 및 운영관리 총괄 (특화팀)</li> <li>○ 수산물종합센터 사용료 부과 및 징수 (특화팀)</li> <li>○ 수산물종합센터 활성화 (특화팀)</li> <li>○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특화팀)</li> <li>○ 해가람 상표지정 가공업체 지도 및 관리 (특화팀)</li> <li>○ 수산물 특화단지 유통·가공업체 역량강화 지원 (특화팀)</li> <li>○ 수산물 특화단지 주변 환경개선 및 정비 (특화팀)</li> </ul>
어업진흥 과 장	어업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진흥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어업진흥 종합발전 시행계획 수립·시행</li> <li>○ 해양공간 적합성 계획 수립</li> <li>○ 어업진흥 시책발굴 및 평가·목표관리</li> <li>○ 어업분야 지원사업 심의 통합추진</li> <li>○ 어업관련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li> <li>○ 어촌계 설립인가 및 관리</li> <li>○ 귀어·귀촌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li> <li>○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도우미 지원사업</li> <li>○ 어업경영체 등록 및 지원</li> <li>○ 어가 자녀학자금 지원 및 부채 대책 추진</li> <li>○ 어민 취업확대 대책 계획수립 추진</li> <li>○ 어업인 복지증진 및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li> <li>○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및 공익직불제 지원</li> <li>○ 어민공익수당 지원</li> <li>○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li> <li>○ EEZ 골재채취 및 수산교부금 지원</li> <li>○ 연근해어업 제도 조정 및 운영</li> <li>○ 연근해어업 경영개선 등 경쟁력강화에 관한 업무</li> <li>○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관한 업무</li> <li>○ 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li> <li>○ 어업의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li> <li>○ 한중일 어업협정 입어관리에 관한 업무</li> <li>○ 어업협정 대체어장 자원 및 조업동향 조사에 관한 업무</li> <li>○ 연근해어업 조업상황 보고 지도관리</li> <li>○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사업에 관한 업무</li> <li>○ 연근해어업 어구·어법의 관리</li> <li>○ 어구생산업 및 판매업 운영관리</li> <li>○ 연근해어업 관련단체 지원 및 관리</li> <li>○ 해파리 제거 대책 및 관리</li> <li>○ 어업진흥분야 충무실시계획 수립·시행</li> <li>○ 과 소관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li> <li>○ 업무보고 및 의회업무 관련 전반</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양식산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수립 추진</li> <li>○ 어장·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시행</li> <li>○ 내수면어업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li> <li>○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 및 관리</li> <li>○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li> <li>○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양식어업·어장 개발 보급</li> <li>○ 김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지원</li> <li>○ 천해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신고 등 인허가에 관한 업무</li> <li>○ 내수면어업 면허·허가·신고 등 인허가에 관한 업무</li> <li>○ 양식어장 어업장비 임대활용 지원</li> <li>○ 어업·양식업 어업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li> <li>○ 어장·양식장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업무</li> <li>○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심의 시행</li> <li>○ 양식어업 현대화지원 사업 및 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어업 재해대책 및 복구 지원</li> <li>○ 어장관리 시행계획 수립 추진</li> <li>○ 어장정화·정비업 운영관리</li> <li>○ 친환경(인증) 부표 보급 등 어장관리 지원</li> <li>○ 어장·양식장 관리선 지정 및 승인</li> <li>○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및 관리</li> <li>○ 내수면어업 친환경 시설 및 특화개발 지원</li> <li>○ 내수면어업 어업권 사후관리</li> <li>○ 내수면 어업계 설립 운영 및 관리</li> <li>○ 수산종자 생산업 허가 및 육성사업</li> <li>○ 유어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li> <li>○ 수산생물 질병 및 방역 관리대책에 관한 업무</li> <li>○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및 관리</li> <li>○ 양식수산물 자조금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li> <li>○ 양식어업 관련단체 지원 및 관리</li> <li>○ 어업권 원부 및 어장도 발급</li> </ul>
	어업자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연안어장 수산자원 조성 사업</li> <li>○ 수산종자(해면·내수면) 매입 방류 및 자원조성</li> <li>○ 수산자원 관리수면 및 보호수면 지정</li> <li>○ 수산자원 서식환경 조성·관리(인공어초,바다목장,바다숲 등)</li> <li>○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에 관한 업무</li> <li>○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li> <li>○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회복 제도에 관한 업무</li> <li>○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지정 및 관리</li> <li>○ 해양포유류 등 자원의 보존에 관한 업무</li> <li>○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에 관한 업무</li> <li>○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li> <li>○ 천해 및 내수면 어업지도단속계획 수립</li> <li>○ 해면·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단속 및 처리</li> <li>○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관리</li> <li>○ 범칙어선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관리</li> <li>○ 불법어업감시 CCTV 지원사업</li> <li>○ 불법어업 철거사업 및 행정대집행</li> <li>○ 어업자협약 및 어업조정 등 어업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li> <li>○ 어선·어선원·어업인 재해보험 지원</li> <li>○ 어업분야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조사에 관한 업무</li> <li>○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어선어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관리 관련단체 지원 및 관리</li> <li>○ 기타 어업지도에 관한 업무 전반</li> <li>○ 어선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li> <li>○ 친환경어선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사업</li> <li>○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 사업</li> <li>○ 연근해어선 선진화 장비 지원 사업</li> <li>○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 지원 사업</li> <li>○ 연근해어업 허가·신고 등 인·허</li> <li>○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업무</li> <li>○ 연근해어업 분야 시험·연구·교습어업 허가</li> <li>○ 어업 관계법령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 및 관리</li> <li>○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실태조사</li> <li>○ 연근해 어선어업 편익시설 설치 사업</li> <li>○ 어선어업 안전조업 지도 및 관리</li> <li>○ 어선위치정보 보고에 관한 업무</li> <li>○ 어업인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li> <li>○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업무</li> <li>○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 사업</li> <li>○ 자연재난(태·폭풍) 피해어선 복구 사업</li> <li>○ 어선 손실보상 및 분쟁 조정</li> <li>○ 어선등록 및 어선건조·개조 허가 및 관리</li> <li>○ 어선검사 미이행 방지대책 추진</li> <li>○ 어선법 관련 과태료 부과 및 관리</li> <li>○ 어선원부 관리 및 발급</li> <li>○ 어선 압류 및 근저당 설정·해제</li> <li>○ 어선관리시스템 운영 및 통계 관리</li> <li>○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li> <li>○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 및 육성</li> <li>○ 낚시어선·낚시터업 인허가 및 관리</li> <li>○ 낚시터 안전관리·자원보호 감시원 운영에 관한 업무</li> <li>○ 어선 관련단체 지원 및 관리</li> </ul>
문화예술 과 장	문화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과 소관 행정 종합 기획 조정</li> <li>○ 지방문화의 진흥</li> <li>○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li> <li>○ 지방문화단체의 지원 및 문화 행사 지원</li> <li>○ 지방문화원 지원 및 지도감독</li> <li>○ 향교 일요학교 운영 및 지원</li> <li>○ 향토 춘추계 석전대제 및 유도회</li> <li>○ 시사편찬</li> <li>○ 군산시 역사자료</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복지 증진 시설물</li> <li>○ 문화복지 증진 시설물 건립추진</li> <li>○ 문화산업 지원 및 육성</li> <li>○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li> <li>○ 군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li> <li>○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및 운영</li> <li>○ 영화촬영 유치 및 영상 제작 지원</li> <li>○ 역사영화제 개최 및 영화산업 육성</li> <li>○ 주민밀착형 소규모 문화시설 확충</li> <li>○ 문화복지 주요시책 발굴</li> <li>○ 문화 영상업무</li> <li>○ 출판사 및 인쇄소 신고,지도감독</li> <li>○ 공연장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li> <li>○ 종무업무</li> <li>○ 국어책임관 업무추진</li> <li>○ 기타 국내 타과 및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예술진흥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예술의 진흥</li> <li>○ 지방예술 진흥업무 기획</li> <li>○ 지방 예술단체의 지원</li> <li>○ 각종 예술행사 지원</li> <li>○ 예술업무 전반</li> <li>○ 예총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li> <li>○ 진포예술제 추진 미술장식품 업무</li> <li>○ 예술관람 시설물 건립 추진</li> <li>○ 문화바우처 지원사업</li> <li>○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사업</li> <li>○ 문화예술의 거리(시민예술촌)조성사업</li> <li>○ 지역특성화예술 교육지원사업</li> <li>○ 각종 예술제 및 사회단체 지원</li> </ul>
	문화유산활용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활용사업 업무 총괄</li> <li>○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 및 프로그램 개발</li> <li>○ 문화유산 야행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생생문화유산사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li> <li>○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li> <li>○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및 운영</li> <li>○ 무형유산의 발굴,등록,보존,관리</li> <li>○ 서원향교문화유산 활용사업 관리, 운영</li> <li>○ 전통산사문화유산 활용사업 관리, 운영</li> </ul>
	문화유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사적 등) 보수정비</li> <li>○ 국가지정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 등) 보수정비</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등록유산 보수정비</li> <li>○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li> <li>○ 국가유산 등 보상업무</li> <li>○ 국가유산 등 재난·재해 예방 관련업무</li> <li>○ 국가유산 등 안내판 정비사업</li> <li>○ 내항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li> <li>○ 전통사찰 보수정비</li> <li>○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업무</li> <li>○ 도지정·등록 문화유산 보수정비</li> <li>○ 문화유산시설 업무 총괄</li> <li>○ 문화유산 중장기발전계획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li> </ul>
	문화유산보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보존 업무 총괄</li> <li>○ 중요문화유산 특별관리반 운영</li> <li>○ 문화유산관리인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li> <li>○ 문화유산돌봄사업</li> <li>○ 전통사찰 지정업무</li> <li>○ 국가유산매매업 관리</li> <li>○ 매장유산 및 국가유산 현상변경 등 관련 업무 협의</li> <li>○ 매장유산 지표·발굴조사 및 보존관리</li> <li>○ 역사문화권(마한) 중요유적 발굴조사</li> <li>○ 옥구관아 내아터 및 객사터 시굴조사</li> <li>○ 태평양전쟁(한국전쟁) 인공동굴 기초조사</li> <li>○ 수증발굴, 유물조사 등</li> <li>○ 국가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지정 및 등록</li> <li>○ 군산 산북동 화석산지 보호각 관리·운영</li> <li>○ 군산 산북동 공룡발자국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종합 정비계획 추진</li> <li>○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관리·운영</li> <li>○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관리·운영</li> <li>○ 이영춘 가옥 관리·운영</li> <li>○ 기타 시 소유 국가유산 운영관리 및 소규모 보수</li> </ul>
관광진흥 과 장	관광마케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소관 행정 종합기획 조정</li> <li>○ 관광진흥 종합계획수립 및 관광마케팅 전반</li> <li>○ 대표관광지 육성사업</li> <li>○ 시간여행 BI 상품(여행상품) 및 기념품 개발 육성</li> <li>○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li> <li>○ 국내외 홍보마케팅(국내외 관광전, 팸투어 등)</li> <li>○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li> <li>○ TPO 관련 업무</li> <li>○ 관광홍보물 제작</li> <li>○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관리</li> <li>○ 관광업체(여행업 및 관광편의시설업)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관광해설사 및 역사문화탐방 지도사 육성 지도관리</li> <li>○ 관광통역안내원 선발 지도관리</li> <li>○ 군산시티투어버스 운영, 관리</li> <li>○ 관광협력사업(금강권관광협의회 등)</li> <li>○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li> <li>○ 관광소프트웨어 발굴 및 추진</li> <li>○ 전북관광 투어패스 구축</li> <li>○ 관광안내 홍보</li> <li>○ 관광객통계</li> <li>○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li> <li>○ 관광사업 면허등록의 실효 확인</li> <li>○ 과내 다른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축제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 및 행사 전반</li> <li>○ 축제위원회 운영, 관리</li> <li>○ 축제심사 평가</li> <li>○ 축제기획 및 홍보운영</li> <li>○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li> <li>○ 해맞이 행사 추진</li> <li>○ 선유도해수욕장 썸머페스티벌</li> <li>○ 군산관광스탬프투어 운영</li> <li>○ 여행주간 운영</li> <li>○ 구불길 운영, 관리</li> <li>○ 초원사진관 및 임피역 운영</li> <li>○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관리</li> <li>○ 시간여행축제 시민참여 공모사업 추진</li> <li>○ 시간여행축제 연구용역 추진</li> <li>○ 전북1000리길 사업 추진</li> <li>○ 타 부서 주관 축제 자문 및 지원</li> <li>○ 기타 관광분야 행사추진 및 지원</li> </ul>
	관광개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수립 추진</li> <li>○ 관광자원 및 관광지 개발사업추진</li> <li>○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li> <li>○ 동서연해안 관광벨트 구축업무 추진</li> <li>○ 은파관광지 개발 업무</li> <li>○ 해양관광지관련 개발계획수립 및 SOC지원</li> <li>○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본계획수립 및 협의</li> <li>○ 선유도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관리</li> <li>○ 고군산군도 관광편익시설 유지관리 업무</li> <li>○ 관광호텔업무 추진</li> <li>○ 금강호 관광지 개발</li> <li>○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추진</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관광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안내관 정비 및 관리업무 추진</li> <li>○ 관광안내소 유지관리</li> <li>○ 관광편익 시설업무</li> <li>○ 은파관광지 유지관리(보수설계 및 시설물관리)</li> <li>○ 은파관광지 내 경관조명 및 전기시설 관리</li> <li>○ 관광지내 가로등 시설관리</li> <li>○ 은파관광지 내 습지 및 조경관리</li> <li>○ 은파관광지 내 야외무대 대관 및 운영관리</li> <li>○ 은파물빛다리 유지관리(경관조명, 데크, 음악분수)</li> <li>○ 청암산 오토캠핑장 시설 관리</li> <li>○ 기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추진</li> <li>○ 유원시설업 등록,신고 및 지도</li> </ul>
도시재생 과 장	재생기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내 일반서무 및 각종 업무보고 총괄</li> <li>○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관리(사업별 정산총괄)</li> <li>○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li> <li>○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및 변경</li> <li>○ 도시재생뉴딜(인정)사업 국가공모 대응전략 수립</li> <li>○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li> <li>○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li> <li>○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li>○ 도시재생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li> <li>○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 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건축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포함)</li> <li>○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 수립</li> <li>○ 도시재생특별재생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li> <li>○ 주민제안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일반근린형) 시행 및 정산</li> <li>○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li> <li>○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li> <li>○ 중장기 생활SOC 공급계획 수립 및 대응</li> <li>○ 노면열차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연계를 통한 도시재 생기반시설 확충 방안 계획수립</li> </ul>
	원도심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변경</li> <li>○ 도시재생활성화지역(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사업시행</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업무분야	및 정산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내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 사업발굴 및 시행 ○ 국토교통부 예비 사회적 기업 경제조직 구성 및 지원(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주민공모·제안사업 시행 ○ 도시재생특별재생지역 활성화 사업 시행 및 정산 ○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원사업 시행 ○ 도시재생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업 시행
	주거재생 업무분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해제 -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손실보상 -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 행정지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유지 매매, 양여 관리 - 주거환경지구내 시유지 대부료 부과 및 징수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유지 및 관리 ○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지구 지정·해제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 내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지지원형 - 단위사업별 보상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자율주택정비사업(주거지지원형)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주거지 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자율주택정비사업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 사업 시행 및 정산
	재생전략 업무분야	○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발굴 및 사업시행 ○ 관광트램 도입 추진 ○ 도시재생 인정사업(시민문화회관, 경암동 등) 시행 및 정산 ○ 도시재생예비사업(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연차별 국가 공모 대응 수립 ○ 도시재생예비사업(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사업계획 수립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및 집행, 정산 - 소규모 주민공모·제안사업 평가 및 시행 - 소규모 도시재생대학 및 역량강화사업 추진 -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사업발굴·시행 - 주민참여 프로젝트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도시재생사업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 ○ 시민문화회관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 및 정산, 유지관리
	재생역량 업무분야	○ 시민회관 소통협력센터 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 신규 주민공모, 주민역량강화사업 ○ 도시재생 사업 공모 대응 지원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 추진 ○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 도시재생지원(현장)센터 인력 구성 및 운영
체육진흥 과 장	체육진흥 업무분야	○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수립 및 지원 ○ 전국(국제)대회유치 및 체육행사 지원 ○ 군산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및 지도감독 ○ 체육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스포츠마케팅 ○ 월명체육센터 및 국민체력100인증센터 운영·관리 ○ 장애인체육관 시설관리 및 운영 ○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공모 및 해양스포츠대회 유치사업
	운 영 업무분야	○ 월명종합경기장 체육시설 대관 및 운영 ○ 월명종합경기장 체육행사, 경기운영, 경기용품 등 관리 ○ 임대 공공 체육시설 비품 및 재산 관리 ○ 월명종합경기장 조경 및 환경정비 ○ 벚꽃맞이 행사지원 ○ 월명종합경기장 외 체육시설물 대관 및 운영 (실내배드민턴장, 각종 경기장 등) ○ 월명종합경기장 외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수영장관리 업무분야	○ 월명수영장 운영 및 관리 ○ 소룡동 야외수영장 운영 및 관리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li> <li>○ 새만금해양레포츠센터 관리 운영</li> </ul>
	시 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체육시설 건립 및 예산관리</li> <li>○ 월명체육센터 및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li> <li>○ 월명종합경기장 체육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li> <li>○ 월명종합경기장 체육시설 전기, 기계설비 분야</li> <li>○ 월명종합경기장 시특법 관리업무</li> </ul>
	국민체육센터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시설 대관 및 운영</li> <li>○ 수영장 및 각 경기장 유지보수 및 관리</li> <li>○ 운영비품 및 용품 등 관리</li> <li>○ 이용객 보건 및 안전관리</li> </ul>
위생행정 과 장	위생행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 종합기획</li> <li>○ 예산회계 편성 및 관리 등 과 사무업무</li> <li>○ 위생행정 종합계획 수립</li> <li>○ 이·미용사 면허 관리</li> <li>○ 공중위생업소 신고·관리 및 행정처분</li> <li>○ 공중위생업소 등 지원</li> <li>○ 위생용품 등 제조업 신고·관리 및 행정처분</li> <li>○ 공중위생업소 및 노래연습장 위생교육 관리</li> <li>○ 다중이용시설(약수터) 위생 관리</li> <li>○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등록·관리 및 행정처분</li> <li>○ 노래연습장 등록·관리 및 행정처분</li> <li>○ 문화콘텐츠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등) 등록·관리 및 행정처분</li> <li>○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관리</li> <li>○ 짬뽕특화사업 업무 전반</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식품위생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 종합계획 수립</li> <li>○ 식품 접객업(일반음식점 유흥·단란주점) 허가·신고 관리 및 행정처분</li> <li>○ 식품위생(일반음식점, 휴휴·단란주점) 관련단체 지도 관리</li> <li>○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li> <li>○ 음식문화 개선 업무 및 지원</li> <li>○ 모범업소 지정 관리</li> <li>○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li> <li>○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유흥·단란주점) 위생지도점검 및 단속</li> <li>○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통보 및 사후관리</li> <li>○ 위생등급 업소 지정 관리</li> <li>○ 군산 맛집 지정 관리</li> <li>○ 향토전통·대표음식 발굴·육성</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식품안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li> <li>○ 위해식품 관리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li> <li>○ 식품제조가공업소등 등록(신고)·관리 및 위생등급제 운영, 행정처분</li> <li>○ 식품첨가물·용기·포장류 제조업 등록(신고)·관리 및 행정처분</li> <li>○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수거검사 등</li> <li>○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관리 및 행정처분</li> <li>○ 식품위생(휴게음식점, 제과점)관련단체 지도·관리</li> <li>○ 공유주방 등록 관리 및 행정처분</li> <li>○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소분 판매업 등 신고·관리 및 행정처분</li> <li>○ HACCP, 유전자변형식품 위생지도 관리</li> <li>○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관리 및 행정처분</li> <li>○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식중독 예방관리</li> <li>○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관리 및 위생지도 관리</li> <li>○ 유통식품 위생관리 지도 및 안전성 수거 검사 등</li> <li>○ 부정불량식품 지도·관리</li> <li>○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원,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관리</li> <li>○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 전반</li> <li>○ 조리사 면허 발급 및 영양사 관리</li> </ul>
복지정책 과 장	복지기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li> <li>○ 국·과 예산 및 회계 업무전반</li> <li>○ 군경묘지 현충 시설물 관리 및 국가유공자 안장사무</li> <li>○ 주민생활지원서비스종합계획 수립·조정</li> <li>○ 3.1절, 현충일행사</li> <li>○ 노숙인시설업무</li> <li>○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등</li> <li>○ 사회복지무 요원 관리</li> <li>○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li> <li>○ 행정재산 시설 및 물품 관리</li> <li>○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li> <li>○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li> <li>○ 사회복지관련 행사 추진</li> <li>○ 기타 국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지역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li> <li>○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li> <li>○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li> <li>○ 종합사회복지관 운영</li> <li>○ 이웃돕기 및 후원결연</li> <li>○ 복지자원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li> <li>○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li> <li>○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련 업무 지원</li> <li>○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지원</li> </ul>
	기초생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결정 및 통지</li> <li>○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생계,해산장제,교육)</li> <li>○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및 관리</li> <li>○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li> <li>○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li> <li>○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li> <li>○ 의료급여부당이득금(구상금)부과 및 체납관리</li> <li>○ 의료급여 진료비 정산 및 환수</li> <li>○ 의료급여 중복·이중청구 관리</li> <li>○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li> <li>○ 의료급여 사후관리(의료급여보상금, 환급금, 항암면역 초과자 및 사망 후 관리, 중복투약자 관리)</li> <li>○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지원</li> <li>○ 의료급여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li> <li>○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등록 지원</li> <li>○ 의료급여대상자 자격 관리</li> <li>○ 의료급여 대지급금 지원 및 관리</li> <li>○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li> <li>○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li> <li>○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관리</li> <li>○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보장구지원 관리</li> <li>○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li> <li>○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조건부과</li> <li>○ 자활사업대상자 관리(자활지원계획)</li> <li>○ 자활사업 참여 결과 조건불이행자 결정 및 관리</li> <li>○ 조건부수급자 맞춤형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사업</li> <li>○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 사업</li> <li>○ 자활근로사업(시운영, 민간위탁)운영</li> <li>○ 자활기업 지원 사업</li> <li>○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지도 점검</li> <li>○ 자산형성지원사업</li> <li>- 희망 I, II 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기금 용자 및 상환 관리</li> <li>○ 차상위 자활보장결정 및 통지</li> </ul>
	희망복지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복지 업무전반</li> <li>○ 군산시 희망 129센터 운영·관리</li> <li>○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li> <li>○ 통합사례관리사 운영·관리</li> <li>○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li> <li>○ 지역보호체계 운영·관리</li> <li>○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li> <li>○ 민간기관 긴급복지 지원 업무 전반</li> <li>○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 운영</li> <li>○ 지역자원 연계 사업 운영</li> </ul>
	통합조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규신청자 공적자료 요청</li> <li>○ 추가 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li> <li>○ 조사결과 반영</li> <li>○ 보장결정 이전 조사 관련 소명처리</li> <li>○ 타부처 업무 조사(보훈청, 교육부 등)</li> </ul>
	통합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 수시 및 정기 확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료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li> <li>- 부양의무자 및 부정수급자 조사 등</li> </ul> </li> <li>○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재산변동, 가구원 인적변동 등</li> </ul> </li> </ul>
	의료보장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관리</li> <li>○ 장애인 보조기기(IoT디바이스 관리), 요양비지급</li> <li>○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지급 관리</li> <li>○ 본인부담 보상금, 상한제, 환급금 관리</li> <li>○ 의료급여 자격관리(취득, 상실, 변경)</li> <li>○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li> <li>○ 의료급여 사례관리</li> <li>○ 장기입원대상자 심평원 심사연계</li> <li>○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치석제거 대상자 관리</li> <li>○ 임신, 출산 진료비 관리 및 환급 관리</li> <li>○ 사망, 상실대상자 급여비용관리</li> <li>○ 투여기간관리 의약품 및 시술관리 치료재료 투역내역관리</li> <li>○ 의료급여 연장승인 관리</li> <li>○ 입양아동 의료진료비 정산</li> <li>○ 사후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 이중청구 진료비 관리</li> <li>○ 정산진료비 관리</li> <li>○ 환수환불의료비관리(초재심의료급여비, 원외처방약재비)</li> <li>○ 사후관리</li> <li>○ 상해요인조사(사후) 100만원 미만</li> <li>○ 관외 장기입원자 사례관리</li> </ul>
경로장애인 과 장	경로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일반서무, 예산, 회계, 경리, 재산관리 등</li> <li>○ 경로복지 업무기획 및 업무전반</li> <li>○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추진</li> <li>○ 기초연금 보장결정 및 지원</li> <li>○ 경로식당 운영 및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 추진</li> <li>○ 노인건강진단 사업</li> <li>○ 거동불편 노인보행보조기 지원</li> <li>○ 대한노인회 운영지원</li> <li>○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li> <li>○ 노인 교실 신고 및 운영지원</li> <li>○ 어버이날 행사 및 경로효친 업무 추진</li> <li>○ 노인의 날 행사주진</li> <li>○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li> <li>○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지원</li> <li>○ 경로우대시책 추진</li> <li>○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li> </ul>
	경로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시설업무 기획 및 업무 총괄</li> <li>○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li> <li>○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li> <li>○ 노인재가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li> <li>○ 노인복지시설 입.퇴소 운영관리</li> <li>○ 경로당 설치 및 변경 신고</li> <li>○ 경로당 운영 지원</li> <li>○ 경로당 집기 지원</li> <li>○ 경로당 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사업 추진</li> <li>○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li> <li>○ 노인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li> <li>○ 노인시설관련 사회복지법인 관리</li> <li>○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li> <li>○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관리</li> </ul>
	장애인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li> <li>○ 장애인단체 기능보강사업 추진</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li> <li>○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li> <li>○ 장애연금, 수당(아동수당) 지원</li> <li>○ 장애인등록 및 심판청구·재판정 관리</li> <li>○ 장애통합카드관리 교부 및 관리</li> <li>○ 장애인 민관협의회 관리</li> <li>○ 장애인 의료비 및 등록진단비 지원</li> <li>○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li> <li>○ 장애인가정 출산지원비 지원</li> <li>○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추진</li> <li>○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 및 서비스 연계</li> <li>○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li> <li>○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li> <li>○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li> <li>○ 재가여성장애인CCTV, 지적장애인 배회감지지 설치지원</li> <li>○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사업</li> </ul>
	장애인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li> <li>○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li> <li>○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li> <li>○ 장애인 복지시설 입·퇴소 관리</li> <li>○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li> <li>○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li> <li>○ 장애인주차표지 교부 및 관리</li> <li>○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및 지원센터 지원</li> <li>○ 장애인 시설 생계비 지원</li> <li>○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li> <li>○ 시설장애인자립지원체계구축 사업</li> <li>○ 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 사업 운영</li> </ul>
	사회서비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추진</li> <li>○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li> <li>○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 사업 추진</li> <li>○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추진</li> <li>○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사업 추진</li> <li>○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추진</li> <li>○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li> <li>○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추진</li> <li>○ 언어발달지원사업 추진</li> <li>○ 일상돌봄서비스사업</li> <li>○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지정), 휴·폐업 관리</li> <li>○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및 지도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사회서비스 관련 업무</li> </ul>
아동정책 과 장	아동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사시설 기획업무</li> <li>○ 화장장 및 봉안당 운영 관리</li> <li>○ 매·화장 및 묘지에 관한 업무</li> <li>○ 공·사설 봉안당 및 자연장에 관한 업무</li> <li>○ 공·사설 공원묘지에 관한 사무</li> <li>○ 장례식장 설치 신고 및 지도점검</li> <li>○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 관련 업무</li> </ul>
	보육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정책 총괄기획 및 조정</li> <li>○ 아동친화 주요업무 계획 수립</li> <li>○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li> <li>○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li> <li>○ 아동영향평가제도 업무</li> <li>○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li> <li>○ 부모학교 운영</li> <li>○ 아동행복예산서</li> <li>○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li> <li>○ 생생직업체험교실 운영</li> <li>○ 어린이 숲체험교실 운영</li> <li>○ 어린이 놀이터 놀이수업 운영</li> <li>○ 어린이 숲속 걷기대회</li> <li>○ 가천 그림그리기대회 지원</li> <li>○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운영(소룡)</li> <li>○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li> <li>○ 지역돌봄협의체 운영</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 자격정지·자격취소</li> <li>○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청문</li> <li>○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li> <li>○ 어린이집 행정쟁송</li> <li>○ 어린이집 현황 분기보고</li> <li>○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li> <li>○ 보육료 등 보조금 예산 지원 및 정산</li> <li>○ 영유아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자격대상 변동관리</li> <li>○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현대화사업</li> <li>○ 직장어린이집 설치</li> <li>○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및 시범사업 운영</li> <li>○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li> <li>○ 어린이집연합회 행사지원 및 관리</li> <li>○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정관리</li> <li>○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임면관리</li> <li>○ 경력(재직)증명서 발급</li> <li>○ 가정양육수당 지급</li> <li>○ 부모급여 지급</li> <li>○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관리</li> <li>○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관리</li> </ul>
	아동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관련업무 기획 및 운영전반</li> <li>○ 사회복지법인(아동) 및 시설 지도 감독</li> <li>○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li> <li>○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관리</li> <li>○ 학대피해아동 운영·관리</li> <li>○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li> <li>○ 경계성 지능아동 자립지원</li> <li>○ 요보호아동 시설 입·퇴소 및 사후관리</li> <li>○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양육상황 점검</li> <li>○ 아동급식지원 및 관리(방학중, 학기중, 공휴일)</li> <li>○ 아동수당 대상자 결정 및 지원</li> <li>○ 디딤씨앗통장 발급·해지</li> <li>○ 입양아동 및 입양기관 지원</li> <li>○ 가정위탁아동 보호</li> <li>○ 어린이날 행사 추진</li> </ul>
	아동보호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 업무 전반</li> <li>○ 아동보호체계 개편</li> <li>○ 아동학대 조사 업무</li> <li>○ 아동학대 긴급전화 운영</li> <li>○ 아동학대 신고접수</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응급조치, 즉각분리</li> <li>○ 아동학대 현장조사</li> <li>○ 아동학대 사례판단(사례회의)</li> <li>○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li> <li>○ 아동학대 사례관리 지도·감독</li> <li>○ 아동학대 사례종결</li> <li>○ 아동학대행위자 수사의뢰</li> <li>○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li> <li>○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li> <li>○ 정보연계협의체 운영</li> <li>○ 아동학대 예방사업</li> <li>○ e아동행복지원사업</li> <li>○ 아동학대 통계작성</li> </ul>
	드림스타트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림스타트 운영 총괄</li> <li>○ 드림스타트센터 청사 관리</li> <li>○ 취약아동 통합사례관리</li> <li>○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관리</li> <li>○ 지원체계 구성 운영 및 지역자원 연계</li> <li>○ 인지/언어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li> <li>○ 정서/행동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li> <li>○ 신체/건강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li> <li>○ 지역아동센터 지원운영 총괄</li> <li>○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금 지원 및 정산 (기본운영비, 특성별 지원보조금 등)</li> <li>○ 지역아동센터 정기·수시 지도감독</li> <li>○ 지역아동센터 관련업무 행정쟁송</li> <li>○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 및 정산</li> <li>○ 지역아동센터 급식 실태점검</li> <li>○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관련 업무전반</li> <li>○ 부모/가족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li> <li>○ 아이맘스카페 운영 및 관리</li> <li>○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입·퇴소보고(돌봄결정) 승인</li> <li>○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돌봄결정 통지</li> <li>○ 지역아동센터 예산·결산 승인</li> <li>○ 지역아동센터 신규 설치 및 이전 등 컨설팅</li> <li>○ 지역아동센터 휴업·폐업·재개 신고</li> <li>○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관리</li> <li>○ 지역아동센터 행사지원 및 관리</li> <li>○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관리</li> </ul>
여성가족청소년	여성정책	○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과 장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 유지 관리</li> <li>○ 일반 서무, 예산, 회계, 경리, 재산관리 등</li> <li>○ 여성 복지 업무 기획 조정</li> <li>○ 저소득 한부모가족 관리 및 지원</li> <li>○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감독</li> <li>○ 여성권리 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li> <li>○ 여성 정책 개발 종합 기획</li> <li>○ 여성 정책 시행개선 및 평가 분석</li> <li>○ 여성관련 각종행사 지원</li> <li>○ 여성안전 인프라 구축</li> <li>○ 양성평등위원회(양성평등감독관제) 구성 및 운영</li> <li>○ 여성단체 지도 육성</li> <li>○ 양성평등기금 관리</li> <li>○ 한부모가족복지시설(법인)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li> <li>○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li> <li>○ 저녁(오후)돌봄교실 사업지원</li> <li>○ 성별영향평가 운영</li> <li>○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사업지원</li> <li>○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운영</li> <li>○ 자원봉사단체의 지원</li> <li>○ 자원봉사 홍보 및 교육</li> <li>○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지원</li> <li>○ 자원봉사자 관리 및 수요처 연계 지원</li> <li>○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운영</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여성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상담 업무 기획 및 운영전반</li> <li>○ 성·가정폭력 보호시설지원 및 상담지원</li> <li>○ 피해자치료 전담의료 기관업무 및 응급키트관리</li> <li>○ 요보호 여성관리 및 보호</li> <li>○ 여성 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li> <li>○ 여성 기술 기능 교육</li> <li>○ 취미 교실 운영</li> <li>○ 여성 사회 교육</li> <li>○ 교육 기자재 관리</li> <li>○ 교육성과의 분석 평가</li> <li>○ 교육 수료자 사후 관리</li> <li>○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납</li> <li>○ 아동여성 보호 연대운영</li> <li>○ 성·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변경,폐지신고</li> <li>○ 보호시설 입.퇴소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장시설수급자 책정 및 생계비 지원</li> <li>○ 성매매예방 교육</li> <li>○ 공유재산 관리(월명동 18-14)</li> <li>○ 여성 취업지원사업 운영</li> <li>○ 그 밖의 여성교육에 관한 사항</li> <li>○ 직장 성희롱예방</li> <li>○ 인력개발센터운영</li> <li>○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li> <li>○ 결혼이민여성지역일자리 취업연계</li> </ul>
	<p>가족다문화지원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취업 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li> <li>○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사업</li> <li>○ 다문화가족 관련 축제 및 행사 지원</li> <li>○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개발</li> <li>○ 결혼이주여성 방문교육사업</li> <li>○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통계관리</li> <li>○ 그밖에 다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li> <li>○ 출산지원금 지원 및 관련 조례 제·개정</li> <li>○ 국내·국제 결혼 중개업소 신고등록 및 지도감독</li> <li>○ 군산시가족센터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li> <li>○ 군산시가족센터 위탁 관리</li> <li>○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li> <li>○ 아이돌봄 지원대상 결정통지</li> <li>○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관리</li> <li>○ 군산 생활SOC 복합화 가족센터 건립사업</li> <li>○ 첫만남이용권 사업</li> </ul>
	<p>청 소 년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및 참여활성화 프로그램 운영</li> <li>○ 군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li> <li>○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건립</li> <li>○ 청소년 정책·분석 평가</li> <li>○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li> <li>○ 청소년 동반자 및 안전망 사업추진</li> <li>○ 군산시 청소년상 및 모범청소년 유공자 포상</li> <li>○ 청소년 정책제안 의견수렴 및 청소년 참여 예산제 운영</li> <li>○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li> <li>○ 청소년육성위원회, 학교폭력·학교밖 위원회 운영</li> <li>○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li> <li>○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li> <li>○ 청소년수련시설 위탁관리및운영지원</li> <li>○ 청소년문화행사 및 동아리활동 지원</li> <li>○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꾸처 지원</li> <li>○ 위기청소년 특별지원</li> <li>○ 자매도시 청소년 상호 문화교류 사업</li> <li>○ 청소년증 발급 관리</li> <li>○ 청소년 참여위원회,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li> <li>○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지원 및 과징금 부과·징수·포상금 지급</li> <li>○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운영</li> <li>○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li> <li>○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li> <li>○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 운영·추진</li> </ul>
환경정책 과 장	환경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 종합기획</li> <li>○ 환경정책 종합계획 수립</li> <li>○ 환경보전 홍보교육 및 행사관련 업무</li> <li>○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li> <li>○ 사회단체 환경사업 지원 및 관리</li> <li>○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관리</li> <li>○ 직도사격장 환경영향 조사</li> <li>○ 군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li> <li>○ 군산비행장 소음 및 토양오염관련 제반</li> <li>○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기후환경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li> <li>○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종합계획 수립</li> <li>○ 수소차 구매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li> <li>○ 탄소포인트제 운영</li> <li>○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li> <li>○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전개</li> <li>○ 석면건축물관리 및 석면피해구제 업무</li> <li>○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li> <li>○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업무</li> <li>○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업무</li> <li>○ 비산먼지, 소음·진동 생활민원 처리</li> <li>○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 및 지도단속</li> <li>○ 다중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련 업무</li> </ul>
	환경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li> <li>○ 환경관련법 위반시설 수사 및 사건 송치</li> <li>○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및 지도단속</li> <li>○ 타 부서 환경관계법 적법성 검토 협의</li> <li>○ 악취저감을 위한 소통협의체 구성 운영</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화학물질 사고 현장출동 및 초기대응</li> <li>○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관리)</li> <li>○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업무</li> <li>○ 환경기술협의회 관리</li> <li>○ 화물물질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의견 작성</li> <li>○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li> <li>○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li> <li>○ 화학물질 배출저감사업장 관리</li> <li>○ 환경감시용 드론 장비 관리 운영</li> <li>○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li> <li>○ 환경신문고(128) 운영 및 배출시설 민원처리</li> <li>○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 운영 관리</li> <li>○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운용 데이터 관리</li> <li>○ 악취배출원 조사 현황 파악 및 민원처리</li> <li>○ 악취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li> <li>○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li> <li>○ 기타수질오염과 설치 신고 및 지도점검</li> </ul>
	수질보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계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제반사항 추진</li> <li>○ 전국오염원 조사 관련 업무</li> <li>○ 수질오염측정망(하천, 호소) 운영</li> <li>○ 금강수계관리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li> <li>○ 동군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li> <li>○ 동군산산업단지 입주기업 폐수처리 관련 협의</li> <li>○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관리</li> <li>○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 시·군 평가 업무</li> <li>○ 수질오염사고 방제 및 원인조사</li> <li>○ 가축분뇨 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li> <li>○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 업무</li> <li>○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li> <li>○ 악취방제단 운영 및 악취 모니터링</li> </ul>
	생태환경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환경 보전계획 수립</li> <li>○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li> <li>○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기획 조정</li> <li>○ 자연마당 조성사업 관리</li> <li>○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 및 관리</li> <li>○ 야생 생물보호와 수렵 면허발급 및 단속</li> <li>○ 특정도서 관리</li> <li>○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및 예방사업</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계 교란생물 분포도 조사 및 제거사업</li> <li>○ 철새도래지 감시 및 비둘기사 관리</li> <li>○ 생태계서비스지불제관리계약사업 추진</li> <li>○ 철새 도래지 관리 및 불법수렵 단속</li> <li>○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li> <li>○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및 관리</li> <li>○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및 관리</li> </ul>
	대기환경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먼지특별법 제반사항 및 대책수립</li> <li>○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li> <li>○ 전기화물차 및 전기버스 보급 지원</li> <li>○ 전기충전시설 관리단속 및 과태료 부과</li> <li>○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li> <li>○ 노후경유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사업</li> <li>○ 어린이통학차 및 화물차 LPG 전환사업</li> <li>○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관련 업무</li> <li>○ 자동차 배출가스 민원처리 등</li> <li>○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및 운영 관리</li> <li>○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li> </ul>
	생태교육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li> <li>○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 협력 업무</li> <li>○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li> <li>○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li>○ 환경강사(환경교육사) 양성 및 지원</li> <li>○ 금강미래체험관 운영</li> <li>○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운영</li> <li>○ 금강미래체험관 전시관·전시품 관리</li> <li>○ 금강미래체험관 및 부속시설 관리·유지보수</li> <li>○ 금강미래체험관 조류 사육 및 관리</li> </ul>
자원순환 과 장	청소행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과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li> <li>○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li> <li>○ 청소대행업체 및 직영미화원 관리</li> <li>○ 청소장비 개선 및 보강</li> <li>○ 쓰레기 봉투 및 종량제 추진</li> <li>○ 대형(다량)폐기물 수집운반비 부과·징수</li> <li>○ 국토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 추진</li> <li>○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li> <li>○ 도서지역 및 농촌쓰레기 처리 및 관리</li> <li>○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과태료부과</li> <li>○ 청소관련 각종 홍보업무</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청소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과내 다른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li>○ 매립장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li> <li>○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li> <li>○ 매립장 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li> <li>○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li> <li>○ 쓰레기매립 및 복토계획 수립 시행</li> <li>○ 매립장 시설장비 취득 및 운영관리</li> <li>○ 침출수 처리검사 및 지하수 오염가스 성분조사 관리</li> <li>○ 반입쓰레기 계량시설 운영 및 통계에 관한 사항</li> <li>○ 반입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및 수납관리에 관한 사항</li> <li>○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및 기금운용</li> <li>○ 각종 전기·기계 설비 및 부속설비 시험 운영</li> <li>○ 단계별 매립장 시설보수 등 공사에 관한 사항</li> <li>○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운영 관리</li> <li>○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li> </ul>
	재 활용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품 관련 민원처리</li> <li>○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li> <li>○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li> <li>○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li> <li>○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 부과·징수</li> <li>○ 1회용품 지도점검</li> <li>○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등 관련업무</li> <li>○ 폐기물처리미신고(2,000㎡미만)관리</li> </ul>
	청소지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처리업 지도단속</li> <li>○ 폐기물 배출업체 지도단속</li> <li>○ 폐기물 처리시설(소각 등) 지도단속</li> <li>○ 폐기물 재활용업체 신고 및 지도단속</li> <li>○ 폐기물 처리업허가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li> <li>○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신고</li> <li>○ 폐기물처리신고(2,000㎡이상) 및 관리</li> <li>○ 기타 폐기물처리 신고업무</li> <li>○ 폐기물관리법 관련 타부서 협의</li> <li>○ 지정폐기물 처리 및 지원협의회 관련업무</li> </ul>
산림녹지 과 장	녹지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목일 행사 추진</li> <li>○ 나무심기 조례 및 종합계획 수립</li> <li>○ 나무심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li> <li>○ 나무심기 시민·단체·기업 등 네트워크 구축</li> <li>○ 나무심기 범시민 운동 확산 지원 등</li> <li>○ 녹지기금 관리 및 운용</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헌수 모금·식재 및 관리</li> <li>○ 임업 자금 융자</li> <li>○ 농림수산사업(공모사업 등) 관리</li> <li>○ 산림 기본통계 및 임산물 생산통계</li> <li>○ 공유임야 관리</li> <li>○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li> <li>○ 입목등기</li> <li>○ 애림 계몽 홍보</li> <li>○ 임업기술 개량 보급</li> <li>○ 임업단체 지도 감독</li> <li>○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련 업무</li>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li> <li>○ 비밀문서 관리 및 충무계획 수립</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도시숲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림 기본계획수립</li> <li>○ 도시숲 조성계획수립</li> <li>○ 그린뉴딜사업(국가공모) 발굴, 사업추진</li> <li>○ 생활SOC사업 발굴 및 공모대응</li> <li>○ 녹색자금 지원(공모)사업 발굴, 사업추진</li> <li>○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li> <li>○ 미세먼지 차단숲·저감숲 조성</li> <li>○ 자녀안심 그린숲, 명상숲 조성</li> <li>○ 생활밀착형 숲 조성(실내·실외 정원)</li> <li>○ 가로 광장 조성, 해안도로 나무 심기</li> <li>○ 작은숲·마을숲 조성 및 운영</li> <li>○ 가로숲 및 유희부지 나무심기</li> <li>○ 공공청사 옥상 및 벽면 녹화</li> <li>○ 녹색주차장 추진 및 운영</li> <li>○ 자연휴양림·산림욕장·수목원 조성</li> <li>○ 타부서 조정사업 추진 및 협의</li> <li>○ 녹지조경 설계 및 실행</li> </ul>
	보 호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전용 허가(신고·협의) 및 사후관리</li> <li>○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관리</li> <li>○ 산림보호구역지정·시업 허가 및 관리</li> <li>○ 산지이용 구분조사 및 관리</li> <li>○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관리</li> <li>○ 조림 기본계획 수립</li> <li>○ 조림사업 및 풀베기</li> <li>○ 산불 예방 및 진화</li> <li>○ 산림 병충해 방제 및 대책본부 운영</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li> <li>○ 산림관계법 위반 사건처리 및 사법 업무</li> <li>○ 숲가꾸기 사업</li> <li>○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사후관리</li> <li>○ 임산물 굴·채취허가 및 종자채취 지도</li> <li>○ 임목벌채 허가(신고) 및 의무조림 등 사후관리</li> <li>○ 보호수 지정 · 해제 및 관리</li> <li>○ 목재생산업 등록 및 관리</li> <li>○ 산림보호 부정 임산물 단속</li> <li>○ 임산물 반출 통제</li> <li>○ 산지 정화, 산지정화 관리원 운영</li> <li>○ 임산부산물 증산</li> <li>○ 산림감시 사회복지요원 관리</li> </ul>
	도시녹화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수 기본(조성)계획 수립</li> <li>○ 가로수 조성, 벚꽃길 명품화 사업</li> <li>○ 가로수 식재·유지관리·협약(타기관 타부서 조성사업 포함)</li> <li>○ 가로수 이식사업 및 민원 처리</li> <li>○ 녹지·가로수 등 피해조사 및 변상금 부과</li> <li>○ 숲 조성지 관리(도시숲, 미세먼지차단숲, 자녀안심 그린숲, 명상숲, 작은숲, 마을숲 등)</li> <li>○ 가로변 공한지 화단조성 및 관리</li> <li>○ 수벽(차폐) 조성 및 관리</li> <li>○ 조경수·관상수 관리</li> <li>○ 꽃길조성, 초화류 생산·식재 및 관리</li> <li>○ 완충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li> <li>○ 시영 양묘장 관리</li> <li>○ 아파트·공장·기관 등 조경입지 승인</li> <li>○ 만경강 생태숲 조성 및 사후관리</li> <li>○ 소규모 조경사업 추진</li> </ul>
	공 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li> <li>○ 도시공원조성계획(변경)수립 및 결정</li> <li>○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행 (타부서 공원 조성사업 포함)</li> <li>○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li> <li>○ 도시공원 점·사용 허가</li> <li>○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 및 행위지도</li> <li>○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및 조성</li> <li>○ 어린이 체험숲 조성</li> <li>○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li> <li>○ 어린이 체험숲 운영 및 유지관리</li> <li>○ 도시공원 내 휴게 및 휴게시설 설치</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li> <li>○ 도시공원 내 수목 전정 등 수목관리</li> <li>○ 타부서 공원조성지 유지관리</li> <li>○ 도시공원 내 재해예방 및 복구</li> <li>○ 도시공원(근린·어린이공원 등) 환경 개선사업</li> </ul>
	산 립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석채취허가 및 관리(민원처리 등)</li> <li>○ 토석채취 허가지 복구승인 및 지도</li> <li>○ 채석단지 지정 및 관리</li> <li>○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관련업무 처리</li> <li>○ 도시지역 내 토석채취 협의</li> <li>○ 광산개발 시 산지일시사용 및 토석채취허가</li> <li>○ 임도사업(신설·보수·구조개량)추진 및 관리</li> <li>○ 사방사업 및 산사태 위험지 관리</li> <li>○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li> <li>○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업무처리</li> <li>○ 숲길 조성 및 관리(정비)</li> <li>○ 등산로 조성 및 관리(정비)</li> <li>○ 산사태예방지원단 운영</li> <li>○ 산림재해대책 추진</li> </ul>
안전총괄과	안전총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li> <li>○ 기타 국내 타과 및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li>○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li> <li>○ 과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과분야 예산 총괄, 계획 수립</li> <li>○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li> <li>○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지원 및 관리</li> <li>○ 재난종합상황실 일·숙직 근무자 관리</li> <li>○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li> <li>○ 재난상황의 접수·파악, 전파</li> <li>○ 긴급구조기관 출동정보, 대응상황 접수·전파</li> <li>○ 국민안전의 날 운영</li> <li>○ 안전체험시설 관리 및 확충</li> <li>○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수립·시행</li> <li>○ 군산시 안전관리 계획 작성</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li>○ 재난협업기관 관리 지원</li> <li>○ 군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지원</li> <li>○ 재난관련 교육 운영</li> <li>○ 안전문화 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li> <li>○ 안전신문고 처리 및 모니터링 현장 점검 및 조치</li> <li>○ 안전점검의 날 운영</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운영</li> <li>○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및 물놀이안전관리</li> <li>○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li> <li>○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및 취소, 안전관리</li> <li>○ 긴급통신수단 확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긴급통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안전통신망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긴급통신 관련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li> </ul>
	민 방 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방위 계획의 수립</li> <li>○ 민방위 상황실 운영</li> <li>○ 전시 인력 및 자원 동원에 관한 사항</li> <li>○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계획 및 총무계획 수립</li> <li>○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인력 물자 시설 동원</li> <li>○ 비상대비 통계자료 수집 보완</li> <li>○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li> <li>○ 주민 신고망 관리</li> <li>○ 민방공 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li> <li>○ 민방위 장비 유지관리</li> <li>○ 민방위 대원 및 주민의 교육 훈련</li> <li>○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li> <li>○ 사회복지요원 복무부서 지정 및 복무관리</li> <li>○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각급기관 협조</li> <li>○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li> <li>○ 군부대 업무협의 관련</li> <li>○ 국가비상대비 각종 교육·훈련</li> <li>○ 본청 직장민방위대 운영</li> <li>○ 인력동원 및 중점자원관리 운영</li> <li>○ 총무훈련, 을지연습, 화랑훈련 추진</li> </ul>
	사회재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판단회의 등)</li> <li>○ 사회재난 현장지휘소 운영</li> <li>○ 안전한국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li> <li>○ 재난메뉴얼 통합관리</li> <li>○ 발주공사·수행사업 안전관리</li> <li>○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및 관리 총괄</li> <li>○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자문단관리)</li> <li>○ 사회재난 관련 관계기관·부서 협업체계 구축 운영</li> <li>○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소유 시설 위기사항 매뉴얼관리 등 안전관리</li> <li>○ 생활안전 취약시설개선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위험수목 정비 사업추진</li> <li>○ 사회재난 대비 민간기관단체, 개인이 보유한 장비인력 조사 및 관리</li> <li>○ 특수재난 협업지원·관리 종합계획 및 시스템 수립·운영</li> <li>○ 특수재난 재난역량 분석·진단 및 교육·훈련 지원</li> <li>○ 사회재난 총괄 및 종합대책 수립 운영</li> <li>○ 사회재난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li> <li>○ 사회 재난 대비·대응 대책의 수립 및 운영</li> <li>○ 사회 재난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전파 등 기록관리</li> <li>○ 사회재난관련 매뉴얼 관리</li> <li>○ 사회재난 상시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 긴급구조훈련</li> <li>○ 국가안전 대 진단 업무 추진</li> <li>○ 의용소방대 관련 업무 전반</li> </ul>
	<p>자연재난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난종합대책 수립(여름, 겨울)</li> <li>○ 자연재난실태평가 총괄관리(여름, 겨울 실태점검)</li> <li>○ 해빙기 안전진단 업무 추진</li> <li>○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관리</li> <li>○ 군산시 자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판단회의 등)</li> <li>○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li> <li>○ 시군구 긴급지원체계 구축 관리</li> <li>○ 풍수해 보험관리</li> <li>○ 지진(해일)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li> <li>○ 자연재난피해복구대책 수립 및 복구사업 총괄관리</li> <li>○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및 관리</li> <li>○ 자연재해사전대비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li> <li>○ 자연재난예방사업 추진(배수펌프장 등)</li> <li>○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li> <li>○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관리</li> <li>○ 자연재난상황관리 및 피해조사 총괄</li> <li>○ 기상특보 상황관리</li> <li>○ 수방자재 관리</li> <li>○ 자연재난 피해복구 유관, 민간, 협업체계 구축(복구장비 등)</li> <li>○ 자연재난대응 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li> <li>○ 자연재난종합대책 수립(여름, 겨울)</li> <li>○ 자연재난실태평가 총괄관리(여름, 겨울 실태점검)</li> <li>○ 해빙기 안전진단 업무 추진</li> <li>○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관리</li> <li>○ 군산시 자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판단회의 등)</li> <li>○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긴급지원체계 구축 관리</li> <li>○ 풍수해 보험관리</li> <li>○ 지진(해일)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li> <li>○ 자연재난피해복구대책 수립 및 복구사업 총괄관리</li> <li>○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및 관리</li> <li>○ 자연재해사전대비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li> <li>○ 자연재난예방사업 추진(배수펌프장 등)</li> <li>○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li> <li>○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관리</li> <li>○ 자연재난상황관리 및 피해조사 총괄</li> <li>○ 기상특보 상황관리</li> <li>○ 수방자재 관리</li> <li>○ 자연재난 피해복구 유관, 민간, 협업체계 구축(복구장비 등)</li> <li>○ 자연재난대응 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li> </ul>
	하 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재채취업 허가, 등록 및 관리</li> <li>○ 골재채취업 예정지 지정</li> <li>○ 하천(국가, 지방, 소하천) 점사용 허가</li> <li>○ 하천(국가, 지방, 소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li> <li>○ 지방하천공사 시공 및 감독</li> <li>○ 소하천 지정, 정비 및 유지관리</li> <li>○ 소하천 예정지 고시</li> <li>○ 국가하천 유지관리</li> <li>○ 지방하천, 소하천 폐천부지 관련업무</li> <li>○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및 정비시행계획 수립</li> <li>○ 하천 기성제 정비 및 평가관련 업무</li> <li>○ 하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li> <li>○ 4대강 친수공간 유지관리</li> </ul>
	방재시설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재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전기, 소방)</li> <li>○ 방재시설물 운영 기준 수립</li> <li>○ 재난종합상황실 전산장비 등 관리</li> <li>○ 경포천 배수펌프장·배수갑문 운영 관리</li> <li>○ 경포천 제수문 기계설비 유지관리</li> <li>○ 중동2·구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li> <li>○ 나운1·2, 월명 우수저류조 유지관리</li> <li>○ 기상관측장비(강우량기) 및 수위관측소 시설 유지관리</li> <li>○ 예·경보시스템 구축 종합 계획 수립</li> <li>○ 예·경보 시설관리</li> <li>○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li> <li>○ 하천 CCTV 유지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포천 홍수 감시 체계 구축</li> <li>○ 도심지 침수 감시 체계 구축</li> <li>○ 재난 관측 정보 유관기관 연계</li> <li>○ 시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li> </ul>
	중대재해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li> <li>○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li> <li>○ 지하안전법, 지하안전지침 시행</li> <li>○ 지하안전영향평가</li> <li>○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사항</li> <li>○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li> <li>○ 1종, 2종, 3종 시설물 안전관리</li> <li>○ 중대산업·시민 재해관리</li> </ul>
도시계획 과 장	도시행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li> <li>○ 도시행정의 종합계획 수립</li> <li>○ 일반사업 예산편성 및 정산</li> <li>○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li> <li>○ 전문건설업체 행정 처분</li> <li>○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징수</li> <li>○ 전문건설업 실태조사</li> <li>○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처리</li> <li>○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처리</li> <li>○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운영</li> <li>○ 환지청산금 관리</li> <li>○ 체비지 관리</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도시계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기본계획 수립·운영</li> <li>○ 도시관리계획 수립·운영</li> <li>○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li> <li>○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li> <li>○ 도시계획위원회 운영</li> <li>○ 도시관리계획 협의</li> <li>○ 국가사업 관리</li> <li>○ 폐철도 활용 용역 및 방안 마련</li> <li>○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 운영</li> </ul>
	도시정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 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li> <li>○ 도시 재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li> <li>○ 소도읍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li> <li>○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용지매입, 교환, 수용 및 이전등기</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도시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매수청구 관리</li> <li>○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li> <li>○ 용도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건축 협의</li> <li>○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li> </ul>
	도시개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li> <li>○ 용지분양 및 매입 재산관리</li> <li>○ 개발사업 보상업무</li> <li>○ 특별회계 세입·세출관리</li> <li>○ 토지, 건물, 기타 수용 재결조치 및 행정대집행</li> <li>○ 도시개발 기본계획 수립</li> <li>○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li> <li>○ 사업지구내 이주대책 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지장물 철거</li> <li>○ 환지 확정 처분 업무</li> <li>○ 기타 경영수익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li> <li>○ 기타 도시 개발사업</li> </ul>
건설과장	도로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도로정비 및 보수 유지관리</li> <li>○ 건설교통부 소관 국·공유재산(도로구거) 관리처분 및 등기</li> <li>○ 건설교통부 소관 국·공유재산(도로구거) 사용료 및 대부료 과징</li> <li>○ 도로·구거부지 허가 및 점용료 과징</li> <li>○ 도로·구거부지 용도 폐지 승인</li> <li>○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li> <li>○ 도로 무단점용 단속 업무</li> <li>○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 조정</li> <li>○ 도로정비 보수원 관리</li> <li>○ 도로무단적치물 지도단속 및 관리</li> <li>○ 가로 환경정비</li> <li>○ 과적차량 단속업무</li> <li>○ 접도구역 관리</li> <li>○ 철도건널목관리</li> <li>○ 공공 도로변 절개지 위험해소를 위한 총괄계획 수립</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도로계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지구의 도로개설 및 확장</li> <li>○ 도시계획외의 도로개설 확장 공사의 계획수립 및 시행</li> <li>○ 생활환경 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li> <li>○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li> <li>○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교통사고 낮은곳 개선사업</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부 혼잡지역 개선사업</li> <li>○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li> <li>○ 시의 군도개설 및 확·포장공사 시행 감독</li> <li>○ 기타 도로에 관련한 사항</li> </ul>
	도로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도로의 개설 및 포장 보수</li> <li>○ 도로 및 교량 공사의 시행 및 감독</li> <li>○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시행 및 감독</li> <li>○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li> <li>○ 자전거도로 계획 및 추진</li> <li>○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추진</li> <li>○ 자전거주차장 관리 및 사업추진</li> <li>○ 자전거이용활성화 방안추진</li> <li>○ 자전거관련조례·위원회 운영</li> </ul>
	농촌기반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용수 개발</li> <li>○ 경지정리 사업</li> <li>○ 관개시설 설치 및 개·보수</li> <li>○ 건설사업용 용지매수 및 토지수용</li> <li>○ 농지개량 사업의 조사 측량</li> <li>○ 개간 허가 및 지도</li> <li>○ 각종 농지개량 사업의 조사, 집행, 감독</li> <li>○ 농업기반조성사업 용지보상 관련 사항</li> <li>○ 국유재산(농림부 소관) 관리처분 및 등기</li> <li>○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과징</li> <li>○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li> <li>○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li> <li>○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및 유지관리</li> <li>○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방조제, 양수장등)등록 및 유지관리</li> <li>○ 양수기 유지관리</li> <li>○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li> </ul>
	도시조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조명 주요업무 계획 수립</li> <li>○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계획 수립</li> <li>○ 보안등 시설관리 및 개량업무</li> <li>○ 각종 도로 전기시설(터널, 육교등)관리</li> <li>○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li> <li>○ 보안등시설 현장조사</li> <li>○ 가로등 및 보안등 순찰 점검</li> <li>○ 각종 기자재 수불 관리</li> </ul>
주택행정	주택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내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주택종합계획수립</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과 장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 특별회계 운영</li> <li>○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개정운영</li> <li>○ 국민주택 관리 및 상환금 징수 총괄</li> <li>○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li> <li>○ 예산회계 편성 및 관리</li> <li>○ 해망동 희망루 아파트 유지관리</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공동주택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li> <li>○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li> <li>○ 주택건설사업 입주자 모집승인</li> <li>○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구성 및 조합설립인가</li> <li>○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li> <li>○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및 사업시행결정</li> <li>○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li> <li>○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설립인가</li> <li>○ 조합원 모집 신고</li> <li>○ 주택법 대상 건축물 건축심의 사전검토</li> <li>○ 주택건설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li> <li>○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li> <li>○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li> <li>○ 주택건설관련 각종 통계 작성 관리</li> <li>○ 고령자 복지주택건설 추진</li> </ul>
	공동주택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및 관리</li> <li>○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관련 업무</li> <li>○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업무</li> <li>○ 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 및 민원처리</li> <li>○ 공동주택 관리 감사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li> <li>○ 공동주택 관계자 관리교육 추진</li> <li>○ 공동주택 성범죄자 점검 추진</li> <li>○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및 감독</li> <li>○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이행관리</li> <li>○ 공동주택 관리소장 배치신고 및 관리</li> <li>○ 주택관리업자 관리 및 지도</li> <li>○ 공동주택 임대관리 관련업무</li> <li>○ 부도 임대주택 관리</li> <li>○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li> <li>○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 및 신고</li> <li>○ 공동주택 관련 정보공개 업무추진</li> <li>○ 주택관리업자 등록 및 관리지도</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업무</li> <li>○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li> <li>○ 공동주택 모범관리 우수단지 선정 추진</li> </ul>
	공동주택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사무소 설치·운영</li> <li>○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li> <li>○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li> <li>○ 전라북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추진</li> <li>○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li> <li>○ 공동주택 관련 법령 제·개정 업무 추진</li> <li>○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업무 추진</li> <li>○ 소규모 공동주택 위험시설 정비사업 추진</li> <li>○ 해빙기·우기·동절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li> <li>○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및 관리</li> <li>○ 주택 관련 재난 및 재해 업무 추진</li> <li>○ 시특별대상 공동주택 관리</li> <li>○ 특정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li> <li>○ 제3종 시설물 지정·해제·관리업무</li> <li>○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의</li> </ul>
	공공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행정국 소관 공사관련 업무지원 (회계과 청사관리계 제외)</li> <li>○ 보건소 소관 공사관련 업무지원</li> <li>○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사관련 업무지원</li> <li>○ 수도사업소 소관 공사관련 업무지원</li> <li>○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사관련 업무지원</li> <li>○ 기타 각종 시설(기술)업무 관련 지원</li> </ul>
	시설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공사관련 업무지원</li> <li>○ 문화관광국 소관 공사관련 업무지원 (관광진흥과 제외, 문화예술과 제외, 체육진흥과 제외)</li> <li>○ 복지환경국 소관 공사관련 업무지원(경로장애인과 제외)</li> <li>○ 안전건설국 소관 공사관련 업무지원 (안전총괄과 제외, 건축경관과 제외, 교통행정과 제외)</li> <li>○ 기타 각종 시설(기술)업무 관련 지원</li> </ul>
	주거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급여 신청에 대한 보장 결정 및 통지</li> <li>○ 주거급여 기준 초과자 급여중지 및 결정</li> <li>○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지급</li> <li>○ 주거급여감소에 따른 이행기보전액 지급</li> <li>○ 주거급여 이의신청 등 사후관리</li> <li>○ 주거급여 차액 추가지급 및 환수 업무</li> <li>○ 수선유지급여(집수리사업)계획 수립</li> <li>○ 집수리사업을 위한 보장기관 위탁계약 체결</li> <li>○ 수선유지급여 지급 및 사후 정산</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업무</li> <li>○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 업무(LH)</li> <li>○ 소년. 소녀가장 전세자금 지원 업무(LH)</li> <li>○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li> <li>○ 도시빈집정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도시빈집실태조사 및 자료관리</li> <li>○ 농어촌빈집정비 사업 추진</li> <li>○ 농어촌빈집실태조사·관리 및 빈집정보센타운영</li> <li>○ 농어촌 주택개량사업</li> <li>○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li> <li>○ 취약계층 주거복지 상담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추진</li> </ul>
<p>건축경관 과 장</p>	<p>도시경관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내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예산회계 편성 및 관리</li> <li>○ 도시경관관련 기본 계획수립 및 추진</li> <li>○ 도시경관표준 모델 개발</li> <li>○ 도시경관조례 제.개정 운영</li> <li>○ 도시경관 관련 부서별 업무 협의 및 심의</li> <li>○ 도시경관 관련 공모전, 포럼, 세미나 등</li> <li>○ 기타 도시경관 및 디자인 관련 사항</li> <li>○ 도시경관관련 사업추진</li> <li>○ 야간경관조명업무 총괄</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p>건축허가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행정건실화 추진</li> <li>○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심의</li> <li>○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업무</li> <li>○ 건축협의(공공기관)관련 업무</li> <li>○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관련 업무</li> <li>○ 건축조례 제.개정 운영</li> <li>○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도</li> <li>○ 건축사 지도점검(설계,감리,안전관리 등)</li> <li>○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 점검 추진</li> <li>○ 건축 관련 각종 통계관리</li> <li>○ 미착공·미준공 건축물관리</li> <li>○ 타부서 건축 관련 복합민원 협의</li> <li>○ 건축허가 관련 하자보증금 관리</li> <li>○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관리 및 추진</li> <li>○ 건축문화상 운영</li> </ul>
	<p>건축신고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신고(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관련 업무</li> <li>○ 대수선신고 관련 업무</li> <li>○ 용도변경 신고 관련 업무</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사용승인(신고) 관련 업무</li> <li>○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관련업무</li> <li>○ 공작물축조신고 신고 관련 업무</li> <li>○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관련 업무</li> <li>○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용도변경 관련 업무</li> <li>○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업무</li> <li>○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정정) 관련 업무</li> </ul>
	건축물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유지관리계획 수립</li> <li>○ 건축물 유지관리(건축법 적용 일반건축물)</li> <li>○ 건축물 재해, 재난안전 관리</li> <li>○ 시특법 대상 건축물 관리</li> <li>○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일반건축물) 점검 및 관리</li> <li>○ 냉난방 및 환기구배기시설 정비추진</li> <li>○ 건축물대장 기재신청등 관련 업무</li> <li>○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정정) 관련 업무</li> <li>○ 건축물대장 전환·합병 관련 업무</li> <li>○ 건축물대장 말소 관련 업무</li> <li>○ 건축물 부존재 관련 업무</li> <li>○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 관련 업무</li> <li>○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추진</li> <li>○ 건축물대장 민원발급</li> <li>○ 건축물 철거·멸실 관련 업무</li> </ul>
	광 고 물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물 종합정비계획 수립</li> <li>○ 광고물관리 조례 제.개정운영</li> <li>○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li> <li>○ 옥외광고물 전수조사</li> <li>○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li> <li>○ 옥외광고물 연장 허가</li> <li>○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li> <li>○ 옥외광고업 허가</li> <li>○ 광고물 일반 서무</li> <li>○ 불법현수막 벽보 제거</li> <li>○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재교부</li> <li>○ 유동광고물 신고수리</li> <li>○ 불법광고물 지도 및 단속</li> <li>○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li> <li>○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li> </ul>
교통행정 과 장	교통기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도시교통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li> <li>○ 수송동원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리</li> <li>○ 교통안전대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li> <li>○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li> <li>○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중장기계획 수립</li> <li>○ 신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li> <li>○ 교통관련 인·허가 협의</li> <li>○ 여객 자동차 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관한 업무</li> <li>○ 교통영향평가 협의 및 시행</li> <li>○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li>○ 유료 공영주차장 계획수립 및 운영 (시설업무 제외)</li> <li>○ 항공, 철도에 관한 업무</li> <li>○ 교통문화지수 향상 및 교통 자생단체 지도 육성</li> </ul>
	대중교통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운송사업의 인·허가 면허 및 등록(시내버스, 전세, 특수)</li> <li>○ 자동차 운송사업 계획 변경인가 신고 및 등록(시내버스, 전세, 특수)</li> <li>○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li> <li>○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관리</li> <li>○ 시내버스 벽지노선 개설 명령</li> <li>○ 시내버스 운행 실태조사</li> <li>○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li> <li>○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 특수)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li> <li>○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허가(특수)</li> <li>○ 사업용 자동차 법규 위반단속 및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시내버스, 전세, 특수)</li> <li>○ 도로교통법 및 교통불법 신고센터 운영(시내버스, 전세, 특수)</li> <li>○ 운수종사자 교육 및 위반자 조치(시내버스, 전세 특수)</li> <li>○ 여객자동차 터미널 관리 업무</li> <li>○ 교통약자 대중교통 편의 증진</li> <li>○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업무</li> <li>○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업무</li> <li>○ 지간선제 관련 업무</li> <li>○ 시외·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li> <li>○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li> </ul>
	택시화물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운송사업의 인·허가 면허 및 등록(택시, 화물)</li> <li>○ 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고 및 등록(택시, 화물)</li> <li>○ 택시 운행부제 조정</li> <li>○ 개인택시 대리 운전</li> <li>○ 택시 정류장 설치 관리</li> <li>○ 택시 자격증에 관한 업무</li> <li>○ 택시, 화물 서비스 개선</li> <li>○ 여객자동차(택시)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화물)</li> <li>○ 유가보조금 업무(택시, 화물)</li> <li>○ 사업용 자동차 법규 위반단속 및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택시, 화물)</li> <li>○ 도로교통법 및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택시, 화물)</li> <li>○ 운송종사자 교육 및 위반자 조치(택시, 화물)</li> <li>○ 화물공영차고지 시설계획</li> </ul>
	교통지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li> <li>○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조정</li> <li>○ 불법 주정차 견인 관련 업무</li> <li>○ 견인차량 과태료, 견인료 부과 조정</li> <li>○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업무</li> <li>○ 자동차무단방치 행위자 통고처분 및 범칙금 부과, 징수</li> <li>○ 자동차무단방치 행위자 특별사법경찰 수사 업무</li> </ul>
	교통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li> <li>○ 어린이보호구역정비계획 수립 및 시공</li> <li>○ 노면표지 정비 및 유지관리</li> <li>○ 공영노외·노상주차장 시공 및 시설물 유지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외)</li> <li>○ 화물공영차고지 설계 및 시공</li> <li>○ 공영노외.노상주차장 조성 종합계획 수립</li> <li>○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정비</li> </ul>
	지능형교통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능형교통체계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li> <li>○ 광자가통신망 신설 및 정비 등 통신설비 관리</li> <li>○ 교통신호체계(교통DB) 운영 관리</li> <li>○ ITS 노드/ 링크 표준화 사업 추진</li> <li>○ 교통 신호등 관련 시설물 신설 및 유지관리</li> <li>○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및시설물운영관리</li> <li>○ 센터 청사 관리(건축,전기,기계,통신 등)</li> <li>○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li> <li>○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및 운영관리</li> <li>○ 국가산업단지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li> </ul>
	영상정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CTV관제상황실 운영 및 종합계획 수립</li> <li>○ CCTV관제 민간위탁 용역 사업관리</li> <li>○ 타 부서 유관기관 등 CCTV 통합관제 연계</li> <li>○ CCTV 열람 제공 보호조치 등 영상정보관리</li> <li>○ 방범용 CCTV 신설 및 유지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범용(마을,공원,주거환경) CCTV 설치 및 운영 지원</li> <li>○ CCTV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li> <li>○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관리</li> </ul>
토지정보 과 장	부동산지가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과분야 예산 총괄, 계획 수립</li> <li>○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및 해제운영</li> <li>○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li> <li>○ 토지거래허가 토지이용 사후관리</li> <li>○ 토지이용의무 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li> <li>○ 부동산 중개업 개설, 이전, 폐업신고</li> <li>○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및 분기보고</li> <li>○ 중개업위반자 행정처분</li> <li>○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li> <li>○ 부동산실거래 신고</li> <li>○ 부동산실거래 신고 해태과태료 부과징수</li> <li>○ 실명법위반 및 등기태만 등 체납관리</li> <li>○ 부동산등기 태만 과태료 부과 및 징수</li> <li>○ 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li> <li>○ 외국인토지 실거래 취득신고 허가</li> <li>○ 외국인토지 계속보유 신고</li> <li>○ 외국인토지 보유현황 분기보고</li> <li>○ 외국인 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li> <li>○ 부동산실거래 적정성조사 및 정밀조사</li> <li>○ 표준지공시지가 협의 운영</li> <li>○ 공시지가 조사 계획 수립 및 운영</li> <li>○ 개별 필지의 토지 특성조사</li> <li>○ 개별 토지의 지가 산정</li> <li>○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li> <li>○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li> <li>○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li> <li>○ 인접지역 지가 균형 협의와 지가도면 정리</li> <li>○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li> <li>○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li> <li>○ 지가정보 관련 기관 제공</li> <li>○ 지목변경 취득세 지가 신청</li> <li>○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안내</li> <li>○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 제출 안내</li> <li>○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li> <li>○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 청구</li> <li>○ 주택임대차신고제 업무 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지적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li> <li>○ 개발행위(분할) 허가</li> <li>○ 지적측량성과 검사(동지역)</li> <li>○ 지적측량성과 검사(읍·면지역)</li> <li>○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 관리</li> <li>○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li> <li>○ 지적도 오류사항 정비</li> <li>○ 지목변경 접수 처리</li> <li>○ 합명 접수 처리</li> <li>○ 지적측량기준점 및 지적측량 장비관리</li> <li>○ 연속지적도 정비 및 자료 제공</li> <li>○ 토지표지변경 등기축단</li> <li>○ 토지이동정리 집계</li> <li>○ 지적측량 준비파일 제공</li> <li>○ 지적역점시책 및 특수업무 추진</li> <li>○ 경지정리 등 도시개발사업 신고처리</li> <li>○ 지적민원 종합창구 운영</li> <li>○ 국토이용 전산자료 관리 및 정비</li> <li>○ 비법인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li> <li>○ 지적전산자료 논리오류 정비</li> <li>○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li> <li>○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li> <li>○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li> <li>○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li> <li>○ 지적통계 및 목록관리</li> <li>○ 소유권에 관한 국가소송 수행</li> <li>○ 지적서고 관리</li> <li>○ 행정정보공개</li> <li>○ 지적민원관련 전산자료 제공</li> <li>○ 등기필통지에 따른 소유권 전산화일 정리</li> </ul>
	도로명주소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명주소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li> <li>○ 도로명주소 관리</li> <li>○ 도로명주소 변동자료 정리</li> <li>○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관리</li> <li>○ 주소정보위원회 및 지명위원회 운영</li> <li>○ 국가주소정보시스템 DB갱신 및 운영</li> <li>○ 국가기초구역 관리 및 운영</li> <li>○ 국가지점번호 관리 및 운영</li> <li>○ 상세주소 부여 및 관리</li> <li>○ 도로명주소 민원접수 및 처리</li> <li>○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홍보</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정보 일반 업무</li> <li>○ 지리정보 관련 조례 관리</li> <li>○ 지리정보 보안 업무</li> <li>○ 지리정보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 GIS 서버, 인트라넷시스템, 한눈시스템</li> <li>○ GIS DB구축 성과품 검사(동지역)</li> <li>○ GIS DB구축 성과품 검사(읍·면지역)</li> <li>○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구성 및 운영</li> <li>○ 지리정보교육 관리</li> <li>○ 지리정보 DB갱신 및 자료 정비</li> <li>○ 국가지형지물 변동자료 관리</li> <li>○ 수치지형도 제작 관리</li> <li>○ 공간정보 자료 제공</li> <li>○ GPS 측량 장비 관리</li> </ul>
	지적재조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관리</li> <li>○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li> <li>○ 세계측지계 변환 실시계획 수립</li> <li>○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li> <li>○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li> <li>○ 지적재조사 관련 소송 수행</li> <li>○ 지적재조사 일필지조사 및 측량</li> <li>○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li> <li>○ 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조서 작성</li> <li>○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및 부과 징수</li> <li>○ 확정조서 의견제출 처리</li> <li>○ 경계결정 이의신청 처리</li> <li>○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업무</li> </ul>

[보건소 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보건행정 과 장	보건행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과 및 보건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li> <li>○ 문서 및 공인 관리</li> <li>○ 보건소 예산운영 및 제경비 집행 관리</li> <li>○ 직원 당직근무 명령 및 보건소 내외 복무 단속</li> <li>○ 보건지소 관리</li> <li>○ 공중 보건 의사 복무지도·감독에 관한 사항</li> <li>○ 비품 및 소모품 관리</li> <li>○ 보건소 차량 관리</li> <li>○ 의료장비(기자재 포함) 구입과 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품 구입과 배정에 관한 사항</li> <li>○ 보건소 및 지소·진료소 시설물 관리(신축 개·보수)</li> <li>○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li> <li>○ 보건진료소 관리</li> <li>○ 보건소 전산 운영·관리</li> <li>○ 기타 보건소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의 약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에 의한 허가·등록·신고등 관리</li> <li>○ 약사법에 의한 허가·등록·신고등 관리</li> <l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li> <li>○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의한 허가·등록·신고등 관리</li> <li>○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li> <li>○ 의무관련 지도에 관한 업무</li> <li>○ 약무관련 지도에 관한 업무</li> <li>○ 유사의약업소 지도에 관한 사항</li> <li>○ 응급의료법률에의한 허가·등록·신고등 관리</li> <li>○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항</li> <li>○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사항</li> <li>○ 의료사업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li> <li>○ 의료기기법에 의한 신고 및 지도관리</li> <li>○ 헌혈 권장사업</li> <li>○ 건강검진 등 신고처리</li> <li>○ 장기기증 관련 업무 전반</li> <li>○ 사전연명의료 관련 업무 전반</li> </ul>
	진 료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 진료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건강진단결과서, 진단서등 제증명 발급 및 수수료 징수</li> <li>○ 진료비 징수</li> <li>○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등 청구</li> <li>○ 의료지원 업무</li> <li>○ 임상병리 검사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방사선 검사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물리치료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법정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li> <li>○ 한방진료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저소득층실명예방 관련사항</li> <li>○ 취약계층 아동 아토피 예방관리</li> <li>○ 경로당 및 무의도서 순회진료</li> </ul>
서부건강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전반</li> <li>○ 건강증진실 운영·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질환관리사업</li> <li>○ 건강행태개선사업(금연, 운동, 영양)</li> <li>○ 방문보건관리사업</li> <li>○ 치매예방 및 인지증진 프로그램 운영</li> <li>○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li> <li>○ 지역특화사업</li> <li>○ 공무원근로자 관리</li> <li>○ 꿈나무 건강증진사업 운영</li> </ul>
감염병관리 과 장	감염병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관리 종합 대책 및 소관업무 운영계획</li> <li>○ 3~4급 법정감염병 예방관리</li> <li>○ 질병정보 모니터망 지정 및 관리</li> <li>○ 온열·한랭질환자 감시체계 운영</li> <li>○ 진드기매개감염병관리 및 예방홍보</li> <li>○ 표본감시 감염병 예방관리</li> <li>○ 방역소독 및 방역장비·약품 관리</li> <li>○ 소독업 신고 및 소독의무시설 관리</li> <li>○ 국가 결핵관리사업</li> <li>○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관리</li> <li>○ 한센병관리</li> <li>○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li> </ul>
	감염병대응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성감염병 관리대책 및 소관업무 운영 계획</li> <li>○ 1~2급 법정감염병 예방관리</li> <li>○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li> <li>○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li> <li>○ 감염병 재난위기관리대책 수립</li> <li>○ 신종감염병 및 재출현 감염병 예방관리</li> <li>○ 해외입국자 감염병발생 추적관리</li> <li>○ 감염병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업무</li> <li>○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관리</li> <li>○ 생물테러 감염병 대비·대응업무</li> </ul>
	감염병예방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li> <li>○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li> <li>○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li> <li>○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li> <li>○ 계절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li> <li>○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 예방접종 사업</li> <li>○ 선택(A형·B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사업</li> <li>○ A형간염 접촉자 예방접종 지원사업</li> <li>○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li> <li>○ 예방접종 약품 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 보관 점검 및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위탁의료기관 계약 및 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예방접종 이상반응 상담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li> <li>○ 취약계층 등 예방접종 지원사업</li> </ul>
건강관리 과 장	시민건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 총괄</li> <li>○ 건강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등 건강도시업무 전반</li> <li>○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통합평가 전반</li> <li>○ 국민영양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보건소 홍보자료 개발 및 홍보관련 사항</li> <li>○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li> <li>○ 모바일헬스케어사업</li> <li>○ 구강보건센터 운영</li> <li>○ 학교구강보건실, 경로당 구강보건사업</li> <li>○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및 노인의치보철사업</li> <li>○ 과 서무 및 기타 현안업무 등</li> <li>○ 과내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총괄</li> <li>○ 비만관리사업</li> <li>○ 신체활동사업 전반</li> <li>○ 신체활동사업 교육·홍보</li> <li>○ 금연클리닉 운영</li> <li>○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환경조성</li> <li>○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사업</li> <li>○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li> <li>○ 건강증진실 운영·관리</li> <li>○ 보건소 임상실습학생 관리</li> <li>○ 보건소 홍보 및 교육자료 개발</li> </ul>
	방문건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li> <li>○ 방문건강관리사업</li> <li>○ 지역사회중심 맞춤형 재활사업</li> <li>○ 중증장애인 및 취약계층 방문재활사업</li> <li>○ 장애발생예방교육 사업</li> <li>○ 지역사회중심 재활운동실 운영</li> <li>○ 저소득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li> <li>○ 집단시설 보건교육</li> <li>○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 사업</li> <li>○ 재가암환자관리 사업</li> <li>○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li> </ul>
	가족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li> <li>○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li> <li>○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li> <li>○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지원</li> <li>○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li> <li>○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li> <li>○ 산후건강관리지원 사업</li> <li>○ 산후조리비용 지원</li> <li>○ 미숙아·선천성대사 이상아 등록 관리 및 의료비 지원</li> <li>○ 산후조리원 관리</li> <li>○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li> <li>○ 암 환자 의료비 지원</li> <li>○ 국가암 검진사업</li> <li>○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li> <li>○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li> <li>○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li> <li>○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사업관리</li> </ul>
	정신건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정신질환자 위기개입 및 의료비 지원</li> <li>○ 중증정신질환자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li> <li>○ 초발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li> <li>○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li> <li>○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지 지원</li> <li>○ 정신건강지킴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li> <li>○ 정신의료기관 관리</li> <li>○ 정신건강 심의·심사위원회 운영</li> <li>○ 중년여성 힐링서비스 사업</li> <li>○ 코로나 등 재난 대응 심리치유 사업</li> <li>○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및 사례관리</li> <li>○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및 예방교육</li> <li>○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사업</li> <li>○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관리 사업</li> <li>○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li> <li>○ 자살위험환경 개선 사업</li> <li>○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지원 사업</li> <li>○ 정신건강 심리치유 의료비 지원 사업</li> <li>○ 생애주기별 생명지킴이 사업</li> <li>○ 절주 및 중독 서포터즈 사업</li> <li>○ 중독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li> <li>○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li> <li>○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li> <li>○ 정신재활시설 운영</li> </ul>
	치매안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안심센터운영 전반</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관리사업 종합계획 수립</li> <li>○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li> <li>○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li> <li>○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li> <li>○ 치매환자쉼터 운영 사업</li> <li>○ 조호물품 지원 및 가족 지원 사업</li> <li>○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사업</li> <li>○ 상담·등록 관리 및 치매조기검진 사업</li> <li>○ 치매예방 및 인지증진 프로그램 운영</li> <li>○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사업</li> <li>○ 치매안심마을 운영 및 치매파트너 양성 사업</li> </ul>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농정과장	농정기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li> <li>○ 농업기술센터 소관 인사 종합 관리</li> <li>○ 농업기술센터 재산관리(시설, 토지, 물품 등)</li> <li>○ 국비 예산 총괄 취합 예산 신청</li> <li>○ 농림사업 통합 추진</li> <li>○ 농림사업 평가</li> <li>○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운영</li> <li>○ 영농도우미 지원</li> <li>○ 농정시책홍보</li> <li>○ 농업관련 단체 지원 및 관리</li> <li>○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관리</li> <li>○ 여성 후계농업인 육성</li> <li>○ 청년창업농 관련업무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및 기반조성 사업</li> <li>- 청년창업농 진단분석 컨설팅 사업</li> <li>-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li> </ul> </li> <li>○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복무관리 지도</li> <li>○ 농식품인력개발원 교육지원</li> <li>○ 농업법인관리</li> <li>○ 농어촌소득금고특별지원사업 지원 및 관리</li> <li>○ 농어민 신문보급 사업</li> <li>○ 비밀문서 생산관리 및 보안업무</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락농정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농업분야 산학협력방안 마련 및 추진</li> <li>○ 농업기술센터 예산 및 회계, 관인관리</li> <li>○ 타 실과소 업무 협조</li> <li>○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업무 전반</li> <li>○ 농업인회관 운영 및 관리</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농촌활력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협약 업무 추진</li> <li>- 농촌협약 체결 및 농촌협약 조건사항 이행</li> <li>- 농촌협약위원회 운영, 농촌생활권추진위원회 운영</li> <li>- 농촌협약지원조직 운영, 농촌협약행정협의회 운영</li> <li>○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li> <li>○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li> <li>○ 농촌공간정비사업</li> <li>○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li> <li>○ 농촌다움복원사업</li> <li>○ 마을만들기사업</li> <li>○ 생생마을만들기사업</li> <li>○ 마을만들기활성화단계 지원사업</li> <li>○ 마을공동체 미디어활성화 지원사업</li> <li>○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동지원사업</li> <li>○ 시군역량강화사업</li> <li>○ 중간지원조직(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li> <li>○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초계획단 운영</li> <li>○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물 관리</li> <li>○ 사업 완료 지구 시설물 활성화</li> <li>○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사업</li> <li>○ 사회적농업 활성화사업</li> <li>○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관리</li> <li>○ 관광농원 지정 및 관리</li> <li>○ 농어촌민박 지정 및 관리</li> <li>○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추진</li> <li>○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li> <li>○ 농촌유휴시설 리노베이션 지원사업</li> <li>○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li> <li>○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종합사업시행계획 수립</li> <li>○ 농촌재생프로젝트 추진</li> <li>○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관리</li> <li>○ 주민협정 체결 및 운영</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운영</li> <li>○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운영</li> </ul>
	농 산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육성 지원사업</li> <li>○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단지화 사업</li> <li>○ 쌀경쟁력제고사업(자본적 보조, 경상적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제드론, 곡물건조기, 공동육묘장 등</li> <li>-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li> <li>- 지력증진 벗짚환원사업</li> </ul> </li> <li>○ 벗짚/콩대 환원사업 (시자체사업)</li> <li>○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li> <li>○ 보릿대 불법소각 계도</li> <li>○ 식량분야 농업재해 조사 및 복구계획 지원</li> <li>○ 수도작/동계작물 생산계획 및 사업추진</li> <li>○ 벼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시자체사업)</li> <li>○ 동계작물 미세먼지저감 사업(시자체사업)</li> <li>○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li> <li>○ FTA피해보전 직불금 및 행정비</li> <li>○ 쌀 전업농 농업인단체 업무전반</li> <li>○ 비료지원(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li> <li>○ 농업재해총괄</li> <li>○ 비료생산업 등록 및 관리</li> <li>○ 농약판매업 등록 및 관리</li> <li>○ 직불제 업무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형 공익직불제</li> <li>- 선택형 공익직불제(논이모작, 조건, 경관)</li> </ul> </li> <li>○ 농민공익수당지원</li> <li>○ 시 직불금지원(맞춤형비료, 상토)</li> </ul>
	농생명농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 농생명용지 관련 업무 총괄</li> <li>○ 농생명 산업지구 관련 업무(전북특별자치도 관련)</li> <li>○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추진(공모 등)</li> <li>○ 농지이용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새만금 기본계획(MP) 여건변화 대응</li> <li>○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 활용방안 수립</li> <li>○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개발계획 및 사업성 검토</li> <li>○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부개발 사업 추진 총괄 관리</li> <li>○ 새만금 농생명용지 관련 관계부처 협의</li> <li>○ 새만금 농생명용지 관련 단체 관리</li> <li>○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및 관리</li> <li>○ 농지의 전용 허가·협의</li> <li>○ 타용도일시사용 허가·협의</li> <li>○ 농지취득자격증명 총괄 관리</li> <li>○ 농지이용실태 및 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정 및 관리</li> <li>○ 농지전용사후관리(불법 용도변경 등)</li> <li>○ 농지이용시설 사후관리</li> <li>○ 영농형 태양광(농지이용) 등 관리</li> <li>○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관리</li> <li>○ 농지불법전용 단속 및 원상복구</li> <li>○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운영</li> <li>○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총괄</li> </ul>
<p>먹거리정책 과 장</p>	<p>먹거리정책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거리 정책업무 총괄</li> <li>○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업무 추진 (계획수립, 시책발굴, 워크숍, 포럼 등)</li> <li>○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업무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공모사업 추진 및 푸드플랜 FD제도 운영</li> </ul> </li> <li>○ 지역 먹거리 관련 조례 제정 및 정비</li> <li>○ 푸드플랜 민관 거버넌스 체계구축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거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li> </ul> </li> <li>○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총괄 (예산, 회계, 재무, 인사, 재산·재고관리, 홍보 등)</li> <li>○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주변 시설 구축</li> <li>○ 농산물 원산지 단속</li> <li>○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li> <li>○ 우수농특산물 광고매체 홍보 등</li> <li>○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농가레스토랑 등 단계별 농가관리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LS-GAP-군산로컬푸드인증-친환경(무농약·유기농)</li> </ul> </li> <li>○ 과 서무(업무보고 등) 및 예산회계업무</li> <li>○ 타부서(복지, 환경부서 등) 협력사업</li> <li>○ 소비자 조직화를 통한 생산-소비 신뢰증진 사업 발굴</li> <li>○ 지역먹거리 통계 조사 및 분석</li> <li>○ 농산물유통시설(공판장 등) 관련 업무</li> <li>○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운용</li> <li>○ 홍보용 쌀·보리 소포장 지원</li> <li>○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p>공공급식지원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급식 및 도농상생 급식 종합계획 수립 및 발굴</li> <li>○ 공공급식 분야 시장 발굴 및 개척</li> <li>○ 군산시 먹거리 생태지도 작성 및 관리</li> <li>○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결정 사전 협의회 운영</li> <li>-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운영위원회 운영</li> </ul> </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li> <li>o 친환경농산물·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전산업무 (eaT 수발주 프로그램) 등</li> <li>o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li> <li>o 학교무상급식비 지원</li> <li>o 학교급식관리(지도, 위생 등)업무 등</li> <li>o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지원</li> <li>o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사업</li> <li>o 공공급식(학교급식 포함) 식생활 교육 및 농촌체험지원</li> <li>o 공공급식관리(지도, 위생 등) 업무 등</li> <li>- 농·축·수산 생산자, 유통업체, 가공업체 등 관리</li> <li>o 학교급식용 포장재 지원사업</li> <li>o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물류비 지원</li> <li>o 복지, 기업급식 업무 추진</li> <li>o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li> <li>o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비 지원</li> <li>o 우수농산물 수도권 관측유통 물류비 지원</li> <li>o 서울(수도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및 지원</li> <li>o 대도시 친환경쌀 학교급식 공급업무</li> <li>o 관내 기업체 등 지역쌀 이용실태 조사</li> <li>o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마케팅 지원</li> <li>o 기타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li> </ul>
	<p>로컬푸드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운영관리</li> <li>o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추진</li> <li>-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li> <li>- 로컬푸드 잔류농약 검사 지원</li> <li>-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 촉진 및 소비자 관리</li> <li>o 로컬푸드 복합센터 운영관리</li> <li>o 군산 로컬푸드 인증위원회 운영 등</li> <li>o 군산 로컬푸드 통합인증제 운영관리</li> <li>o 로컬푸드 안전품질 관리</li> <li>o 전북 농특산물 인터넷 택배비 지원사업</li> <li>o 농특산물 공동상표(새들군산) 포장재 지원사업</li> <li>o 로컬푸드 복합센터 신축사업</li> <li>o 로컬푸드 생산자 협동조합 설립 총괄</li> <li>- 로컬푸드 생산자 연합회 운영 등</li> <li>o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순회 수집 업무</li> <li>o 농특산물 홍보관 업무 추진</li> <li>o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 추진, 참가업체 지원</li> <li>o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추진(직거래 장터, 박람회 등)</li> <li>o 자매도시 농특산물 교류 추진</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li> <li>○ 농특산물 수출 종합기획 및 수출업체 지원</li> <li>○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바이어관리, 국제관측 행사추진</li> <li>○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li> <li>○ 통합브랜드(새들군산) 선정 관리 및 홍보</li> </ul>
	식품산업육성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가공 사업의 계획 및 평가</li> <li>○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 운영 및 육성 관리</li> <li>○ 농식품가공 제조기술, 품질안전, 마케팅 등 창업보육 지원</li> <li>○ 농산물가공 창업 및 농식품 아카데미 운영</li> <li>○ 소규모 가공창업장 관측 및 마케팅 지원</li> <li>○ 농업인 소규모 농산가공 창업지원</li> <li>○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및 지원</li> <li>○ 농식품기업 육성지원</li> <li>○ 지역농산물 가공 상품화 및 품질향상 지원</li> <li>○ 지역 농산가공품 품목보고, 품질검사, 성분분석 등 품질향상 지원</li> <li>○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제조공정 표준화 연구</li> <li>○ 농식품기업 HACCP 사전·사후관리 컨설팅 지원</li> <li>○ 로컬푸드 소포장 가공식품 사업 발굴</li> <li>○ 장류·소스·식용유 등 지역상품 개발</li> <li>○ 지역푸드플랜 관련 생산·가공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 2 농부의 식품공장 운영</li> <li>- 농산가공식품 개발 로컬 푸드, 공공급식 연계사업 추진</li> </ul> </li> <li>○ 농산물 기반 가공 및 유통업체 지역산 이용률 제고 및 관리</li> <li>○ 군산 수제맥주·청주 산업화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li> <li>○ 군산맥아 및 옛기름 특화사업 추진</li> <li>○ 군산형 식품산업 활성화(지원단 구성 등)</li> <li>○ 기타 농식품 개발 육성에 관한 사항</li> </ul>
	친환경식량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 수립</li> <li>○ 친환경농업인단체 관리 및 신규사업 발굴</li> <li>○ 친환경농업육성(국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지구조성사업</li> <li>- 친환경직불제,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li> </ul> </li> <li>○ 친환경농업육성(도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친환경농산물품목다양화육성, 친환경신선채소안정생산, 친환경희망농부지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친환경쌀생산단지지원, 유기농박람회, 친환경농업인대회</li> </ul> </li> <li>○ 친환경농업육성(자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렁이순환농법, 친환경생산관리, 친환경인증면적확대, 환경친화형공동방제지원</li> </ul> </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P인증확대지원 관련 업무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P안정성분석지원(주산지,인증농가) 사업</li> <li>- GAP포장재 지원사업</li> </ul> </li> <li>○ 정부양곡 매출</li> <li>○ 정부양곡의 보관, 가공, 수송, 재고 조사</li> <li>○ 정부양곡 도정공장 지도 감독</li> <li>○ 정부관리양곡 창고 지도 관리</li> <li>○ 양곡 가공업 신고 관리</li> <li>○ 정부양곡 부산물 관리</li> <li>○ 양곡 유통 지도·단속처리</li> <li>○ 정부양곡포장재 보관 관리</li> <li>○ 양곡관리 특별회계 관리</li> <li>○ 공공비축미곡 매입</li> <li>○ RPC·DSC 시설 관리</li> <li>○ 고품질쌀 유통 지원</li> <li>○ 양곡 GAP 시설 보완사업</li> <li>○ 기타 양정에 관한 업무전반</li> </ul>
동물정책 과 장	동물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동물정책 관련 업무 총괄 계획 수립 조정</li> <li>○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li> <li>○ 반려동물 민원 및 지도 단속</li> <li>○ 동물복지 홍보</li> <li>○ 반려동물 전용 놀이공간 설치</li> <li>○ 저소득층 등 반려견 의료비 지원</li> <li>○ 동물관련 서비스업 인·허가</li> <li>○ 동물관련 민원 및 지도관리</li> <li>○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li> <li>○ 유기견, 길고양이 등 중성화 사업</li> <li>○ 유기동물 보호·관리</li> <li>○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li> <li>○ 유기동물 치료비 지원</li> <li>○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및 지도</li> <li>○ 동물복지관련 지원사업</li> <li>○ 동물보호법 관련 업무 추진</li> <li>○ 반려문화 센터 건립</li> <li>○ 과 서무(업무보고 등) 및 예산회계업무</li> <li>○ 국·도비 예산확보 및 신규 시책 발굴</li> <li>○ 의회 관련 업무 등</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축산환경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가축분뇨 에너지화 대책 총괄</li> <li>○ 축산환경개선계획 수립 총괄</li> <li>○ 중장기 가축분뇨 에너지화 대책 수립</li> <li>○ 가축분뇨 자원화센터 관리 및 사업추진 등</li> <li>○ 악취저감 및 축사환경개선사업</li> <li>○ 환경친화적 가축분뇨 처리사업</li> <li>○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한우, 한돈)</li> <li>○ 축산물 브랜드 거점판매·유통센터 추진</li> <li>○ 축산진흥 계획 수립 조정</li> <li>○ 축산진흥대회 및 축산장려 추진</li> <li>○ 축산·낙농단체 육성 및 지도</li> <li>○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li> <li>○ 축산단지 육성 및 사후관리, 종축 등록</li> <li>○ 축산농가 관리 및 지원</li> <li>○ 축산사료 수급조절 및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li> <li>○ 양봉사업 추진</li> <li>○ 축산 계열화 사업</li> <li>○ 축산발전기금 운용</li> <li>○ 축산업 허가 등록제 사업</li> <li>○ 송아지생산안정사업</li> <li>○ 가축통계조사</li> <li>○ 사료지원사업</li> <li>○ 축산장비 및 기자재사업</li> <li>○ 학교우유급식사업</li> <li>○ 축산재해보험 및 재해복구 지원</li> <li>○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li> <li>○ ICT 스마트 축산사업</li> <li>○ 말산업 육성사업</li> <li>○ FTA 기금사업</li> <li>○ 곤충산업 육성</li> <li>○ 축산분뇨 처리시설 조성 지원</li> <li>○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추진</li> <li>○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시설설치 지원</li> <li>○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사업 추진</li> <li>○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 활용</li> <li>○ 타 축산지도 및 사무에 관한 사항</li> </ul>
	동물방역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수립</li> <li>○ 가축방역상황실 운영 및 관리</li> <li>○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추진</li> <li>○ 구제역 차단방역 추진</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추진</li> <li>○ 렴피스킨병 차단방역 추진</li> <li>○ 해외 악성전염병 차단방역 추진</li> <li>○ 인수공통전염병(브루셀라, 결핵, 광견병 등) 검사</li> <li>○ 공동방제단 일제소독 관리</li> <li>○ 공수의사 지도 감독 관리</li> <li>○ 살처분 명령 관리</li> <li>○ 살처분 가축 보상 업무</li> <li>○ 가축전염병 역학 조사 업무</li> <li>○ 축산농장 소독 관리</li> <li>○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관리</li> <li>○ 축산차량 신고 업무</li> <li>○ 가축방역대응지원사업 추진</li> <li>○ 가축백신 접종 지원 사업 추진</li> <li>○ 축산농장 폐사체 처리 업무</li> <li>○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관리 업무</li> <li>○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영업 신고 업무</li> <li>○ 소규모 가축사육 방역 추진</li> <li>○ 동물병원 및 수의사 업무 종합 대책 수립</li> <li>○ 동물병원 신고 및 관리 추진</li> <li>○ 동물약국 신고 및 관리 추진</li> <li>○ 동물용의약품 등 유통 관리 점검 추진</li> <li>○ 동물용의약품 약사감시</li> <li>○ 축산물위생 대책 수립</li> <li>○ 축산물 위생 감시 추진</li> <li>○ 축산물위생 영업 신고·허가 업무 추진</li> <li>○ 축산물 작업장 지도 감독</li> <li>○ 축산물 판매장 지도 감독</li> <li>○ 축산물위생 보조사업 추진</li> <li>○ 축산물위생교육 추진</li> <li>○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li> <li>○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 및 지도</li> <li>○ 축산물 이력관리 업무 추진</li> </ul>
농촌지원 과 장	지도운영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도행정 총괄 기획, 조정, 평가</li> <li>○ 농촌진흥기관 업무 전반 및 유관기관 협력사업</li> <li>○ 국·도비 예산확보 및 신규 시책 발굴</li> <li>○ 시, 의회 관련 업무보고 및 평가자료 작성</li> <li>○ 농촌지도 예산관리 및 과 회계, 일상경비 출납</li> <li>○ 보안문서·기록물 관리, 공공재산 및 물품 관리</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도직 포상, 인사, 교육 인적 관리</li> <li>○ 농촌지도직 전문화 역량강화 교육 지원</li> <li>○ 농업기술 공보 및 농촌진흥기관 대농민 홍보물 관리</li> <li>○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li> <li>○ 기술보급시범사업 대민 홍보 및 사업자 선정</li> <li>○ 농업인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li> <li>○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li> <li>○ 군산시 4-H 본부·연합회·학생4 - H 조직관리</li> <li>○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li> <li>○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등 청년농 육성지원</li> <li>○ 농업인 학습단체, 농업인 정보·기술지 보급</li> <li>○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li> <li>○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추진</li> <li>○ 농민상담소 인력 및 운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면영농 상황실 운영, 영농기술 상담 및 현장지도</li> <li>- 신제품 지역적응 실증시험 및 지역 특화작물 육성</li> <li>-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관리 및 선도농 육성</li> <li>- 신규농업인(청년 귀농인) 발굴 및 영농정착 현장으로 해결</li> <li>- 우량종자 공급 및 자율교환 알선창구 운영</li> </ul> </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p>귀농활력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활력분야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사업 발굴</li> <li>○ 농업축제 기획, 축제실무, 평가</li> <li>○ 귀농귀촌분야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사업 발굴</li> <li>○ 귀농귀촌협의회 및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지원</li> <li>○ 귀농인 농업창업, 주택구입 용자지원 및 관리</li> <li>○ 귀농인 농지, 주택 임차료 지원</li> <li>○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축설계비 등 지원 관리</li> <li>○ 귀농귀촌인 보금자리 임시거주시설 입주지원</li> <li>○ 도시민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li> <li>○ 귀농귀촌인 농촌정착 실용교육, 기초영농기술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현장실습 과정 신규농업인 및 선도농가 선정 추진</li> <li>- 귀농귀촌 상담실 운영</li> <li>- 수도권 예비 귀농인 과정 교육 및 상담 센터 운영</li> <li>- 수도권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li> <li>- 도시민 초청 귀농 체험학교 운영</li> <li>- 지역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인 동아리 활동 운영</li> <li>- 귀농귀촌인 재능기부활동 운영지원</li> </ul> </li> <li>○ 신규 귀농인 마을환영회 추진</li> <li>○ 신규 귀농인 마을 융화교육 프로그램 운영</li> <li>○ 귀농귀촌인 성과발표 및 화합행사 추진</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역 빈집 및 농지 정보 수집 구축</li> <li>○ 귀농귀촌인 동네작가 활동 운영</li> <li>○ 귀농인 농산물 홍보 플리마켓 추진</li> <li>○ 농촌체험관광 연구회 육성 및 역량강화</li> <li>○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지원 및 네트워크 관리</li> <li>○ 도시민 농촌체험 유치 프로그램, 투어코스 발굴 및 홍보</li> <li>○ 교육지원청 연계 초중고 진로체험 및 농촌현장체험 지원</li> <li>○ 도시농업기반 구축 스쿨팜, 학교텃밭 운영 지원</li> <li>○ 도시농업 시책발굴 및 치유농업 신규사업 지원</li> <li>○ 관내 복지시설 및 정서 고위험군 원예치료 지원</li> <li>○ 도시농업 관리자 양성 교육 및 원예치료 활동지원</li> <li>○ 도시농업 체험장 및 공간조성사업</li> <li>○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li> <li>○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지원</li> <li>○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운영</li> <li>○ 도농교류 계획수립 및 지원</li> <li>○ 기타 농촌관광 및 지역 농업·농촌 활력에 관한 사항</li> </ul>
	<p>경영교육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교육 총괄 및 운영</li> <li>○ 농산물 소득조사 등 경영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특화작물 소득분석 통계</li> <li>- 농업인 경영진단 및 컨설팅</li> </ul> </li> <li>○ 농업인 대학 운영 및 동창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대학 학사과정 운영</li> <li>- 농업인 대학 총동창회 운영지원</li> </ul> </li> <li>○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교육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보안 및 정보갱신</li> <li>- 농업인 통합교육포털 구축 및 관리</li> </ul> </li> <li>○ 농업인 정보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디지털 배움터 운영 및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li> <li>- 농가 생산물 온라인 마케팅 교육 지원</li> </ul> </li> <li>○ 농업기술 전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li> <li>- 분야별 전문농업기술교육 컨설팅 추진</li> </ul> </li> <li>○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및 운영</li> <li>○ 강소농 육성 지원</li> <li>○ 중장기 농업인 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농업인육성 및 심화과정 전문교육 추진</li> </ul> </li> <li>○ 경영교육분야 시범사업 추진</li> <li>○ 기타 교육 및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농기계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li> <li>○ 농기계임대사업심의회 운영</li> <li>○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가 배달사업</li> <li>○ 농기계임대사업장 인력 및 시설 관리 운영</li> <li>○ 농기계 실습 및 안전교육</li> <li>○ 임대농기계 정비 점검 및 수리지원</li> <li>○ 임대 및 지원 농기계 선호도, 실태조사 및 분석</li> <li>○ 농업기계 보급 및 구입 지원사업</li> <li>○ 임대농기계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농기계 구입 및 임대</li> <li>○ 교육용농기계 구입 및 활용교육</li> <li>○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li> <li>○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li> <li>○ 임대장비, 교육용 농기계, 관리용차량 보험 관리</li> <li>○ 임대장비 불용농기계 매각 및 처분</li> <li>○ 농작업대행 장비지원사업 및 사후관리</li> <li>○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li> <li>○ 농기계 위탁 교육 지원사업(농업용드론, 굴삭기, 지게차)</li> <li>○ 산업기능요원(농기계수리 및 운전요원) 선정 및 복무관리</li> <li>○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관리</li> <li>○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li> <li>○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li> <li>○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보건 교육</li> <li>○ 농작업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li> <li>○ 기타 임대농기계 업무에 관한 사항</li> </ul>
기술보급 과 장	작물환경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li> <li>○ 작물환경분야 신기술 보급</li> <li>○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지도</li> <li>○ 맥류재배 기술지도</li> <li>○ 밭작물재배 기술지도</li> <li>○ 보급종 및 우량종자 보급</li> <li>○ 식량작물 친환경 농업 기술지도</li> <li>○ 농작물 재해대책 기술지도</li> <li>○ 병해충 종합방제 계획수립 및 기술지도</li> <li>○ 병해충예찰 및 관찰포 운영</li> <li>○ 병해충진단실 운영</li> <li>○ 쌀품질관리실 운영</li> <li>○ 종합검정실 운영</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물질분석실 운영</li> <li>○ 식량작물 실증시험포 운영</li> <li>○ 시비 및 토양비료 관련 기술지도</li> <li>○ 기상장비 및 농업기상이용 기술지도</li> <li>○ 과 서무(업무보고 등) 및 예산회계업무</li> <li>○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li>○ 우량종자채종포 지원</li> </ul>
	<p>소득작목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채소재배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시설 과채류 재배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시설원에 생력화 에너지절감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시설원에 경영비 절감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노지채소재배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과수재배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화훼재배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버섯재배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약용작물재배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원예작물 친환경농업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지역특화 및 새소득 작목육성</li> <li>○ 지역특화 및 새소득 작목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아열대 특용 작물재배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아열대 과수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기후변화대응 신기술보급 및 지도</li> <li>○ 채소 생육 및 병해충 조사</li> <li>○ 과수 생육 및 병해충 조사</li> <li>○ 기타 소득작목에 관한 사항</li> </ul>
	<p>농업생물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증시험포 운영 및 실증시험</li> <li>○ 유망 소득작물 도입 실증재배</li> <li>○ 새기술, 작물 보급을 위한 전시재배</li> <li>○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수행</li> <li>○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li> <li>○ 환경친화적 유용미생물 배양 제조 공급</li> <li>○ 유용미생물 활용 기술지도 &lt;수정&gt;</li> <li>○ 친환경자재 및 천적관련 친환경 실증사업</li> <li>○ 농업용 미생물 공급센터 운영</li> <li>○ BM활성수 제조실 운영</li> <li>○ 스마트농업분야 기술지도</li> <li>○ 스마트온실 교육장 운영</li> <li>○ 스마트농업 청년임대농장 운영</li> <li>○ 지역연구기반조성 활성화 사업 추진</li> <li>○ 기타 농업생물분야에 관한 사항</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기획생산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생산 기반확보 및 생산자 조직화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드플랜 기획생산 체계 구축</li> <li>- 원예농산물 기획생산 농가 조직화</li> <li>- 로컬푸드 및 급식영역 생산농가 육성 지원</li> <li>- 기획생산 품목 다양화 관련 지원사업</li> </ul> </li> <li>○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li> <li>- 원예농산물 공선출하조직 육성</li> </ul> </li> <li>○ 원예생산 기반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li> <li>-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li> <li>-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li> <li>- 지역별 맞춤형작목단지 조성</li> <li>-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li> <li>- 원예생산 품목 다양화 및 기반조성 관련사업</li> </ul> </li> <li>○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예생산 현대화 시설 지원</li> <li>-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li> <li>- 특용작물 현대화시설 지원</li> <li>-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li> <li>-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li> </ul> </li> <li>○ 원예농산물 전략작목 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계 포도 육성지원</li> <li>- 노지채소 기계화 재배단지 조성</li> </ul> </li> <li>○ 원예분야 스마트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li> <li>- ICT 융복합확산 시설 보급</li> </ul> </li> <li>○ 원예·특용작물 재해보험 및 재해복구지원</li> <li>○ 원예 생산통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및 생산량 조사</li> <li>- 과수, 노지채소,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생산량 조사</li> </ul> </li> <li>○ 과수, 화훼산업 육성 일반</li> <li>○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 및 관리</li> <li>○ FTA 피해보전 및 폐업 지원</li> </ul>

[수도사업소 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수도과장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li> <li>○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현금출납 및 금고감독</li> <li>○ 상수도 공사, 용역, 물품구입 및 수불</li> <li>○ 회계장부의 비치 정리, 결산, 재무제표 작성</li> <li>○ 급수공사 배정, 자재관리 및 수불</li> <li>○ 기채 및 지방채관리</li> <li>○ 상수도 용지매수, 교환, 수요, 이전보상, 매각</li> <li>○ 공인관리, 보안 및 공기업 경영평가 업무</li> <li>○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li> <li>○ 소내 서무, 공기업특별회계 자산 관리</li> <li>○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봉급 및 연말정산</li> </ul>
	누수방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수방지 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li> <li>○ 누수지 복구공사 추진</li> <li>○ 누수탐사 계획수립 및 시행</li> <li>○ 도로굴착 관련 협의</li> <li>○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li> <li>○ 생활민원(120)처리</li> <li>○ 누수보수장비, 물품, 자재관리</li> <li>○ 유수율 제고사업 계획수립</li> <li>○ 불량수도관 교체공사 계획수립 및 집행</li> <li>○ 노후관 개량공사 계획수립 및 집행</li> <li>○ 블록화 사업 추진</li> <li>○ 블록화 관망도 작성 및 전산화</li> <li>○ 원격제어시스템 및 감시시설 조정 통제</li> <li>○ 각종 자료 입력 및 분석관리</li> <li>○ 구역탐사 및 각종 유량제,감압변, 제수변 관리</li> </ul>
	요 금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 사용료 부과조정 및 체납금 징수</li> <li>○ 물이용 부담금 부과 및 징수</li> <li>○ 영업외 수입금 징수 및 조정</li> <li>○ 상수도 요율 조정</li> <li>○ 상수도 계량기 관리 및 부정계량기 단속</li> <li>○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금 관리</li> </ul>
	수질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시설의 수돗물 수질관리 및 검사</li> <li>○ 수돗물 평가 위원회 운영·관리</li> <li>○ 먹는물 수질검사 및 민원처리</li> <li>○ 건축물·시설의 저수조 소독등 위생조치 지도·감독</li> <li>○ 저수조 청소업 신고 및 관리</li> </ul>
	수 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 사업 종합계획 수립</li> <li>○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환경관리</li> <li>○ 상수도원 조성 사업</li> <li>○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계획 수립 및 집행</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관리</li> <li>○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li> <li>○ 기타 상수도 시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사항</li> </ul>
	급 수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수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급수공사 승인 및 공정 관리</li> <li>○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 지도</li> <li>○ 급·배수관 유지 관리</li> <li>○ 특수가압시설 허가 및 흡수정등 설치 운영 지도</li> <li>○ 급수전 조사 및 감찰 교부</li> <li>○ 수전대장관리 및 수전번호 부여 관리</li> <li>○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 유지 관리</li> </ul>
	시 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장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li> <li>○ 균산호수, 월명호수 제방관리 및 수위 조절</li> <li>○ 상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 (정·배수지, 가압장등)</li> <li>○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li> </ul>
하수과장	하수행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li> <li>○ 일반사무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결산, 지출 회계 업무</li> <li>○ 하수도 공기업 공사 및 용역 계약, 물품구입 및 수불</li> <li>○ 지하수 관련 민원처리</li> <li>○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li> <li>○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 신고</li> <li>○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사후관리</li> <li>○ 지하수 경미시설의 신고</li> <li>○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 행위의 신고</li> <li>○ 지하수개발 이용의 종료신고</li> <li>○ 지하수이용 실태조사</li> <li>○ 터널 등의 공사시 지하수 이용계획의 신고</li> <li>○ 지하수개발 이용 관련업 등록관리</li> <li>○ 지하수 수질관리 무허가 개발단속</li> <li>○ 개별 건축물 및 타행위, 타공사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li> </ul>
	하수계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 추진</li> <li>○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동지역)</li> <li>○ 하수관거정비공사(동지역)</li> <li>○ 공공하수도대장 작성 및 관리</li> <li>○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li> <li>○ 배수설비 설치신고 처리 및 준공검사</li> <li>○ 하수도 생활민원처리</li> <li>○ 읍면동 소규모 하수관거 사업</li> </ul>
	하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 소규모 하수관거 사업</li> <li>○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업</li> <li>○ 하수도 생활민원처리</li> <li>○ 새만금유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읍면지역)</li> <li>○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li> <li>○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li> <li>○ 하수도 민원처리 준설 단가계약공사</li> <li>○ 하수도 긴급보수 단가계약 공사</li> <li>○ 하수도관련 사업부지 토지보상 및 협의</li> <li>○ 침수대비 하수관로 정비공사</li> <li>○ 소규모하수관로 기술진단</li> <li>○ 하수관로 준설공사 시행</li> <li>○ 하수관로 CCTV촬영 시행</li> <li>○ 빗물받이 청소 및 유지관리</li> <li>○ 기타 하수도시설공사 관련 업무</li> </ul>
	하수위생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수·분뇨 처리 기본계획 수립</li> <li>○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변경 관리 및 지도점검</li> <li>○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li> <li>○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통합 실시</li> <li>○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리</li> <li>○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및 준공</li> <li>○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li> </ul>
	하수처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 시설물관리 및 지도감독</li> <li>○ 미용·은파가압장 운영 및 관리</li> <li>○ 마을하수도 기계·전기시설물 유지관리</li> <li>○ 하수종말처리장 대수선 공사</li> <li>○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집행</li> <li>○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실태 지도감독</li> <li>○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시설 관리에 따른 시설물 보수공사 승인</li> <li>○ 산업단지내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관리</li> <li>○ 폐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li> <li>○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지원 및 정산</li> <li>○ 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오·폐수 유입승인</li> <li>○ 군장산단 입주기업 폐수처리 지도점검</li> </ul>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차량등록 사업소장	관 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자동차 정비 명령, 임시검사, 과태료처분</li> <l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입 명령등 업무 전반</li> <li>○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단속 및 처분</li> <li>○ 자가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li> </u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정기검사 관련 업무 전반</li> <li>○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 관련 업무 전반</li> <li>○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은행 차량 통고처분 및 범칙금 부과 징수</li> <li>○ 의무보험미가입은행자 등록 번호판 영치</li> <li>○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운행차량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li> <li>○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조정, 징수업무</li> <li>○ 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부과, 조정, 징수업무</li> <li>○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조정, 징수업무</li> <li>○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관련 업무전반</li> <li>○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관련 업무전반</li> <li>○ 정기검사미필자동차 검사 명령 및 번호판 영치업무전반</li> </ul>
	<p>등 록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 등록관련 업무전반</li> <li>○ 자동차 정비.매매.폐차업 관련 업무전반</li> <li>○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 지정 및 행정처분</li> <li>○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업체 지정 및 행정처분 업무전반</li> <li>○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자 관련 업무전반</li> <li>○ 무등록 정비. 매매. 폐차. 번호판 교부. 택시미터 수리업자 단속 및 처분</li> <li>○ 특별사법경찰관련업무(정비범위 위반정비업자)</li> <li>○ 등록번호판 및 봉인탈거 허가</li> <li>○ 자동차 수출이행여부 신고수리</li> <li>○ 정비책임자 선·해임 보고서 접수처리</li> <li>○ 자동차 주행거리계 교체통보서 접수처리</li> <li>○ 자동차 전산자료의 이용승인 업무(2개이상 사군해당 전산 자료 제외)</li> <li>○ 건설기계 등록관련 업무전반</li> <li>○ 건설기계 조종사 관련 업무전반</li> <li>○ 건설기계사업자(대여업.정비업.매매업.폐기업) 및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업. 등록번호 새김업 관련 업무 전반</li> <li>○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 지정 및 행정처분 관련 업무전반</li> <li>○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 신청처리, 등록번호 훼손허가 및 새김명령</li> <li>○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수시 검사명령 정비명령 검사기간 연장 관련업무</li> <li>○ 건설기계 강제처리. 건설기계 폐기요청</li> <li>○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 전반</li> <li>○ 무등록 건설기계사업자 및 등록번호표 제작업자 단속 및 처분</li> <li>○ 불법 건설기계 단속 및 처분</li> </ul>
	<p>차량세무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세무민원 창구 운영</li> <li>○ 차량(자동차,건설기계,이륜자동차)등록 관련 취득세·등록 면허세 부과 [자진신고분, 보통징수분 징수결의]</li> <li>○ 차량관련 비과세 및 감면. 감액처리</li> <li>○ 비과세·감면 차량 사후 관리 및 추징</li> </ul>

## [읍면동 소관]

읍면동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읍면장	읍면지역 공통	서무, 보안, 인사, 교육, 예산, 회계, 선거, 통계, 공보, 관광,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 지원·관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세외수입, 기부금품의 통제, 복지관련 지역자원발굴·관리·복지 위원 관리, 사례관리 대상발굴, 자활 및 노인일자리 사업장 관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발급, 범죄자·파산자 대장정리, 민방위 조직편성 및 운영, 농업, 농사의 개량지식과 기술의 보급, 잠업, 양정, 수산, 농지개량, 수리산림, 수렵, 광업, 상업, 공업, 특허, 전기, 연료, 기상관측, 지역사회 개발과 기타 산업에 관한 사항, 옥도면(관공선 관리)

※ 기타 읍면동의 특성에 따라 읍면동장이 적정배분.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규칙 제834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와 관련)

[별표]

(총괄)

계	급	직	렬	합	본	보	농	사	읍	면	동	의	회	사	무	국	
				계	청	건	업	업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합				1632	850	99	96	150	13	138	246	40					
정 무 직				1	1												
차관(급)	소	정	무	1	1												
	일 반 직			1594	842	99	66	150	13	138	246	40					
3급	소	정	무	1	1												
	3급			1	1												
4급	소	정	무	10	5	1	1	2				1					
	소	정	무	3	1			1				1					
	소	정	무	1		1											
	소	정	무	5	4			1									
	소	정	무	1			1										
5급	소	정	무	79	36	4	3	6	1	10	16	3					
	소	정	무	16	15			1									
	소	정	무	1		1											
	소	정	무	1	1												
	소	정	무	4	4												
	소	정	무	1				1									
	소	정	무	1				1									
	소	정	무	7	6			1									
	소	정	무	1	1												
	소	정	무	1				1									
	소	정	무	1	1												
	소	정	무	1													
	소	정	무	2								2					
	소	정	무	1								1					
소	정	무	1								1						

계	급	직	렬	합	본	보	농	사	읍	면	동	의						
				계	청	소	업	업	소	소	소	소	회	사	무	국		
5급	행정·사회복지·환경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4									4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1			1													
	행정·복지·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3	3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2										2						
	행정·사회복지·농업·복지	2									2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4									1		3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농업·복지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농업·간호·시설	1									1							
	행정·농업·환경·시설	2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농업·수의·농촌지도					1												

계급	직렬	합계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의회사무국					
6급	소계	335	191	18	20	27	3	31	36	9					
	행정	70	52			3			11	4					
	세무	2	2												
	전산	1	1												
	사회복지	8	2							6					
	공업	4	3			1									
	녹지	2	2												
	해양수산	3	3												
	보건진료	6		6											
	시설	17	15			2									
	시설관리	1	1												
	운전	2	2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12	10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34	19					1	3	11					
	행정·사서	9	1			8									
	행정·공업	4	3			1									
	행정·농업	12			5				5	2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5	5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31	29			2									
	행정·학예연구	3	2			1									
	전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5	3			2										
공업·시설	6	4			2										
농업·수의	2			2											
농업·시설	1	1													

계급	직렬	합	본	보	농	사	읍	면	동	의								
		계	청	건	업	업	면	면	동	회								
6급	농업·농촌지도	4			4													
	녹지·시설	2	2															
	보건·식품위생	2	2															
	선박항해운영·선박기관운영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공업	1								1								
	행정·세무·농업	6						1	5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사회복지·세무	2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간호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5	4								1							
	행정·공업·시설	4	2				2											
	행정·농업·세무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3				1			1		1							
	행정·농업·공업	1							1									
	행정·농업·농촌지도	3				3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3	2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공업·농업·농촌지도	1				1												
	공업·환경·시설	2					2											
	농업·농업연구·농촌지도	4				4												
	보건·의료기술·간호	9		9														
	행정·세무·사회복지·해양수산	1										1						
	행정·세무·농업·녹지	1							1									
	행정·전산·공업·시설	1										1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계	급	직	합	본	보	농	사	읍	면	동	의									
												계	청	건	업	기	업	사	무	국
6급		행정·사회복지·보건·세무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숙기·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2	2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3															
7급	소	계	496	266	39	17	48	4	36	62	24									
	행	정	147	95	1	2	16	1	6	21	5									
	세	무	2	2																
	전	산	1	1																
	사	회	41	4				1	12	24										
	사	서	7				7													
	속	기	1								1									
	공	업	18	5			13													
	농	업	8			8														
	녹	지	5	5																
	수	의	2			2														
	해	양	7	5						2										
	보	건	2		2															
	식	품	1	1																
	간	호	9		9															
	보	건	8		8															
	환	경	7	7																
	시	설	37	32		1	4													
	방	송	5	5																
	시	설	1	1																
	운	전	6	3	1							2								
	행	정	24	19							5									
행	정	6	6																	
행	정	38	30							8										

계급	직렬	합	본	보	농	사	읍	면	동	의									
		계	청	건	업	업	면	동	회	사	무	국							
7급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9	4			1			4										
	행정·농업	14			3		1	10											
	행정·녹지	4	2					2											
	행정·해양수산	5	5																
	행정·보건	7	3	3		1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19	12			1	1	4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해양수산	1	1																
	공업·환경	5	4			1													
	공업·시설	4	3			1													
	농업·수의	1			1														
	녹지·시설	1	1																
	해양수산·시설	1	1																
	식품위생·위생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보건·방송통신	1		1															
	행정·식품위생·위생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공업·보건·환경	1					1												
보건·식품위생·위생	1	1																	

계	급	직	렬	합	본	보	농	사	읍	면	동	의								
				계	청	소	업	업	소	소	소	국								
7급		보건·의료기술·간호		15	1	14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2									2							
		행정·사회복지·농업·방송통신		2									2							
8급	소	계		394	218	31	12	39	3	26	63	2								
	행	정		97	63			6	1	6	21									
	세	무		6	5			1												
	전	산		2	2															
	사	회	복	지	22	6				1	4	11								
	사			서	6				6											
	공			업	21	12	1	1	7											
	농			업	3			3												
	녹			지	4	4														
	해	양	수	산	7	5					2									
	보			건	10	3	7													
	의	료	기	술	7		7													
	간			호	18		5					13								
	보	건	진	료	4		4													
	환			경	2	2														
	시			설	37	31			6											
	방	송	통	신	2	2														
	방	재	안	전	2	2														
	운			전	8	7	1													
	건	축	운	영	1	1														
	기	계	운	영	3				3											
	행	정	·	세	무	12	10		2											
	행	정	·	전	산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2	16	1							
	행	정	·	사	서	2	2													
	행	정	·	공	업	7	3		4											



계급	직렬	합	본	보	농	사	읍	면	동	의								
		계	청	건	업	업				회								
		소	소	소	기술	소				사								
		센터	소	소	센터	소				무								
		국								국								
8급	행정·농업	18			7		1	8	2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보건	3	1	1		1												
	행정·간호	3	1	2														
	행정·시설	25	18		1	1		4		1								
	행정·방송통신	1	1															
	세무·전산	1	1															
	전산·방송통신	2	2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환경	3	2			1												
	공업·시설	3	2			1												
	공업·방재안전	1	1															
	해양수산·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간호	1		1														
	식품위생·위생	1	1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식품위생·위생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9급	소	279	125	6	13	28	2	35	69	1								
	행정	62	23		1	2	1	9	26									
	세	9	9															
	전	3	2			1												
	사회복지	57					1	16	40									
	사	7				7												
	공	9	4		1	4												
	농	9			8			1										
	녹	1	1															
	해	5	3						2									

계급	직렬	합	본	보	농	사	읍	면	동	의								
		계	청	건	업	업				회								
		소	소	소	기	소				사								
		센터	소	소	술	소				무								
		국			센					국								
9급	보	3		3														
	의	1		1														
	환	5	4			1												
	시	26	24			2												
	방	1	1															
	방	2	2															
	시	2				2												
	운	3	1			2												
	전	4	3			1												
	열	1	1															
	사	1	1															
	사	17	12			2		3										
	행	1	1															
	행	11	9							2								
	행	2				2												
	행	1									1							
	행	8	6			2												
	행	6			3			2	1									
	행	2	2															
	행	4	2						2									
	행	2	1	1														
	행	1	1															
	행	2	2															
	행	6	6															
	행	1	1															
	공	1	1															
	행	1	1															
	보	1		1														
행	1	1																

계급직렬		합계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의회사무국							
연구직계		1			1												
연구사	소계	1			1												
	농업연구·농촌지도	1			1												
지도직계		28			28												
지도관	소계	2			2												
	농촌지도	2			2												
지도사	소계	26			26												
	농촌지도	26			26												
전문경력관계		4	3		1												
나군	소계	4	3		1												
	전문경력관	4	3		1												
별정직계		4	4														
6급상당	소계	3	3														
	별정	3	3														
7급상당	소계	1	1														
	별정	1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총괄]													
계급	직	별	합	본	보	농	사	읍	면	동	의	계급	직	별	합	본	보	농	사	읍	면	동	의	
			계	청	건	업	업				회				계	청	건	업	업				회	
			소	소	소	센터	소				사				소	소	소	센터	소				사	
합			1632	850	138	246						합			1632	850	138	246						
일			1594	842	99	66	150	13	138	246	40	일			1594	842	99	66	150	13	138	246	40	
5급	소	계	79	36	4	3	6	1	10	16	3	5급	소	계	79	36	4	3	6	1	10	16	3	
	행정·시설		8	7			1						행정·시설		7	6				1				
	행정·시설·방재안전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6급	소	계	335	191	18	20	27	3	31	36	9	6급	소	계	335	191	18	20	27	3	31	36	9	
	행		71	52			3			12	4		행		70	52			3			11	4	
	행정·사회복지		39	19				1	6	13			행정·사회복지		34	19				1	3	11		
	행정·농업		14			5				7	2		행정·농업		12			5				5	2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32	30			2						행정·시설		31	29				2				
	행정·사회복지·세무												행정·사회복지·세무		2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4						4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간호												행정·사회복지·간호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농업·세무												행정·농업·세무		1								1	
	행정·농업·공업												행정·농업·공업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세무												행정·사회복지·보건·세무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행정·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1								1			
7급	소	계	496	266	39	17	48	4	36	62	24	7급	소	계	496	266	39	17	48	4	36	62	24	
	행정·시설		20	13			1	1	4		1		행정·시설		19	12				1	1	4		1
	행정·시설·방재안전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훈령 제437호

##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정 2024. . . >

[별표1]

[본청: 직속부서, 자치행정국]

계급	직렬	합계	직속부서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자치행정국계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교육지원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합계		850	43	12	16	15		200	40	31	24	17	31	22	17	18			
정무직		1						1	1										
차관(급)	소	1						1	1										
	정무	1						1	1										
	일반직	842	43	12	16	15		195	35	31	24	17	31	22	17	18			
3급	소	1						1	1										
	행정	1						1	1										
4급	소	5						1	1										
	행정	1						1	1										
	행정·기술	4																	
5급	소	36	3	1	1	1		8	1	1	1	1	1	1	1	1			
	행정	15	3	1	1	1		7	1	1	1	1	1	1	1				
	시설	1																	
	행정·사회복지	4																	
	행정·시설	6																	
	행정·방송통신	1						1									1		
	행정·공업·환경	2																	
	행정·공업·시설	1																	
	행정·녹지·시설	1																	
	행정·해양수산·시설	3																	
	행정·보건·식품위생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6급	소	191	10	2	4	4		43	7	7	7	4	6	5	3	4		
행정		52	8	2	2	4		20	4	7	3	3			3				
세무		2						2					2						

계	급	직	렬	합	계	직속부서	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교육지원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계
6급		전	산	1							1								1							
		사	회	복	지	2																				
		공			업	3					2		2													
		녹			지	2																				
		해	양	수	산	3																				
		시			설	15																				
		시	설	관	리	1																				
		운			전	2						1		1												
		기	계	운	영	1						1	1													
		사	무	운	영	1																				
		행	정	·	세	무	10	1	1			9					4	5								
		행	정	·	전	산	1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1			1											
		행	정	·	사	서	1					1	1													
		행	정	·	공	업	3																			
		행	정	·	녹	지	2																			
		행	정	·	해	양	수	산	5																	
		행	정	·	환	경	1																			
		행	정	·	시	설	29	1	1																	
		행	정	·	학	예	연	구	2																	
		전	산	·	시	설	1																			
		전	산	·	방	송	통	신	1													1				
		공	업	·	환	경	3																			
		공	업	·	시	설	4					1		1												
		농	업	·	시	설	1																			
		녹	지	·	시	설	2																			
		보	건	·	식	품	위	생	2																	
		행	정	·	세	무	·	사	회	복	지	1	1													
	행	정	·	전	산	·	방	송	통	신	2										1					
	행	정	·	사	회	복	지	·	시	설	1															





계	급	직	렬	합	계	직속부서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자치행정국계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교육지원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7급	행정·시설	12		2	2																				
	전산·방송통신	1									1									1					
	공업·해양수산	1																							
	공업·환경	4																							
	공업·시설	3																							
	녹지·시설	1																							
	해양수산·시설	1																							
	식품위생·위생	1																							
	행정·식품위생·위생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보건·식품위생·위생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8급	소계	218		10	4	1	5				51	6	11	6	4	10	4	6	4						
	행정	63		7	2	1	4				25	2	11	3	4				5						
	세무	5									5					5									
	전산	2									2									2					
	사회복지	6																							
	공업	12									1		1												
	녹지	4																							
	해양수산	5																							
	보건	3																							
	환경	2																							
	시설	31																							
	방재안전	2																							
	방송통신	2		1	1							1											1		
	운전	7										1										1			
	건축운영	1										1		1											
	행정·세무	10										8					4	4							
	행정·전산	2		1				1																	
	행정·사회복지	17																							
행정·사서	2										2	2													









계	급	직	렬	경제	일자리	산업	새만금	항만	수산물	어업	문화	문화	관광	도시	체육	위생							
				향	경제	지원	에너지	해양	품질	진흥	관광	예	관광	재	진흥	행정	국	국	국	국	국	국	국
6급		행정·공업·환경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복지·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행정·공업·보건·환경																					
7급	소	계	39	9	4	6	9	5	6		27	6	5	3	4	9							
	행	정	17	8	4	1	4				12	4	3	1	2	2							
	세	무																					
	전	산																					
	사	회																					
	공	업									1					1							
	녹	지																					
	해	양	5					1	4														
	식	품									1						1						
	환	경																					
	시	설	3			1	2				2		1	1									
	방	송																					
	시	설																					
	운	전																					
	행	정																					
	행	정																					
	행	정																					
	행	정	3			3																	
	행	정									1		1										
	행	정	5					1	2	2													
행	정									3						3							
행	정	1			1																		

계	급	직	렬	경제	일자	산업	새만	항만	수산	어업		문화	문화	관광	도시	체육	위생							
				항만	리	지	금	해양	업	어	관	예	재	육	행									
7급	행정·시설	3	1					2				1			1									
	전산·방송통신																							
	공업·해양수산	1							1															
	공업·환경																							
	공업·시설											2	2											
	녹지·시설																							
	해양수산·시설	1							1															
	식품위생·위생												1					1						
	행정·식품위생·위생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보건·식품위생·위생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8급	소 계	30	8	6	5	4	3	4				26	2	9	8	3	4							
	행정	14	8	4	1	1						7	1	6										
	세무																							
	전산																							
	사회복지																							
	공업	2			2							1					1							
	녹지																							
	해양수산	5						2	3															
	보건											2					2							
	환경																							
	시설											7		2	4	1								
	방재안전																							
	방송통신																							
	운전											1						1						
	건축운영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행정·사서																								





계급	직렬	경제	일자리	산업	새만금	항만	수산물	어업		문화	문화	관광	도시	체육	위생					
		항만	경제	지원	에너지	해양	정책	진흥		관	예	진흥	생	행정						
9급	열관리운영									1				1						
	사육운영																			
	사무운영									6	2		1	3						
	행정·세무																			
	행정·사회복지																			
	행정·공업	3		2		1				2					2					
	행정·농지																			
	행정·해양수산	2						1	1											
	행정·보건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환경																			
	행정·시설	3	1	1	1						3	2	1							
	행정·방송통신																			
	공업·시설																			
	행정·시설·방송통신																			
행정·해양수산·보건·식품위생	1						1													
전문경력관										3				3						
나	군									3				3						
	전									3				3						
별정직																				
6급상당	소																			
	별																			
7급상당	소																			
	별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정 2024. . . >

[별표1]

[본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계급	직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계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계	과	과	과	과	과	과	과		
합	계	186	37	26	26	17	31	24	25	184	35	20	27	27	23	31	21		
정무직	계																		
차관(급)	소계																		
	정무																		
	일반직	계	186	37	26	26	17	31	24	25	184	35	20	27	27	23	31	21	
3급	소계																		
	행정																		
4급	소계	1	1							1	1								
	행정																		
	행정·기술	1	1							1	1								
5급	소계	7	1	1	1	1	1	1	1	7	1	1	1	1	1	1	1		
	행정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4	1	1	1	1													
	행정·시설									4	1		1	1			1		
	행정·방송통신																		
	행정·공업·환경	2					1	1											
	행정·공업·시설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보건·식품위생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6급	소계	40	7	6	5	4	7	5	6	42	7	5	5	7	6	8	4		
	행정	1						1		5	1					4			
	세무																		

계급	직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	아동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국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국	과	과	과	과	과	과	과		
6급	전 산																		
	사회복지	2	2																
	공업																		
	녹지	2							2										
	해양수산																		
	시설										13	4	2	3	2		2		
	시설관리	1						1											
	운전										1				1				
	기계운영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18	5	5	4	4													
	행정·사서																		
	행정·공업	1		1							1			1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4	4	1	1	3	3	1	1	
	행정·학예연구																		
	전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공업·환경	3						3											
	공업·시설										1	1							
	농업·시설										1			1					
	녹지·시설	2								2									
	보건·식품위생																		
	행정·세무·사회복지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계	급	직	렬	복지환경국계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국계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계	급
6급	행정·공업·환경	4							3	1																
	행정·공업·시설																									
	행정·녹지·시설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보건·식품위생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2								2																
7급	소 계	64	16	8	7	5	12	8	8				48	9	6	8	8	4	7	6						
	행정	9		1	2	1	2	2	1				9	3	2		1	1	1	1						
	세무																									
	전산																									
	사회복지	4	2		2																					
	공업	1						1					2			2										
	녹지	5								5																
	해양수산																									
	식품위생																									
	환경	7					6	1																		
	시설												25	3	3	3	6	2	3	5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1						1																		
	운전																									
	행정·세무																									
	행정·전산												2						2							
	행정·사회복지	28	14	7	3	4							1				1									
	행정·공업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행정·보건																										
행정·환경	2						1	1																		

계	급	직	렬	복지환경국계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복지과		안전건설국계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7급	행정·시설	1									1		5			3		1	1				
	전산·방송통신																						
	공업·해양수산																						
	공업·환경	4							3	1													
	공업·시설	1								1													
	복지·시설													1		1							
	해양수산·시설																						
	식품위생·위생																						
	행정·식품위생·위생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보건·식품위생·위생																						
	보건·의료기술·간호																						
	8급	소계	43	7	8	8	4	4	6	6				58	10	7	9	8	8	10	6		
행정		5		2		1	1	1					5							4	1		
세무																							
전산																							
사회복지		6	1	1	4																		
공업		2						1	1				6	1		3	2						
복지		4									4												
해양수산																							
보건		1							1														
환경		2						1	1														
시설		1									1		23	2	6	2	4	5			4		
방재안전													2	2									
방송통신																							
운전		2							1	1			3			2				1			
건축운영																							
행정·세무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7	6	4	4	3																	
행정·사서																							

계	급	직	렬	복지환경국	복지정	경로장	아동정	여성가족청	환경정	자원순	산림녹	안전건설국	안전총	도시계	건설	주택행	건축경	교통행	토지정				
				국	과	애인	책과	소년	책과	환과	지과	국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8급	행정·공업											2	1						1				
	행정·녹지																						
	행정·해양수산																						
	행정·보건																						
	행정·간호																						
	행정·시설	1		1								11	2	1	2	1	3	2					
	행정·방송통신											1						1					
	세무·전산																						
	전산·방송통신												1						1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1	1										
	공업·방재안전											1	1										
	해양수산·시설																						
	보건·식품위생																						
	식품위생·위생																						
	행정·식품위생·위생	1							1														
	9급	소계	31	5	3	5	3	7	4	4			28	7	1	4	3	4	5	4			
행정		5	1	2	2																		
세무																							
전산																							
공업												2	1						1				
녹지		1								1													
해양수산																							
환경		4					2	2															
시설		1						1				16	2	1	2	3	4			4			
방재안전												2	2										
방송통신																							
운전		1				1																	
전기운영		1					1					1			1								

계	급	직	렬	복지	복지	경로	아동	여성	환경	자원	산림	안전	안전	도시	건설	주택	건축	교통	토지			
				환경	정책	장애	정책	가족	정책	순환	녹지											건설
9급	열 관 리 운 영																					
	사 육 운 영		1						1													
	사 무 운 영												4		1				3			
	행 정 · 세 무																					
	행 정 · 사 회 복 지		9	4		3	2															
	행 정 · 공 업												1	1								
	행 정 · 녹 지		3									3										
	행 정 · 해 양 수 산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식 품 위 생																					
	행 정 · 환 경		2						2													
	행 정 · 시 설		1	1									1						1			
	행 정 · 방 송 통 신																					
	공 업 · 시 설		1						1													
	행 정 · 시 설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해 양 수 산 보 건 식 품 위 생																					
전 문 경 력 관 계																						
나 군	소 계																					
	전 문 경 력 관																					
별 정 직 계																						
6급상당	소 계																					
	별 정																					
7급상당	소 계																					
	별 정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정 2024. . . >

[별표5]

[읍면동: 읍, 면]

계급	직렬	합계	읍		면		회	임	서	대	개	성	나	읍	읍
			구	읍	산	현									
합	계	397	13	13	138	13	13	13	13	15	13	13	13	19	13
일	반	397	13	13	138	13	13	13	13	15	13	13	13	19	13
5급	소	27	1	1	10	1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행정·사회복지·환경	1													
	행정·사회복지·시설	4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2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2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	1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시설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행정·공업·농업·녹지	1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1	1	1										1
	행정·농업·간호·시설	1			1							1			
	행정·농업·환경·시설	2			2				1	1					



계급	직렬	합계	읍		면	읍	회	임	서	대	개	성	나	읍	읍
			구	읍											
					산	현	피	수	야	정	산	포	도	서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6급	소계	70	3	3	31	3	3	3	3	3	3	3	3	4	3
	행정	11													
	사회복지	6													
	행정·세무	1													
	행정·사회복지	15	1	1	3	1					1	1			
	행정·농업	7			5	1	1		1	1	1				
	행정·환경	1													
	선박항해운영 선박기민운영	1			1									1	
	행정·세무·공업	1													
	행정·세무·농업	6	1	1	5	1	1			1		1	1		
	행정·사회복지·세무	2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1	
	행정·공업·농업	1			1			1							
	행정·공업·환경	1													
	행정·농업·세무	1			1				1						
	행정·농업·공업	1			1		1								
	행정·농업·녹지	1			1							1			
	행정·농업·시설	1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1		
	행정·세무·농업·녹지	1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세무	1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1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1	

계급	직렬	합계	읍		면	읍	회	임	서	대	개	성	나	읍	읍			
			구	읍														
7급	소계	102	4	4	36	3	2	3	3	7	3	3	3	5	4			
	행정	28	1	1	6	1			1	2	1				1			
	사회복지	37	1	1	12	1	1	1	1	2	1	1	1	2	1			
	해양수산	2			2										2			
	행정·세무	5																
	행정·사회복지	8																
	행정·공업	4																
	행정·농업	11	1	1	10		1	1	1	2	1	1	1	1	1			
	행정·복지	2			2								1	1				
	행정·시설	5	1	1	4	1		1		1								1
8급	소계	92	3	3	26	2	4	2	2	2	2	2	3	4	3			
	행정	28	1	1	6	1	2	1			1	1						
	사회복지	16	1	1	4				1	1			1		1			
	해양수산	2			2										2			
	간호	13																
	행정·사회복지	18			2								1	1				
	행정·농업	11	1	1	8	1	1	1		1		1	1	1	1			
	행정·시설	4			4		1		1		1							1
9급	소계	106	2	2	35	4	3	4	4	2	4	4	3	5	2			
	행정	36	1	1	9	1	1	1	2	1	1	1	1					
	사회복지	57	1	1	16	2	2	2	1	1	2	2	1	1	2			
	농업	1			1								1					
	해양수산	2			2										2			
	사무운영	3			3					1		1	1					
	행정·사회복지	2																
	행정·농업	3			2	1		1										
	행정·해양수산	2			2													2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정 2024. . . >

[별표5]

[읍면동: 동]

계급	직렬	동	해	월	삼	신	중	흥	조	경	구	개	수	나	나	나	소	미			
		계	신	명	학	풍	양	남	촌	암	암	정	송	운	운	운	룡	성			
		계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합계		246	11	13	13	13	11	15	19	14	14	11	23	15	19	20	19	16			
일반기계		246	11	13	13	13	11	15	19	14	14	11	23	15	19	20	19	16			
5급	소계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1						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사회복지·환경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4		1			1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농업·녹지																				
	행정·공업·농업·시설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행정·농업·간호·시설																				
	행정·농업·환경·시설																				

계급	직렬	동	해	월	삼	신	중	흥	조	경	구	개	수	나	나	나	소	미			
		계	신	명	학	풍	양	남	촌	암	암	정	송	운	운	운	통	성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6급	소 계	36	2	2	2	2	2	2	2	2	2	2	3	2	3	3	3	2			
	행정	11	1		1	1	1	1	1	1	1			1	1	1					
	사회복지	6		1				1		1			1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환경	1		1																	
	선박해양운영 선박기관운영																				
	행정·세무·공업	1															1				
	행정·세무·농업																				
	행정·사회복지·세무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공업·농업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농업·세무																				
	행정·농업·공업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시설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세무·농업·녹지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행정·사회복지·보건·세무																				
	행정·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행정·공업·농업·시설																				
	행정·농업·녹지·시설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계급	직렬	동계	해동	월동	삼동	신동	중동	흥동	조동	경동	구동	개동	수동	나동	나동	나동	소동	미동		
		신	명	학	풍	양	남	촌	암	암	정	송	운1	운2	운3	통	성			
7급	소계	62	3	4	3	3	2	3	4	4	2	2	6	5	6	6	5	4		
	행정	21	2	1	1	2	1	2		2	2	1		2		2	2	1		
	사회복지	24	1	1		1	1		2	2		1	4	3	3	1	2	2		
	해양수산																			
	행정·세무	5							1				1		1	1	1			
	행정·사회복지	8		2	2			1							1	1		1		
	행정·공업	4							1				1		1	1				
	행정·농업																			
	행정·복지																			
	행정·시설																			
8급	소계	63	2	4	4	3	2	5	5	3	4	3	5	3	5	5	5	5		
	행정	21	2	1	1	1	2	2	2	1		2	1		1	2	2	1		
	사회복지	11		2	2			2	1		1				1	1		1		
	해양수산																			
	간호	13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복지	16				1			1	1	2	1	2	2	2	1	2	1		
	행정·농업	2											1					1		
	행정·시설																			
9급	소계	69	3	2	3	4	4	4	7	4	5	3	8	4	4	5	5	4		
	행정	26	1	1	2	2	1	1	3	1	3	2	3		1	1	2	2		
	사회복지	40	2	1	1	2	3	3	4	3	2	1	4	3	3	3	3	2		
	농업																			
	해양수산																			
	사무운영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	1														1				
	행정·해양수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p> <p>[별표] <span style="float: right;">[본청: 안전건설국]</span></p>					<p>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p> <p>[별표] <span style="float: right;">[본청: 안전건설국]</span></p>					
계급	직	렬	합 계	안 전 건 설 국 계	안 전 총 괄 과					
합			850	184	35					
일 반 직			842	184	35					
5급	소		36	7	1					
	행 정 · 시 설		7	5	1					
	행정·시설·방재안전									
6급	소		191	42	7					
	행 정 · 시 설		30	15	5					
	행정·시설·방재안전									
7급	소		266	48	9					
	행 정 · 시 설		13	6	1					
	행정·시설·방재안전									

현행

개정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면]

[별표]

[면]

계급	직	렬	합								
			계	면	회	임	서	대	개	육	
			계	면	현	피	수	야	정	서	
합			계	397	138	13	13	13	15	13	13
일 반 직			계	397	138	13	13	13	15	13	13
6급	소		계	70	31	3	3	3	3	3	3
	행정·사회복지			20	6		1	1			1
	행정·농업			9	7	1	1	1	1	1	
	행정·사회복지·세무										
	행정·사회복지·보건			4	4	1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행정·사회복지·시설										1
	행정·농업·세무									1	
	행정·농업·공업										
	행정·사회복지·보건·세무										
	행정·사회복지·보건·의약기술										

계급	직	렬	합								
			계	면	회	임	서	대	개	육	
			계	면	현	피	수	야	정	서	
합			계	397	138	13	13	13	15	13	13
일 반 직			계	397	138	13	13	13	15	13	13
6급	소		계	70	31	3	3	3	3	3	3
	행정·사회복지			15	3						
	행정·농업			7	5	1		1		1	
	행정·사회복지·세무			2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1		
	행정·사회복지·간호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1
	행정·농업·세무			1	1				1		
	행정·농업·공업			1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세무			1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의약기술			1	1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동]

[별표]

[동]

계급	직	렬	합				
			계	동	월	신	
			계	동	명	종	
합			계	397	246	13	13
일 반 직			계	397	246	13	13
6급	소		계	70	36	2	2
	행		정	12	12	1	1
	행정·사회복지			20	13		1
	행정·환경						
	행정·사회복지·세무						
행정·사회복지·간호							

계급	직	렬	합				
			계	동	월	신	
			계	동	명	종	
합			계	397	246	13	13
일 반 직			계	397	246	13	13
6급	소		계	70	36	2	2
	행		정	11	11		1
	행정·사회복지			15	11		
	행정·환경			1	1	1	
	행정·사회복지·세무			2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2	1		1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훈령 제438호

##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안전총괄계장·사회재난계장·자연재난계장·하천계장·중대재해관리계장”을 “안전총괄계장·자연재난계장·하천계장·중대재해관리계장”으로, “방재시설관리계장”을 “사회재난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방재안전주사로, 방재시설관리계장”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임피면·서수면·대야면·성산면”을 “서수면·성산면”으로, “옥서면”을 “임피면 행정민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로, 대야면 행정민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로, 옥서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각 읍·면의 복지지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하되, 임피면 복지지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



는 지방세무주사로, 서수면 복지지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로, 옥서면 복지지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대야면·옥도면의 복지지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회현면 복지지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로, 개정면 복지지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하되” 를 “하되, 월명동 행정민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환경주사로”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사회복지주사로,” 를 “지방사회복지주사로 하되, 신평동 복지지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로, 구암동 복지지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로” 로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안전총괄과) ① (생략)</p> <p>② 민방위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u>안전총괄계장·사회재난계장·자연재난계장·하천계장·중대재해관리계장</u>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u>방재시설관리계장</u>은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한다.</p>	<p>제32조(안전총괄과)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안전총괄계장·자연재난계장·하천계장·중대재해관리계장</u>-----</p> <p>----- <u>사회재난계장</u>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방재안전주사로, <u>방재시설관리계장</u>-----.</p>
<p>제53조(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 ① (생략)</p> <p>② <u>임피면·서수면·대야면·성산면</u> 행정민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옥구읍·옥산면·회현면·개정면·나포면·옥도면 행정민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u>옥서면</u> 행정민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해양수산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한다.</p>	<p>제53조(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서수면·성산면</u> -----</p> <p>----- <u>임피면</u> 행정민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로, 대야면 행정민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로, <u>옥서면</u> ---.</p>

③·④ (생략)

⑤ 각 읍·면의 복지지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로, 회현면·대야면·개정면·옥도면의 복지지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보건주사로 한다.

제54조(해신동, 월명동, 삼학동, 신평동, 중앙동, 흥남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① (생략)

② 각 동의 행정민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하되, 수송동 행정민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각 읍·면의 복지지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하되, 임피면 복지지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로, 서수면 복지지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로, 옥서면 복지지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대야면·옥도면의 복지지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회현면 복지지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로, 개정면 복지지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로 한다.

제54조(해신동, 월명동, 삼학동, 신평동, 중앙동, 흥남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하되, 월명동 행정민원계장

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  
 세무주사로, 소룡동 행정민원계  
 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  
 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개정동,  
 미성동 행정민원계장은 지방행정  
 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한다.

③ (생략)

④ 각 동의 복지지원계장은 지방  
 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로, 월명동, 흥남동, 경암동, 수  
 송동, 나운2동, 나운3동의 복지지  
 원계장은 지방사회복지주사로 한  
 다.

은 지방행정주사·지방환경주사  
로-----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지방사회복지주사로 하  
되, 신평동 복지지원계장은 지방  
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  
는 지방간호주사로, 구암동 복지  
지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  
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로 ---.

군산시 공고 제2024-1003호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각종 축제 개최 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사장 외곽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주차장에서 행사장을 순환하는 차량을 운행하여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 활성화 도모

#### 2. 주요내용

-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축제장 차량 운행) 조항 신설하여 차량 운행에 대한 근거 마련
- 개정문(안)

**제11조의2(축제장 차량 운행)**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군산시 소유 차량 및 임차버스를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차량 운행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24. 5. 1. ~ 5. 21.(20일)

###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1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이메일 등

(우 편)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전 화) 063-454-3302, / (FAX) 063-454-6020

(이메일) yaeji9@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관광진흥과 축제계(063-454-33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축제장 차량 운행)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축제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군산시 소유 차량 및 임차버스를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차량 운행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u>제11조의2(축제장 차량 운행) ①</u>  <u>시장은 제2조에 따른 축제장을</u>  <u>찾는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관</u>  <u>광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차량</u>  <u>을 운행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축제의 성격 및 위치</u>  <u>등을 고려하여 운행노선, 운행</u>  <u>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할 수 있</u>  <u>으며, 군산시 소유 차량 및 임</u>  <u>차버스를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u>  <u>있다.</u></p> <p><u>③ 차량 운행은 예산부족 및 그</u>  <u>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u>  <u>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u>  <u>단할 수 있다.</u></p>

군산시 공고 제2024 - 1025호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 인원 조정 및 소속기관 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나. 제3조제1항 중 “16명”을 “1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106보병연대”를 “제9585부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군산출장소장”을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경비과장, 제106

보병연대 1대대 작전과장”을 “경비교통과장, 제9585부대 1대대 정작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보과장, 제106보병연대 1대대 정보과장”을 “치안정보안보과장, 제9585부대 1대대 정보부사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06보병연대”를 “제9585부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를 “별표”로 한다.

- 6. 335방첩부대 176방첩대장
- 7. 군산해양경찰서장
- 13.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장
- 14.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15. 제9585부대 11해안감시기동대대장으로 한다.

3. 입법예고기간 : 2024. 5. 1.(수) ~ 2024. 5. 21.(화)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군산시청), 안전총괄과  
(TEL. 063-454-3832, FAX. 063-454-6030, E-mail. laurenzio@korea.kr)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민방위계  
(☎063-454-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명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6명”을 “1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106보병연대”를 “제9585부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군산출장소장”을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경비과장, 제106보병연대 1대대 작전과장”을 “경비교통과장, 제9585부대 1대대 정작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보과장, 제106보병연대 1대대 정보과장”을 “치안정보안보과장, 제9585부대 1대대 정보부사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06보병연대”를 “제9585부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를 “별표”로 한다.

- 6. 335방첩부대 176방첩대장
- 7. 군산해양경찰서장
- 13.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장
- 14.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15. 제9585부대 11해안감시기동대대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u></p> <p>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u>16명</u>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p> <p>1. ~ 3. (생략)</p> <p>4. <u>제106보병연대 1대대장</u></p> <p>5.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u>군산출장소장</u></p> <p>6. <u>국군기무부대 군산대장</u></p> <p>7. <u>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u></p> <p>8. ~ 12. (생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u>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u>18명</u> ----- ----- ----- ----- -----.</p> <p>②-----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9585부대</u> -----</p> <p>5. ----- <u>과장</u></p> <p>6. <u>335방첩부대 176방첩대장</u></p> <p>7. <u>군산해양경찰서장</u></p> <p>8. ~ 12. (현행과 같음)</p> <p>13. <u>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장</u></p> <p>14. <u>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u></p> <p>15. <u>제9585부대 11해안감시기동대대장</u></p>

13. (생략)

③ (생략)

④협의회의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2. (생략)

3. 작전담당간사 : 군산경찰서 경비과장, 제106보병연대 1대대 작전과장

4. 정보담당간사 : 군산경찰서 정보과장, 제106보병연대 1대대 정보과장

5. 예비군담당간사 : 제106보병연대 1대대 동원과장

⑤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⑥·⑦ (생략)

16. (현행 제13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2. (현행과 같음)

3. ----- 경비  
교통과장, 제9585부대 1대대  
정작과장

4. ----- 치안  
정보안보과장, 제9585부대 1대  
대 정보부사관

5. ----- 제9585부대 --  
-----

⑤----- 별표-----  
-.

⑥·⑦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24-1026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폐기물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2017년도에 규정한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여 시민들의 원활한 폐기물 배출 도모
- 환경관리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사항’에 대한 내용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체결 사항에 포함하여 환경관리원 복지 확립
- 기타 일부 문구 수정

2.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세분화 [별표1]
  - (기존) 88개 ⇒ (세분화) 206개
  - \* 상기 외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 대행계약체결 사항 추가 (제14조 3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체결 사항에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사항’ 추가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6층 자원순환과(조촌동, 군산시청)
- 전화: ☎063-454-3452, FAX) 063-454-6029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계(☎063-454-34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설치·관리 운영사항

제14조제7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lt;개정 2024.6.00.&gt;

###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9조제1항 관련)

품 명	규 격	가 격 (원)
가 습 기	모 든 규 격	무 상
개 인 용 컴 퓨 터	모 든 규 격	무 상
공 기 청 정 기	모 든 규 격	무 상
냉 장 고	모 든 규 격	무 상
믹 서	모 든 규 격	무 상
복 사 기	모 든 규 격	무 상
비 디 오 플 레 이 어	모 든 규 격	무 상
선 풍 기	모 든 규 격	무 상
세 탁 기	모 든 규 격	무 상
식 기 건 조 기	모 든 규 격	무 상
에 어 컨 디 셔 너	모 든 규 격	무 상
연 수 기	모 든 규 격	무 상
오 디 오	모 든 규 격	무 상
음 식 물 처 리 기	모 든 규 격	무 상
이 동 전 화 단 말 기	모 든 규 격	무 상
자 동 판 매 기	모 든 규 격	무 상
전 기 다 리 미	모 든 규 격	무 상
가 스 · 전 기 레 인 지	모 든 규 격	무 상
전 기 밥 솥	모 든 규 격	무 상
전 기 비 데	모 든 규 격	무 상
가 스 · 전 기 오븐	모 든 규 격	무 상
전 기 정 수 기	모 든 규 격	무 상
전 기 히 터 ( 팬 히 터 )	모 든 규 격	무 상
청 소 기	모 든 규 격	무 상
탈 수 기	모 든 규 격	무 상
텔 레 비 전	모 든 규 격	무 상
팩 시 밀 리	모 든 규 격	무 상
프 린 터	모 든 규 격	무 상
기 타 가 전 제 품	모 든 규 격	무 상

품 명	규 격	가 격 (원)
금 고	대형 (70kg 이상)	18,000
	소형 (70kg 미만)	12,500
난 로	대형 (15kg 이상)	5,500
	소형 (15kg 미만)	3,500
마 네 킹	개 당	3,500
매 트 리 스 (스프링 포함)	1 인 용	5,500
	2 인 용 이 상	10,000
문 갑	모 든 규 격	2,500
벽 시 계	대형 (1m 이상)	3,500
	소형 (1m 미만)	2,500
	스 텐 드 형	4,500
변 기	개 당	3,500
보 일 러 통	대 형	10,000
	중 형	5,500
	소 형	2,500
보 행 기	개 당	2,500
서 략 장	5 단 이 상	4,500
	4 단 이 하	2,500
세 먼 기	개 당	3,500
쇼 파	대형 (5 ~ 6 인 용)	10,000
	중형 (3 ~ 4 인 용)	5,500
	소형 (2 인 용)	4,500
	1 인 용 (개 당)	2,500
수 족 관	대형 (길이 2m 이상)	12,500
	소형 (길이 2m 미만)	4,500
일 반 식 탁	6 인 용 이 상	5,500
	6 인 용 미 만	4,500
신 발 장	모 든 규 격	2,500
싱 크 대	대형 (가로 90cm 이상)	4,500
	소형 (가로 90cm 미만)	2,500
오 락 기 기	대형 (2인용 이상)	6,500
	소형 (1인용)	3,500
온 풍 기	대 형 (30kg 이상)	12,500
	소 형 (30kg 미만)	10,000
욕 조	개 당	4,500

품 명	규 격	가 격 (원)
유 모 차	개 당	2,500
의 류 ( 이 불 등 )	마 대 당	2,500
의 자	대 형 ( 4 인 용 이 상 )	3,500
	중 형 ( 2 ~ 3 인 용 )	2,500
	소 형 ( 1 인 용 )	1,500
장 롱	폭 1 m 이 상	18,000
	폭 1 m 미 만	12,500
전기장판(전기판넬)	1 인 용	2,500
	2 인 용 이 상	3,500
재 봉 틀	개 당	2,500
책 장 , 진 열 장	대 형 (4단 이상)	5,500
	소 형 (3단 이하)	3,500
책 상	양 수 , 대 형	5,500
	편 수 , 소 형	4,500
침 대	2 인 용 이 상	18,000
	1 인 용	12,500
카 페 트	1 묶음 ( 20 kg ) 초 과	4,500
	1 묶음 ( 20 kg ) 이 하	3,500
캐 비 닷	대 형 (1.5m 초과)	6,500
	소 형 (1.5m 이하)	4,500
칸 막 이 판 넬	개 당	2,500
피 아 노	업 라 이 트	12,500
	그 랜 드	18,000
화 장 대	모 든 규 격	3,500
폐 소 화 기	2 k g 미 만	2,000
	2 0 k g 이 하	3,500
	2 0 k g 초 과	5,000
가 스 렌 지	개 당	1,500
가 스 오븐	개 당	10,000
가 정 용 냉 장 고	문 짝 1 , 2 개	18,000
간 판	1 m 당	10,000
강 대 상	폭 1 m 이 상	10,000
	폭 1 m 이 하	5,000
강 화 유 리 문	2 m * 1 m	10,000

품 명	규 격	가 격 (원)
개 집	대 (25kg 이상)	5,000
	소 (25kg 이하)	2,500
거울	가로 폭 1m 당	2,500
골프 가방	개 당	2,500
다리미판	모 든 규 격	1,000
대리석 식탁	6인용 미만	6,000
	6인용 이상	7,000
대리석 상판	1m 당	2,500
돌침대	1인 세트	18,000
	2인 세트	25,000
돌침대돌판	1인용	10,000
	2인용	15,000
돌침대틀	1인용	5,500
	2인용	10,000
라꾸라꾸침대	개 당	5,500
라텍스 매트	1인용	3,500
	2인용	5,500
런닝머신	무게 50kg 이하	12,000
	무게 50kg 초과	18,000
목기세트	세 트	3,500
무선자동차	개 당	3,500
문짚 / 문틀	개 당	2,500
물탱크	1톤	8,000
미장원머리건조기	개 당	3,500
밥상	4인용 이하	2,500
	4인용 이상	3,500
방충망	개 당	2,500
변기뚜껑	개 당	1,000
병풍	모 든 규 격	3,500
복합기	개 당	10,000
블라인더	개 당	1,000
빨래 건조대	철 재	2,500
삼푸다이(의자포함)	개 당	5,500
세탁기	통 돌이	10,000
	드럼	15,000
소형자판기	개 당	3,500

품 명	규 격	가 격 (원)
쇼파(리클라이너)	3 인 용	10,000
	2 인 용	8,000
	1 인 용	4,000
수 건 장	일 반 형	2,000
	슬 라 이 드 형	5,000
스 키 보 드	세 트	3,000
스 피 커	5 0 c m 이 하	2,000
	5 0 c m 초 과	4,000
싱 크 대 후 드	개 당	2,500
짜 인 불	개 당	2,000
쌀 통	전 규 격	2,500
쓰 레 기 통	5 0 리 터 이 하	2,000
	5 0 리 터 초 과	3,000
아 이 스 박 스	5 0 리 터 이 하	2,500
	5 0 리 터 초 과	3,500
안 마 의 자	무 게 5 0 kg 이 하	12,000
	무 게 5 0 kg 초 과	18,000
어 상 자	개 당	1,000
어 향	5 0 c m 미 만	2,500
	5 0 c m 초 과	4,500
영 업 용 냉 장 고	문 짝 1 , 2 개	18,000
	문 짝 3 , 4 개	25,000
옷 걸 이	모 든 규 격 / 개 당	2,500
	3 0 개 당	1,000
욕 실 천 장 돛	개 당	2,500
유 아 용 그 네	모 든 규 격	3,000
유 아 용 침 대	개 당	5,500
유 아 카 시 트	개 당	2,500
음 식 물 쓰 레 기 통	1 2 0 리 터	3,500
입 간 판 ( 에 어 )	개 당	4,500
자 동 차 2 열 시 트	개 당	5,500
자 전 거	어 린 이 용	2,500
	성 인 용	4,500
자 전 거 (운 동 기 구)	개 당	5,500
전 자 레 인 지 다이	1 m 미 만	2,500
	1 m 이 상	4,000



품 명	규 격	가 격 (원)
전 자 울 겐	거 치 대 포 함	5,500
	거 치 대 미 포 함	3,500
전 지 나 무	1 묶 음	2,500
창 문 ( 유 리 포 함 )	1 m 미 만	2,500
	1 m 이 상	5,000
책 상 유 리 ( 식 탁 포 함 )	1 m 미 만	1,000
	1 m 이 상	2,500
체 중 계	대 ( 업 소 용 )	3,000
	소 ( 가 정 용 )	1,000
철 판	1 미 터 당	2,500
침 대 머 리	1 인 용	2,500
	2 인 용	3,500
캐 리 어 가 방	소 ( 24인치 이하 )	1,500
	대 ( 24인치 초과 )	2,500
캠 핑 텐 트	개 당	3,500
캐 타 위	3 단 이 하	2,500
	3 단 초 과	5,000
킵 보 드	개 당	1,500
탁 구 대	1 세 트	10,000
파 라 솔	우 산	2,500
	세 트 ( 의 자 제 외 )	5,000
파 렛 트	플 라 스 틱	4,000
	나 무	3,000
파 티 션	대 ( 폭 1,000mm 이상 )	3,500
	소 ( 폭 1,000mm 미만 )	2,500
평 상	3 m * 1 m	10,000
화 환	3 단	3,500
화 분	개 당	2,500
회 의 용 탁 자	8 인 용 이 상	8,000
휠 체 어	개 당	3,500
2 층 침 대	어 린 이 용	18,000
	성 인 용	25,000
T V 다 이	모 든 규 격	2,500
액 자	높 이 1 m 이 상	3,000
	높 이 1 m 미 만	2,000
	높 이 50cm 미 만	1,000

\* 상기의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u>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군산시 폐기물매립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② (생 략)                      ③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계약체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u>&lt;신 설&gt;</u>                      5.·6. (생 략)                      ④ ~ ⑥ (생 략)                      ⑦<u>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u></p>	<p>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환경관리원 휴게시설 설치·관리 운영사항</u>                      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u>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u></p>

안전기준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초래, 작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시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은 작업환경, 작업지역의 여건, 작업의 효율성,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생략)

제34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 무료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보호1종)
2. (생략)
- ② (생략)

안전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⑧ (현행과 같음)

제34조(수수료의 감면) 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고시 제2024-45호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18.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9건, 변경 0건, 폐지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4. 4. 1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고시내역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흥동 1039-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역전로 29 (내흥동)	20240415		20191104	군산역의 상징성을 위 해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22-3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69	20240412		20090508	섬이름 이용	
건물번호폐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원부곡길 3		20240412	건물철거	20100125	부곡리 원부곡 마을 소재	
건물번호폐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5길 123 (영화동)		20240408	건물철거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 명 부여	딩동댕 노래주점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영화동 12-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5길 123 (영화동)	20240408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 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흥동 1041-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돌끝로 73 (내흥동)	20240412		20191104	예전에 내흥동에 있던 돌끝마을의 명칭으로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2길 55-1	20240405		20150210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 용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635, 636-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서면 공항로 757	20240411		20100125	군산공항으로 관통하 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 산단3로 155 (오식도동)	20240409		20160325	새만금산업단지의 약 어를 서수식으로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21-1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09	20240409		20090710	성산면 성덕리에 금강 철새조망대가 위치, 지형명칭 반영	
건물번호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09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 산단3로 253 (오식도동)	20240405		20160325	새만금산업단지의 약 어를 서수식으로 부여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6. 11.>

### 소하천의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4 - 49호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변경·폐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군 산 시 장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m)		지정(변경·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당초	변경	
만경강	운방천	서수면 마룡리 1064-11	서수면 마룡리 1066-3	607	607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금강	둔기천	나포면 옥곤리 386-1	나포면 옥곤리 1008	1,000	1,712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시점변경 (신기천 통합)
금강	고상천	나포면 장상리 산 394	나포면 장상리 884-1	753	-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폐지
금강	수철천	나포면 나포리 31-1	나포면 나포리 832	932	932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금강	옥동천	나포면 나포리 451-1	나포면 나포리 756-1	535	-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폐지
금강	원장상천	나포면 장상리 628-4	나포면 장상리 883-5	516	-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폐지

열람서류: 소하천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 5만분의 1 지형도)  
비고: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 난에는 지번이나 연결되는 (소)하천명을 적는다.

210mm×297mm [백상지 80g/m<sup>2</sup> (재활용품)]

<계속>

수계(水系) 명	소하천 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m)		지정(변경·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당초	변경	
만경강	불곡천	임피면 읍내리 121-2	임피면 읍내리 219-3	832	-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폐지
만경강	구곡천	서수면 서수리 1355-3	서수면 서수리 2120	914	-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폐지
만경강	공창천	임피면 보석리 116	임피면 보석리 167-1	507	-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폐지
만경강	홍범1천	서수면 축동리 산 40-1	서수면 축동리 656-1	603	863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시점변경
만경강	홍범2천	서수면 축동리 203-1	서수면 축동리 145-1	305	-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폐지
금강	내외곤천	나포면 옥곤리 산73	나포면 옥곤리 547-4	1,103	1,003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시점변경
금강	등동천	나포면 옥곤리 382	나포면 옥곤리 287	586	-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폐지
금강	신기천	나포면 옥곤리 386-1	나포면 옥곤리 399	592	-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폐지 (둔기천으로 통합)
금강	부곡천	나포면 부곡리 3-1	나포면 부곡리 39	742	-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폐지
금강	항동천	성산면 성덕리 산42-3	성산면 성덕리 63	622	622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만경강	산곡천	성산면 산곡리 616-3	성산면 창오리 192-4	1,798	-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폐지
금강	혜곡천	나포면 나포리 산42	나포면 나포리 823	591	591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만경강	당골천	서수면 축동리 715-8	서수면 축동리 547-2	1,002	1,002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서해	훈옥천	성산면 도암리 627-2	성산면 둔덕리 429-1	1,597	1,597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서해	상흥천	성산면 둔덕리 283-4	성산면 둔덕리 19-7	1,937	1,937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열람서류: 소하천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 5만분의 1 지형도)

비고: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 난에는 지번이나 연결되는 (소)하천명을 적는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수계(水系) 명	소하천 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m)		지정(변경·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당초	변경	
금강	군둔천	나포면 장상리 267-1	나포면 장상리 895-6	1,246	1,246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금강	외곤천	나포면 옥곶리 691	나포면 옥곶리 941-22	680	-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폐지
금강	신방천	나포면 나포리 산222	나포면 나포리 776	1,130	1,130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만경강	우유천	서수면 관원리 266-17	서수면 마룡리 41-179	1,766	1,766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만경강	수시천	서수면 축동리 662	서수면 마룡리 1052-9	3,034	3,034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만경강	복우천	서수면 축동리 385-1	서수면 마룡리 1836-12	2,979	-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폐지 (내무장천으로 통합)
만경강	외무장천	서수면 축동리 626	서수면 마룡리 846-5	2,386	2,420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시점변경
만경강	남산천	임피면 보석리 100	임피면 보석리 387-1	564	-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폐지
서해	구암천	조촌동 671-32	구암동 357-1	1,258	1,258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서해	마동천	성산면 도암리 355-8	성산면 도암리 441-8	1,165	1,165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금강	외촌천	나포면 장상리 148-2	나포리 733-1	960	3,980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종점변경
만경강	내무장천	서수면 축동리 709	서수면 마룡리 1836-12	1,033	4,212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시점변경 (복우천 통합)
만경강	서원천	임피면 미원리 44-6	임피면 읍내리 739-11	892	892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열람서류: 소하천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 5만분의 1 지형도)

비고: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 난에는 지번이나 연결되는 (소)하천명을 적는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군산시 고시 제2024 - 52호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지정고시(변경) 및 관리기본계획 수립 고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지정 및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수산물 수출촉진·가공산업·시장개척·투자유치 육성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관리기관에 위임), 제33조 제6항(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를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군 산 시 장



□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 지정사항

1. 새만금 수산식품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약칭,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 위 치 : 군산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2공구 산46-1~8(가지번)
- 면 적 : 133,366㎡

2. 새만금 수산식품단지의 지정목적

- 단지 내 스마트 기반시설 구축으로 효율적인 산단 입주관리
- 융·복합 산업 연계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 수산 식품산업 및 수산업 발전과 육성 지원을 위한 수산식품 단지 조성

### 3.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관리기관(변경)

- 관리업무 위탁 산업단지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
- 관리기관 : 군산시
- 위탁내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업무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고시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4-8호, 2024. 3. 21., 제정.]

### 4.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조성계획

- 유치업종 : 수산식품분야 10(식료품제조업) 및 1·2·3차산업융복합(식료품제조업)

(단위 : m<sup>2</sup>)

구분(업종별)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개소(개)	운영주체
		분양(개)	임대(개)	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8,465,287	-	-	18,465,287	-	-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합계	133,366	7	9	133,366	16	-
공공 군산시 공장시설	33,058	1	-	33,058	1	군산시
민간 공장시설(분양)	49,331	6	-	49,331	6	민간업체
민간 공장시설(임대)	50,977	-	9	50,977	9	민간업체

※ 민간업체 분양임대 면적 및 입주업체수는 입주신청사항 및 군산시 입주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조정)가능

###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133,366		133,366	100.0	
산업시설용지	133,366		133,366	100.0	
- 단지조성	133,366		133,366	100.0	

####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 ■ 교통시설계획

- 단지내 내부도로(사도개설 예정)

사도개설	설치목적	길이 너비	착공 예정	준공 예정	공사 예산	운영 주체
공공 군산시 공장시설 내 내부도로	수산식품단지 입주업체 공용도로	폭 15m 길이 608m	'24. 하반기	'25. 하반기	약 30억원	군산시 (수산식품정책과)

■ 기반시설계획

○ 기반시설

구분		주요 기반 시설	근거
교통 시설	도로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4차로) / 새만금 동서남북로 ○ 도로 308개, 폭원 11~40m, 2~8차로, 연장 127km	새만금 국가산업 단지 기반시설 현황
	철도	○ 군장국가산단 인입 철도(운용, 단선) / 새만금항 인입철도(계획 중)	
	항만	○ 군산항(운용 중, 부두 31선석, 하역능력 27,970천톤/연) ○ 새만금 신항만(건설 중, 부두 9선석, 하역능력 15,781천톤/연)	
	공항	○ 군산공항(운용 중) / 새만금 신공항(기본계획 중)	
공급 시설	용수	○ 공업용수 연간 수요량 401천톤/yr ○ 금강 광역상수도(공업)	
	전력	○ 전력사용량 예측 5,185.1MW/yr	
	가스	○ LNG 100,000m <sup>3</sup> /hr 공급(군산2국가산단)	
환경 기초	오폐수 처리	○ 군산2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통합 운영(43천톤/일, 산단 내 오·폐수 통합이송펌프장 운영)	
	폐기물 처리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157,598m <sup>3</sup> )	
해수 시설	해수 공급	○ 해수 취수 및 공급시설 3만톤/일	
	해수 처리	○ 해수 세척수 공동배출시설 2만7천톤/일	수산식품단지, 공공 공장시설 부대시설 예정

6. 관련지정계획 열람방법

가. 관련 지정계획은 군산시 수산식품정책과(☎ 063-454-3032,30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 관리기본계획

##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관리기본계획

군산시(수산식품정책과), 063-454-3032, 3034

### I. 산업단지의 개요

- 1. 관리기관 : 군산시(수산식품정책과)
- 2. 위치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공구 (새만금수산식품수출가공단지, 약칭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 3. 조성목적

- 가.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촉진
- 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 다. 수산식품산업 특화하여 스마트기반 수출가공 수산식품단지 조성

### 4. 추진경위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08. 5. 6.
- 사업시행자 지정(한국농어촌공사) '08. 9. 24.
- 1공구(1.9km<sup>2</sup>, 582만m<sup>2</sup>) 매립공사 '09. 3. ~ '12. 3.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10. 7. 19.
- 2공구(2.55km<sup>2</sup>, 1,169만m<sup>2</sup>) 매립공사 '11. 12. ~ '14. 12.
-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1. 1. ~ 5.
- 관리기본계획 고시 '11. 4. 8.
- 개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13. 4. 26.
-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13. 6. 28.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13. 8. 16.
- 개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14. 3. 25.
-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14. 7. 4.
- 개발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 '14. 11. 25.
- 개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 '15. 9. 30.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15. 11. 6.
-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 '16. 1. 4.
-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 '17. 5. 12.
- 개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 '17. 7. 3.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18. 9. 28.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 고시 '18. 12. 31.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19. 7. 9.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9차) 승인 고시 '19. 9. 30.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10차) 승인 고시 '20. 2. 25.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11차) 승인 고시 '20. 8. 12.
- 실시계획 변경(12차) 고시 '20. 9. 9.
- 개발계획(12차) 및 실시계획(13차) 변경 고시 '20. 12. 23.
- 실시계획 변경(14차) 승인 고시 '21. 3. 23.
- 실시계획 변경(15차) 승인 고시 '21. 12. 31.
- 개발계획 변경(13차) 승인 고시 '22. 3. 18.
- 실시계획 변경(16차) 승인 고시 '22. 5. 2.
- 개발계획 변경(14차) 및 실시계획(17차) 변경 고시 '22. 8. 24.
- 개발계획 변경(15차) 및 실시계획(18차) 변경 고시 '22. 9. 30.
- 개발계획 변경(16차) 및 실시계획(19차) 변경 고시 '23. 3. 20.
- 개발계획 변경(17차) 및 실시계획(20차) 변경 고시 '23. 6. 30.
- 개발계획 변경(18차) 및 실시계획(21차) 변경 고시 '23. 10. 27.
- 개발계획 변경(19차) 및 실시계획(22차) 변경 고시 '24. 2. 28.

### 5. 분양 및 임대 현황

(단위 : m<sup>2</sup>)

구분(업종별)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개소(개)	운영 주체
		분양(개)	임대(개)	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8,465,287	-	-	18,465,287	-	-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합계	133,336	7	9	133,336	16	-
공공 군산시 공장시설	33,058	1	-	33,058	1	군산시
민간 공장시설(분양)	49,331	6	-	49,331	6	민간업체
민간 공장시설(임대)	50,977	-	9	50,977	9	민간업체

※ 민간업체 분양임대 면적 및 입주업체수는 입주신청사항 및 군산시 입주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조정)가능

6. 입주상황

(단위 : m<sup>2</sup>)

구분	입주 업체수(개사)			면적(m <sup>2</sup> )		
	분양(민간)	분양(공공)	임대	분양(민간)	분양(공공)	임대
계획	6	1	9	49,331	33,058	50,977
현재	-	1	-	-	33,058	-

7.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구분	주요 기반 시설	근거
교통 시설	도로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4차로) / 새만금 동서남북로 ○ 도로 308개, 폭원 11~40m, 2~8차로, 연장 127km	새만금 국가산업 단지 기반시설 현황
	철도 ○ 군장국가산단 인입 철도(운용, 단선) / 새만금항 인입철도(계획 중)	
	항만 ○ 군산항(운용 중, 부두 31선석, 하역능력 27,970천톤/연) ○ 새만금 신항만(건설 중, 부두 9선석, 하역능력 15,781천톤/연)	
	공항 ○ 군산공항(운용 중) / 새만금 신공항(기본계획 중)	
공급 시설	용수 ○ 공업용수 연간 수요량 401천톤/yr ○ 금강 광역상수도(공업)	새만금 국가산업 단지 기반시설 현황
	전력 ○ 전력사용량 예측 5,185.1MW/yr	
	가스 ○ LNG 100,000m <sup>3</sup> /hr 공급(군산2국가산단)	
환경 기초	오폐수 처리 ○ 군산2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통합 운영(43천톤/일, 산단 내 오·폐 수 통합이송펌프장 운영)	새만금 국가산업 단지 기반시설 현황
	폐기물 처리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157,598m <sup>2</sup> )	
해수 시설	해수 공급 ○ 해수 취수 및 공급시설 3만톤/일	수산식품단지, 공공 공장시설 부대시설 예정
	해수 처리 ○ 해수 세척수 공동배출시설 2만7천톤/일	수산식품단지, 공공 공장시설 부대시설 예정

**II. 산업단지 관리기본방향 및 주요 투자유치 업종**

1. 관리기본 방향

- 단지 내 스마트 기반시설 구축으로 효율적인 산단 입주관리
- 희망기업의 수요에 맞춘 탄력적 업종배치로 입주 적기 지원
- 융·복합 산업 연계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공간 조성
- 수산 식품산업 및 수산업 발전과 육성 지원을 위한 수산식품 단지 조성

2. 산업용지 투자유치 업종

가. 산업육성 업종

- 1) 수산식품분야 고부가가치식품산업, 1·2·3차 산업 융복합(식품제조업)

나. 산업단지 입주우선 순위

- 1) 분양공고를 통한 군산시 입주심사위원회 입주심사 우선순위 업체
- 2) 분양광고 전 투자유치협약(MOU체결 등)을 체결한 업체
- 3)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III.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등**

1.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 가. 업종별 구역면적 : 산업시설용지 133,366㎡
- 나. 수산식품단지 구역 평면도 : 별첨 1

2. 산업시설구역

- 가. 용도별 면적구분 : 공장시설용도 133,366㎡

나.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수산식품분야 고부가가치식품산업(102), 1·2·3차 산업 융복합(식품제조업)
- \* 1·2·3차 산업 융복합 업종의 경우 제조, 가공부분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입주 가능

다. 입주제한

- 1)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 아스콘 제품 제조업
- 2) 지정악취물·특정대기유해물질·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 공해다발배출, 용수과다 사용업체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업종)
- \*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하여 입주 제한
- 3) 용수 과소비 및 공해 유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입주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입주자격

- 1)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본계획 III. 2. 1)의 업종을 영위 하려는 자
- 2)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 관리 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마. 입주심사

- 1)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입주희망 기업에 대한 입주자격 등의 적정성은 ‘군산시 입주심사 위원회’에서 심의의 결
- 2) ‘군산시 입주심사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함

바.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 1)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공장의 부대시설

바. 업종별 배치기준

1)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조성을 통해 투자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치업종별 배치면적, 계획은 군산시 세부계획에 따른다.

\* 업종별 면적은 향후 기업유치 결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장기임대산업용지

가. 사업추진 목적

- 새만금지역 투자여건 향상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임대용지 제공

나. 위 치 : 새만금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 내 임대용지

다. 운영계획 : 50,977m<sup>2</sup>

라. 사용허가 기간(임대) : 50년 범위(50년 범위까지 연장 가능)

마. 연간 사용료(새만금사업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41조, 국유재산법령)

1) 외투기업 : 재산가액의 1/100

2) 국내기업 :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름

3) 사용료 등 산출방법 : 새만금사업법 및 국·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따름

바.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관리기본계획에 입주대상에 해당되고 새만금사업법 제46조에 해당하는 기업

사. 입주기업 선정 및 사용허가 방법

-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운영지침'에 따름

4. 입주계약 절차

가. 산업집적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입주 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

나. 관련 법규 인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입주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다. 단, 입주기업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IV.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일반사항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조례 및 관리규약 준수해야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3. 안전관리

- 가. 입주기업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 관리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 하도록 안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새만금 수산식품수출가공단지 평면도



※ 민간업체 분양·임대 면적 및 입주업체수는 입주신청사항 및 군산시 입주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조정)가능

군산시 고시 제2024-53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호선 외 1개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지곡동 391-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호선 외 1개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391-3번지 외 24필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 칭 : 지곡동 공동주택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호선 외 1개노선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중로 2-16호선 : B=3m, L=94m, A=239㎡(완화차로 개설)
  - 나. 중로 2-63호선 : B=3m, L=133m, A=383㎡(완화차로 개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주)은성종합개발 대표 유병성
  - 나. 주 소 : 전북 익산시 동서로63길 4, 606호(어양동, 하모니시티)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6. 10.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가. 종로 2-16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지곡동	391	3	전	13	13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2	지곡동	산135	9	임	2	2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3	지곡동	산135	11	임	20	20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4	지곡동	산135	13	임	19	19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5	지곡동	산135	15	임	19	19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6	지곡동	산135	17	임	22	22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7	지곡동	산135	19	임	18	18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8	지곡동	산139	3	임	25	25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9	지곡동	산140	36	임	101	101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계	9필지				239	239						

나. 종로 2-63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지곡동	393	3	대	11	11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2	지곡동	396	2	대	59	59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3	지곡동	396	15	도	6	6	군산시					
4	지곡동	396	4	전	47	47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5	지곡동	396	18	도	2	2	국(국토교통부)					
6	지곡동	396	20	도	14	14	군산시					
7	지곡동	396	21	도	3	3	두말녀	군산시 지곡동 395				
8	지곡동	414	6	전	64	64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9	지곡동	416	6	유	68	68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10	지곡동	416	8	도	1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지곡동	417	5	전	33	33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12	지곡동	417	6	도	3	3	군산시					
13	지곡동	418	1	전	22	22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14	지곡동	418	13	전	1	1	군산시					
15	지곡동	산115	7	임	27	27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16	지곡동	산117	4	임	22	22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계	16필지				383	383						

군산시 고시 제2024-55호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결정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 I.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변 경	48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조촌동 2번지 일대	597,581.7	감) 58	597,523.7	군산고141 (14.12.26)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적(m <sup>2</sup> )	결정사유
변경	48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597,52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주택용지(A5)의 지적통합 등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을 위한 변경</li> </ul>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97,581.7	감) 58	597,523.7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536.0	-	5,536.0	0.9	-
	제3종일반주거지역	348,403.0	증) 3,689	352,092.0	58.9	-
	준주거지역	84,857.0	감) 3,747	81,110.0	13.6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05,577.7	-	105,577.7	17.7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3,208.0	-	53,208.0	8.9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m <sup>2</sup>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조촌동 2-33번지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3,747	200%	학교용지 확장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조촌동 3979번지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감) 58	200%	공동주택용지(A5)의 지적통합 등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을 위한 변경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없음

■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5	22,299 (7,062)	638,144.1 (131,888.1)	3	6,982 (832)	237,777.8 (19,683.9)	9	9,852 (2,786)	270,261.0 (44,328.2)	13	5,465 (3,444)	130,105.3 (67,876.0)
대로	5	18,542 (3,305)	574,678.0 (71,642.2)	1	6,314 (164)	221,728.0 (3,634.1)	1	7,790 (724)	234,114.0 (11,401.4)	3	4,438 (2,417)	118,836.0 (56,606.7)
중로	12	3,608 (3,558)	62,219.8 (58,999.6)	2	668 (668)	16,049.8 (16,049.8)	8	2,062 (2,062)	36,147.0 (33,926.8)	2	828 (828)	10,023.0 (10,023.0)
소로	8	199 (199)	1,246.3 (1,246.3)	-	-	-	-	-	-	8	199 (199)	1,246.3 (1,246.3)

※ ( )안의 면적은 대상지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1	4	35~41	주간선 도로	6,314 (164)	조촌동 대1-1	광2-2유원지구역계	일반 도로	-	건고228 ('86.5.23)	-
기정	대로	2	4	30~33	보조간선도로	7,790 (724)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광장	군산고141 ('14.12.26)	-
기정	대로	3	6	25~31	보조간선도로	2,915 (894)	경장동 대1-3	구암동 대2-4	일반 도로	6토지구획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2	65	17~23	집산 도로	580 (580)	구암동 대2-4	조촌동 대3-6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대로	3	47	25~31	보조간선도로	714 (714)	대로3-6	대로2-4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대로	3	48	25~31	보조간선도로	809 (809)	중로2-65	대로1-4 (조촌로)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1	119	23	집산 도로	142 (142)	대로3-6	중로2-143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1	120	21~27	집산 도로	526 (526)	중로2-143	대로2-4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계 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2	142	15	집산 도로	290 (290)	중로1-120	대로3-47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2	143	15~21.5	집산 도로	846 (846)	중로2-65	대로1-4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2	144	15	집산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2	145	15	집산 도로	79 (79)	중로1-119	중로3-76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2	146	15	집산 도로	25 (25)	중로3-76	대로3-47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2	147	15	집산 도로	92 (92)	대로3-47	중로2-148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2	148	18.5	집산 도로	128 (128)	대로3-6	중로2-143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3	75	12	국지 도로	231 (231)	중로2-142	중로2-142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3	76	12	국지 도로	597 (597)	중로2-145	중로2-145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소로	3	773	7	국지 도로	40 (40)	주차장90	중로2-147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소로	3	774	6	특수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소로	3	775	6	특수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소로	3	776	6	특수 도로	29 (29)	공공공지33	중로3-76	보행자 전용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소로	3	777	6	특수 도로	29 (29)	중로3-76	공공공지33	보행자 전용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소로	3	778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소로	3	779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소로	3	780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도로	-	군산고141 (‘14.12.26)	-

※ ( )안의 면적은 대상지내 연장임

## (2) 주차장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7	주차장	조촌동 2-33번지	701.0	-	701.0	군산고141 (‘14.12.26)	-
기정	88	주차장	조촌동 2-42번지	2,174.0	-	2,174.0	군산고141 (‘14.12.26)	-
기정	89	주차장	조촌동 3966번지	2,012.3	-	2,012.3	군산고141 (‘14.12.26)	-
기정	90	주차장	조촌동 2-82번지 일원	1,763.0	-	1,763.0	군산고141 (‘14.12.26)	-

## 나. 공간시설

## (1) 광장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2	광장	근린광장	조촌동 3954번지 일원	2,238.7	-	2,238.7	군산고141 (‘14.12.26)	-

## (2) 공공공지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3	공공공지	-	조촌동 3965번지	3,033.4	-	3,033.4	군산고141 (‘14.12.26)	-



## (3) 녹지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8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대2-4번)	3,846.7	-	3,846.7	군산고141 (‘14.12.26)	-
기정	109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대2-4번)	2,595.0	-	2,595.0	군산고141 (‘14.12.26)	-
기정	110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중2-65번)	3,971.0	-	3,971.0	군산고141 (‘14.12.26)	-
기정	111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중2-65번)	1,878.0	-	1,878.0	군산고141 (‘14.12.26)	-
기정	112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대3-6번)	4,038.0	-	4,038.0	군산고141 (‘14.12.26)	도로 중복결정 (142㎡)
기정	113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대1-4번)	1,472.7	-	1,472.7	군산고141 (‘14.12.26)	-
기정	114	녹지	완충녹지	구암천변	3,223.5	-	3,223.5	군산고141 (‘14.12.26)	-
기정	115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 450-15대	2,393.3	-	2,393.3	군산고141 (‘14.12.26)	-
기정	116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중2-143번)	773.0	-	773.0	군산고141 (‘14.12.26)	-
기정	117	녹지	연결녹지	조촌동(대3-47번)	4,516.3	-	4,516.3	군산고141 (‘14.12.26)	-

## (4) 공원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4	공원	근린공원	조촌동 2-99번지 일원	27,530.0	-	27,530.0	군산고141 (‘14.12.26)	-
기정	91	공원	어린이공원	조촌동 3961번지	3,263.6	-	3,263.6	군산고141 (‘14.12.26)	-
기정	92	공원	어린이공원	조촌동 3962번지	2,410.4	-	2,410.4	군산고141 (‘14.12.26)	-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1) 학교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6	학교	초등학교	조촌동 2-33번지	16,774	-	16,774	군산고141 (‘14.12.26)	-
폐지	77	학교	초등학교	조촌동 2-33번지	13,586	감) 13,586	-	군산고141 (‘14.12.26)	-
신설	43	학교	중학교	조촌동 2-33번지	-	증) 15,954	15,954	-	-
기정	42	학교	중학교	조촌동 2-33번지	12,009	-	12,009	군산고141 (‘14.12.26)	-
기정	7	학교	유치원	조촌동 2-73번지	3,523	-	3,523	군산고141 (‘14.12.26)	-
기정	8	학교	유치원	조촌동 2-33번지	3,533	-	3,533	군산고141 (‘14.12.26)	-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7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학교 폐지 - 면적 : 감) 13,58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청 협의에 따라 중학교 신설하기 위해 초등학교 폐지</li> </ul>
43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학교 신설 - 면적 : 증) 15,95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청 협의에 따라 폐지된 초등학교부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C2)를 중학교로 신설</li> </ul>

(이하여백)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공동주택용지: 변경

- 금회 변경사항은 도시관리계획선 변경없이 공동주택용지(A5) 지적합병에 따른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A1	-	36,954.0	-	36,954.0	조촌동 3963번지 일원	36,954.0	-	36,954.0	기정
A2	-	60,557.3	-	60,557.3	조촌동 3943번지	60,557.3	-	60,557.3	기정
A3	-	21,062.4	-	21,062.4	조촌동 3967번지	21,062.4	-	21,062.4	기정
A4	-	43,263.0	-	43,263.0	조촌동 3976번지	43,263.0	-	43,263.0	기정
A5	-	36,851.0	감)58	36,793.0	조촌동 3979번지 일원	36,851.0	감) 58	36,793.0	변경
A6	-	56,507.0		56,507.0	조촌동 2번지 일원	56,507.0	-	56,507.0	기정

나. 상업용지 : 변경없음

- 획지간 합병은 인접 획지간 남북 또는 동서측으로 1회에 한하여 합병가능
- 획지분할은 획지분할가능선으로 지정된 대지에 한하여 획지분할이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을 다르게 분할하고자 할 경우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획지면적의 30%범위 이내에서 변경이 가능함
- 획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획지분할가능선간 합병은 가능함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B1	-	19,648	조촌동 450-21번지 일원	19,648	-	19,648	2개 획지 분할 가능
B2	-	2,513	조촌동 2-21번지 일원	2,513	-	2,513	4개 획지 분할 가능
B3	-	2,693	조촌동 2-22번지 일원	2,693	-	2,693	4개 획지 분할 가능
B4	-	1,694	조촌동 2-18번지	1,694	-	1,694	4개 획지 분할 가능
B5	-	1,694	조촌동 2-17번지 일원	1,694	-	1,694	4개 획지 분할 가능
B6	-	756	조촌동 2-37번지	756	-	756	-
B7	-	765	조촌동 2-36번지	765	-	765	-
B8	-	548	조촌동 2-38번지	548	-	548	-
B9	-	548	조촌동 2-39번지	548	-	548	-
B10	-	548	조촌동 2-40번지	548	-	548	-
B11	-	530	조촌동 2-41번지	530	-	530	-
B12	-	690	조촌동 2-52번지	690	-	690	-
B13	-	699	조촌동 2-51번지	699	-	699	-
B14	-	699	조촌동 2-50번지	699	-	699	-
B15	-	699	조촌동 2-49번지	699	-	699	-
B16	-	699	조촌동 2-47번지	699	-	699	-
B17	-	699	조촌동 2-46번지	699	-	699	-
B18	-	699	조촌동 2-45번지	699	-	699	-

(계 속)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B19	-	690	조촌동 2-44번지	690	-	690	-
B20	-	690	조촌동 2-54번지	690	-	690	-
B21	-	699	조촌동 2-55번지	699	-	699	-
B22	-	699	조촌동 2-56번지	699	-	699	-
B23	-	699	조촌동 2-57번지	699	-	699	-
B24	-	699	조촌동 2-59번지	699	-	699	-
B25	-	699	조촌동 2-60번지	699	-	699	-
B26	-	699	조촌동 2-61번지	699	-	699	-
B27	-	690	조촌동 2-62번지	690	-	690	-
B28	-	708	조촌동 2-72번지	708	-	708	-
B29	-	726	조촌동 2-71번지	726	-	726	-
B30	-	492	조촌동 2-70번지	492	-	492	-
B31	-	493	조촌동 2-69번지 일원	493	-	493	-
B32	-	495	조촌동 2-68번지 일원	495	-	495	-
B33	-	498	조촌동 2-67번지 일원	498	-	498	-
B34	-	5,312	조촌동 2-63번지 일원	5,312	-	5,312	2개획지 분할 가능
B35	-	3,378	조촌동 41-26번지	3,378	-	3,378	-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

- 금회 변경사항은 학교용지 확장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용지(C2)를 폐지함과 기정 가구 면적 오류 정정을 위한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C1	-	1,876	증)2,697	4,573	1	조촌동 2-33번지	701	-	701	기정 가구면적 합계 오류 정정
					2	조촌동 2-33번지	617	-	617	
					3	조촌동 2-33번지	664	-	664	
					4	조촌동 2-33번지	655	-	655	
					5	조촌동 2-33번지	617	-	617	
					6	조촌동 2-33번지	664	-	664	
					7	조촌동 2-33번지	655	-	655	
C2	-	2,469	감)2,469	-	1	조촌동 2-33번지	469	감) 469	-	학교용지 (중학교) 확장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용지 폐지 후 이전 또는 변경
					2	조촌동 2-33번지	479	감) 479	-	
					3	조촌동 2-33번지	479	감) 479	-	
					4	조촌동 2-33번지	479	감) 479	-	
					5	조촌동 2-33번지	462	감) 462	-	

## 라. 기타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변경	변경후	
D	-	8,320	조촌동 450-15번지	8,320	-	8,320	-

## 마. 학교 : 변경

- 금회 변경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협의에 따른 학교 종류 및 면적 변경사항임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변경	변경후	
E1	-	16,774	-	16,774	조촌동 2-33번지	16,774	-	16,774	기정
E2	-	12,009	-	12,009	조촌동 2-33번지	12,009	-	12,009	기정
E3	-	13,586	증) 2,368	15,954	조촌동 2-33번지	13,586	증) 2,368	15,954	변경

## 바. 유치원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변경	변경후	
F1	-	3,523	조촌동 2-73번지	3,523	-	3,523	-
F2	-	3,533	조촌동 2-33번지	3,533	-	3,533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배치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A1,A2, A3,A4, A5	-	용도	허용 용도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li> </ul>
				불허 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50% 이하</li> </ul>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층 이하</li> </ul>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유도</li> <li>개방감, 단지내 경관증진을 위해 다양한 층수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 및 리듬감 유도</li> </ul>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주택의 지붕은 평지붕, 경사지붕 등을 권장하며 과도한 옥탑 건축물은 지양</li> <li>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구분하여 마감재 및 입면디자인의 변화 유도</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li> <li>기조색을 white 중심의 무채색계열과 B, PB, YR, YG 계열 중심으로 사용</li> <li>보조색은 기조색과 동색계열 중 2-3차 혼합색으로 하여 안정되고 고상한 색감 연출</li> <li>초점경관으로서 인지성이나 시각적 충격을 연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색이나 강조색을 활용한 다색대비나 색상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을 연출</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li> <li>- 도로 경계부 : 6m이격</li> </ul>	

구분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A6	-	용도	허용 용도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li> </ul>
				불허 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0% 이하</li> </ul>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0층 이하</li> </ul>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유도</li> <li>개방감, 단지내 경관증진을 위해 다양한 층수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 및 리듬감 유도</li> </ul>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주택의 지붕은 평지붕, 경사지붕 등을 권장하며 과도한 옥탑 건축물은 지양</li> <li>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구분하여 마감재 및 입면디자인의 변화 유도</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li> <li>기조색을 white 중심의 무채색계열과 B, PB, YR, YG 계열 중심으로 사용</li> <li>보조색은 기조색과 동색계열 중 2-3차 혼합색으로 하여 안정되고 고상한 색감 연출</li> <li>초점경관으로서 인지성이나 시각적 충격을 연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색이나 강조색을 활용한 다색대비나 색상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을 연출</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경계부 : 6m이격</li> </ul> </li> </ul>				

(2) 상업용지 :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B12~B27	-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li> <li>-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점 제외)</li> <li>-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li> <li>- 제7호의 판매시설</li> <li>-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li> <li>- 제10호의 교육시설 중 학원</li> <li>- 제13호의 운동시설</li> <li>- 제14호의 업무시설</li> <li>-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 건물 전면이 도로를 향하도록 건축배치 유도
			형태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li> <li>• 용도특성상 기초색과 보조색의 색상범위를 넓게 허용</li> <li>• 기초색의 색조를 제한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색채 이미지연출 : 기초색 채도를 7 이하로 제한</li> <li>• 강조색은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상가 출입구나 건축물 모서리를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권장</li> <li>• 초점경관은 보조색이나 강조색을 활용한 다색대비나 색상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을 연출</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경계부 : 3m이격</li> </ul> </li> </ul>
			기정	B6~B11, B28~B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20층 이하			
배치	• 건물 전면이 도로를 향하도록 건축배치 유도			
형태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li> <li>• 용도특성상 기초색과 보조색의 색상범위를 넓게 허용</li> <li>• 기초색의 색조를 제한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색채 이미지연출 : 기초색 채도를 7 이하로 제한</li> <li>• 강조색은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상가 출입구나 건축물 모서리를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권장</li> <li>• 초점경관은 보조색이나 강조색을 활용한 다색대비나 색상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을 연출</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경계부 : 3m이격</li> </ul> </li> </ul>			



구분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B1~B5, B34,B35	-	용도	허용용도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li> <li>-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점 제외)</li> <li>-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li> <li>- 제7호의 판매시설</li> <li>-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li> <li>- 제10호의 교육시설 중 학원</li> <li>- 제13호의 운동시설</li> <li>- 제14호의 업무시설</li> <li>-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li> </ul> </li> </ul>
				불허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00% 이하</li> </ul>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층 이하</li> </ul>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 전면이 도로를 향하도록 건축배치 유도</li> </ul>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건축계획 수용</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li> <li>용도특성상 기초색과 보조색의 색상범위를 넓게 허용</li> <li>기초색의 색조를 제한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색채 이미지연출 : 기초색 채도를 7 이하로 제한</li> <li>강조색은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상가 출입구나 건축물 모서리를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권장</li> <li>초점경관은 보조색이나 강조색을 활용한 다색대비나 색상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을 연출</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경계부 : 3m이격</li> </ul> </li> </ul>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

구분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C1,C2	-	용도	허용용도 (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li> <li>-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점, 장의사, 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당구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제외)</li> <li>-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직업훈련소</li> <li>- 제14호의 업무시설</li> </ul> </li> </ul>
				불허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00% 이하</li> </ul>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층 이하</li> </ul>	
변경	C1	-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 전면이 도로를 향하도록 건축배치 유도</li> </ul>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건축계획 수용</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li> <li>용도특성상 기초색과 보조색의 색상범위를 넓게 허용</li> <li>기초색의 색상 : YR, Y 계열 중심으로 사용</li> <li>기초색의 색조를 제한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색채 이미지연출 : 기초색 채도를 7 이하로 제한</li> <li>강조색은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상가 출입구나 건축물 모서리를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권장</li> <li>초점경관은 보조색이나 강조색을 활용한 다색대비나 색상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을 연출</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경계부 : 3m이격</li> </ul> </li> </ul>	

(4) 기타용지 :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D	-	용도	허용 용도 (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호,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li> <li>-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li> <li>-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충포판매점 제외)</li> <li>-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li> <li>-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li> <li>- 제11호의 노유자시설</li> <li>- 제14호의 업무시설(바닥면적 합계 3천㎡ 미만)</li> </ul> </li> </ul>
				불허 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 이하</li> </ul>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층 이하</li> </ul>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건축계획 수용</li> </ul>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건축계획 수용</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건축계획 수용</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경계부 : 3m이격</li> </ul> </li> </ul>	

(5) 학교 :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E1,E2,E3	-	용도	허용 용도 (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 중학교)</li> </ul> </li> </ul>
				불허 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 이하</li> </ul>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층 이하</li> </ul>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건축계획 수용</li> </ul>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건축계획 수용</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li> <li>• 지구 특성을 반영한 색상을 기초색으로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채색과 YR 계열의 색채를 사용</li> <li>- YR, GY, G, PB 계열의 색상을 여건에 따라 사용하여 네치럴한 이미지를 강화</li> </ul> </li> <li>• 건축물 용도를 고려한 색상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시설은 세대특성을 고려하여 강조색을 활용, 색상대비를 통하여 경쾌한 색상 이미지 강화</li> </ul> </li> <li>• 저채도, 고명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공공건축물에서 풍겨 나오는 위압감과 답답함을 해소</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경계부 : 3m이격</li> </ul> </li> </ul>	

(6) 유치원 :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F1, F2	-	용도	허용 용도 (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li> <li>-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li> </ul>
				불허 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 이하</li> </ul>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층 이하</li> </ul>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건축계획 수용</li> </ul>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건축계획 수용</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li> <li>지구 특성을 반영한 색상을 기초색으로 채용</li> <li>- 무채색과 YR 계열의 색채를 사용</li> <li>- YR, GY, G, PB 계열의 색상을 여건에 따라 사용하여 네쳐럴한 이미지를 강화</li> <li>건축물 용도를 고려한 색상 채용</li> <li>- 학교시설은 세대특성을 고려하여 강조색을 활용, 색상대비를 통하여 경쾌한 색상 이미지 강화</li> <li>저채도,高明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공공건축물에서 풍겨나오는 위압감과 답답함을 해소</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li> <li>- 도로 경계부 : 3m이격</li> </ul>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

구분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A1~A6, B3, B5~B11 B28~B35, C2, E1~E3, F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진출입불허구간 계획</li> <li>- 간선가로 및 교차로 일정구간 이내를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설정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도모</li> </ul>	-
변경	A1~A6, B3, B5~B11 B28~B35, E1~E3, F1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1) 차폐조경 :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①	A1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저감을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6m
기정	②	A2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저감을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6m
기정	③	A3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저감을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6m
기정	④	A4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저감을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6m
기정	⑤	A5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저감을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6m
기정	⑥	A6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저감을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6m

(2) 공개공지 :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⑧	B1	• 폭은 5m 이상으로 설치하며 규모는 군산시 건축조례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이상으로 조성하여 보행공간 확보 및 휴식공간을 제공	위치지정
기정	⑨	B34	• 폭은 5m 이상으로 설치하며 규모는 군산시 건축조례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이상으로 조성하여 보행공간 확보 및 휴식공간을 제공	위치지정

(3) 전면공지 : 변경

구분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⑨	E1, E2,	•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3m
기정	⑩	F1	•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3m
기정	⑪, ⑫	C1,C2, E3, F2	•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3m
변경	⑪, ⑫	C1, E3, F2		
기정	⑬	D	•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3m
기정	⑭~㉔	B1~B35	•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3m

## (4) 담장 및 방음벽 : 변경없음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A1~A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 높이 1.5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li> <li>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목재방음벽, 투명방음벽, 식생형 방음벽 등으로 설치</li> </ul>	-
기정	B1~B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 불허</li> </ul>	-
기정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 불허</li> </ul>	-
기정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li> </ul>	-
폐지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li> </ul>	-
폐지	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li> </ul>	-

## (5) 옥외광고물계획 : 변경없음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판의 수량, 크기, 색채, 위치, 글씨체 등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준용</li> </ul>	-

## (6)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 변경없음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전체	<p>○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허가권자가 지구단위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기본 취지 및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li> <li>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li> <li>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구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는 5%)</li> <li>가구면적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li> <li>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li> <li>건축물높이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포함)</li> </ol>	-

(계 속)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전체		<p>7.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p> <p>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p> <p>나.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p> <p>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8. 건축선의 1m 이내의 변경인 경우(획지계획의 변경에 따른 건축선의 이동은 건축선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9.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p> <p>10.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 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및 보행자출입구의 추가설치</p> <p>1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으로서 대지내 전면공지, 공개공지 및 통경축의 신설, 폐지 및 위치변경, 다만 통경축은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통경축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p> <p>12.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p> <p>13.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p> <p>14.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p> <p>15.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p> <p>16.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p>	

### 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실음생략

## II.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도면 : 게재생략

※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4-350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군산시 공고 제2024-910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23-135호(2023.8.25.)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624-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624-2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부지 내 공작물 설치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세 부 내 용					비 고
	동별	층별	면적(m <sup>2</sup> )	바닥면적(m <sup>2</sup> )	용 도	
건 축 물	1	1	165.94	197.50	사무실	건축물대장 (최종 변동일 2022.6.21.)
			31.56		사무실	
		2	165.94	165.94	사무실	
		지붕층	16.02		계단실(면적제외)	
		소계	363.44	363.44		
	2	1	408.00	606.00	폐기물보관	
		1	198.00		소각시설	
		1	131.72		소각시설	
		소계	606.00		606.00	
	총 계		747.0			
공 작 물	335.0m <sup>2</sup>			파쇄기	금회 완료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전북 군산시 성산면 산남길 141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주)현성환경 대표 윤재현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3. 8. 25. ~ 2023. 11. 30.(준공 2023. 11.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등 : 게재 실음생략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 스토킹 예방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예규 제48호

### 군산시 스토킹 예방 지침

**제1조(목적)**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산시장이 소속 구성원의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소속 구성원(시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이에 준하는 관계인을 포함),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스토킹 예방교육)**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 2. 스토킹의 특성, 징후 및 사례
- 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 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 5.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6.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 7. 그 밖에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④ 시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등)** ① 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부서에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처리업무담당자를 두고 소속 구성원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고충상담창구는 군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충상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며, 군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 이를 겸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 2. 스토킹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 및 처리
- 3.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의 검토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4. 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5. 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6.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에 스토킹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스토킹 사건접수 및 처리대장, 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시의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제8조의 보호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상급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고충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 2.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 나.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 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 라.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 마. 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바.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는 행위

3. 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4.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⑧ 시장은 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스토킹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충 상담을 받은 상급자(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충상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고충상담원의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고충 상담 및 처리)** ① 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을 접수받은 경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스토킹 피해 및 위협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제8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① 시장은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토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원, 피해 내용 등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등)** ①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스토킹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하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스토킹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⑧ 고충상담원은 해당 사안이 성희롱·성폭력이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등과 복합된 사건일 경우에는 관련 사안 처리 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0조(조사결과외 보고)** 고충상담원은 스톡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불리한 처우 금지 및 비밀유지)** ① 시장은 피해자, 신고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신고, 협력, 보호조치를 요구·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② 시장은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스톡킹 피해사실을 이유로 또는 보호조치를 요구·신청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2차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 고충상담원 등 직무상 스톡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알게 된 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사안 처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스톡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스톡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군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의 스톡킹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가 종결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시장이 스톡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은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하여야 한다.

③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시장이 스톡킹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스톡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스톡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 등 결과 통지)** 시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 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 ① 시장은 스톡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스톡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시장은 스톡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스톡킹 방지 조치 및 예

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마련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 성희롱·성폭력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스토킹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⑥ 시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제17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스토킹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스토킹 조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담당자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	-----	---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

- 스토킹 및 2차 피해 중지 [ ]
- 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 보호 조치 [ ]
- 행위자 징계 등 인사조치 [ ]
- 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 조치 [ ]
- 기타 ( )

위 신청인은 「군산시 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라 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조사결과 및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

###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 3.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스토킹 여부에 대한 판단(2차 피해 포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서명 또는 인)